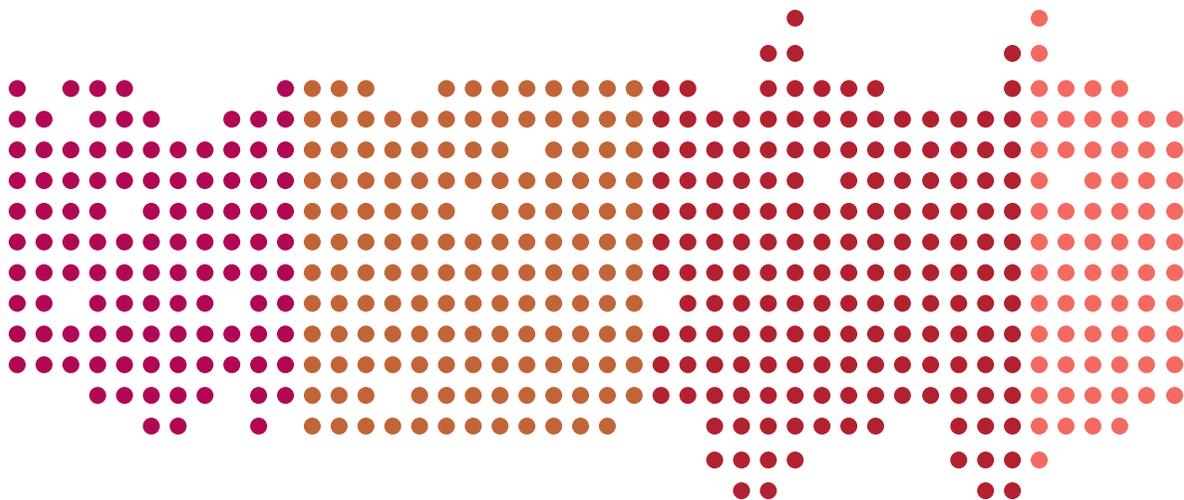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04-01

201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 11.

연구수행기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동연구원	이은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홍기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조원	백송이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 차 ::

요약본	i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3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10
제3장 문헌고찰	13
1. 이주민의 인구동향	13
2. 다문화정책 모델	25
제4장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 실태	27
1. 결혼이주여성	27
2. 외국인노동자	42
3. 난민	58
4. 이주아동	73
5. 난민아동	82
제5장 외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	90
1. 일본	91
2. 호주	107
3. 독일	122
4. 네덜란드	137
5. 프랑스	146

제6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현행법령	160
1.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의 헌법적 근거	161
2. 지방자치시대와 '주민'으로서의 이주민	172
3.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관련된 현행법령	176
4. 시민단체가 보는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법적 문제	188
제7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의 지역사례	196
1.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특성	196
2. 사례지역(1): 경기 안산시	198
3. 사례지역(2): 경기 수원시	206
4. 사례지역(3): 전북 무주군	215
5. 시사점	220
제8장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개선방안	223
1. 지원방향의 개선방안	223
2.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226
3.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237
참고문헌	247
부록 I_법령	259
부록 II_설문지	309

:: 표목차 ::

[표 3-1]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13
[표 3-2]	등록외국인 현황	14
[표 3-3]	등록외국인의 연령대별 인구	15
[표 3-4]	외국인주민 현황	16
[표 3-5]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16
[표 3-6]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18
[표 3-7]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19
[표 3-8]	국제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20
[표 3-9]	결혼이민자 거주 현황	21
[표 3-10]	국가별 결혼이민자 국적 현황	21
[표 3-11]	국가별 거주 외국인노동자 현황	22
[표 3-12]	난민지위 현황	23
[표 3-13]	이주아동 현황	24
[표 3-14]	국가별 외국인 자녀 거주 현황	24
[표 3-15]	연령별 외국인 자녀 거주 현황	25
[표 4-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1	27
[표 4-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2	28
[표 4-3]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실태1	29
[표 4-4]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실태2	29
[표 4-5]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실태	31
[표 4-6]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실태1	33
[표 4-7]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실태2	34
[표 4-8]	결혼이주여성의 주거실태	35
[표 4-9]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실태	36
[표 4-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37
[표 4-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실태	39
[표 4-12]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특성1	42
[표 4-13]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특성2	43
[표 4-14]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실태1	44
[표 4-15]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실태2	44
[표 4-16]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실태	45
[표 4-17]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실태1	47
[표 4-18]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실태2	48
[표 4-19]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실태	49
[표 4-20]	외국인노동자의 교육실태	50

[표 4-21]	외국인노동자의 가정생활실태	51
[표 4-22]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및 가정생활실태	54
[표 4-2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56
[표 4-24]	난민의 일반적 특성1	59
[표 4-25]	난민의 일반적 특성2	59
[표 4-26]	난민지위1	60
[표 4-27]	난민지위2	60
[표 4-28]	난민의 경제적 실태1	61
[표 4-29]	난민의 경제적 실태2	61
[표 4-30]	난민의 건강실태1	62
[표 4-31]	난민의 건강실태2	63
[표 4-32]	난민의 고용실태1	64
[표 4-33]	난민의 고용실태2	65
[표 4-34]	난민의 주거실태	66
[표 4-35]	난민의 교육실태	67
[표 4-36]	난민의 가족생활실태1	68
[표 4-37]	난민의 가족생활실태2	69
[표 4-38]	난민지위 인정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70
[표 4-39]	난민지위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71
[표 4-40]	이주아동의 일반적 특성1	73
[표 4-41]	이주아동의 일반적 특성2	73
[표 4-42]	이주아동의 경제적 실태1	74
[표 4-43]	이주아동의 경제적 실태2	75
[표 4-44]	이주아동의 건강실태	76
[표 4-45]	이주아동의 주거실태	78
[표 4-46]	이주아동의 교육실태	79
[표 4-47]	이주아동의 입국사유	80
[표 4-48]	이주아동의 적응지원서비스 욕구	81
[표 4-49]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1	83
[표 4-50]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2	83
[표 4-51]	난민아동의 경제적 특성	84
[표 4-52]	난민아동의 건강실태	85
[표 4-53]	난민아동의 주거실태	86
[표 4-54]	난민아동의 가정생활실태	88
[표 5-1]	일본의 다문화공생플랜의 주요 내용	97
[표 5-2]	일본 다문화공생의 추진 주체	99

[표 5-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의 역할	100
[표 5-4]	독일의 시기별 이주민 정책	125
[표 5-5]	독일의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135
[표 7-1]	안산시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198
[표 7-2]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200
[표 7-3]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지원 사업 현황	201
[표 7-4]	안산시 이주민 지원 단체 현황	203
[표 7-5]	지역 네트워크	205
[표 7-6]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활동 세 시기의 특징	206
[표 7-7]	경기도 및 수원시의 외국인 주민 증가율(2008-2011)	207
[표 7-8]	수원시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208
[표 7-9]	수원시 외국인주민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210
[표 7-10]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213
[표 7-11]	무주군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216
[표 7-12]	무주군 외국인주민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217

::그림목차::

[그림 3-1]	체류외국인 동향	14
[그림 3-2]	국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변화추이	17
[그림 3-3]	국제결혼건수의 증가추이	19
[그림 3-4]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20
[그림 5-1]	일본의 다문화공생플랜 추진 방식	101
[그림 5-2]	호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14
[그림 5-3]	호주의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정착 지원 흐름도	116
[그림 5-4]	호주의 이민자 정착지원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 체계	119
[그림 5-5]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31
[그림 5-6]	독일 '연방 이민·난민·통합 담당관실'의 태스크포스 구성자료	132
[그림 5-7]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43
[그림 5-8]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153
[그림 8-1]	한국어교육 시스템	242

요약본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국내 체류 이주민의 증가

- 1990년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11년에는 10.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2년 6월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외국인노동자는 1980년대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12월 현재 55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외국인주민 수는 1,409,577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2005 국제 이주자 보고서’는 비합법적 체류를 포함해 약 200만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는 국내 체류 이주민의 문제

- 결혼이주여성의 50% 이상이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절대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나 법적 지위의 한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움.
- 외국인노동자는 하루 2교대, 평균 15시간 이상의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높은 산업재해율과 임금체불율로 고통 받고 있음. 외국인노동자는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받음.
-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난민지원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60% 이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입학이 불가능했으며 이주아동의 15%는 학교의 거부로 교육기회조차 갖지 못함.
-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저해 받았으며 학교생활 중에도 민족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함.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과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함.
-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이주민의 범위

1) 정의

- 이주민을 자신이 태어났거나 또는 본래 살던 국적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이동해 정착한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함.
- 이주민을 자신이나 부모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이주를 경험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함.

2) 유형

- 결혼이주민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정의함.
- 외국인노동자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난민은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인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로 세분화됨. 본 연구는 이들 세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난민으로 조작적 정의를 함.
- 이주아동을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적국을 떠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함.

나.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범위

1)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정의

- 사회복지지원체계는 사회복지의 추진 체계, 정책 및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개념임.
- 본 연구의 목적상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권으로 제한하여 고찰하고자 함.

2)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

- 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이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을 선정함.
- 생계지원정책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여 개인 또는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임.
- 생계지원정책에는 대표적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긴급복지지원정책 등이 해당함.
- 건강지원정책은 사회구성원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함.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정책을 통해 건강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 고용지원정책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함.
- 고용지원정책은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는 고용촉진정책과 취업자의 취업안정성을 높이는 고용안정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지원정책은 교육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방침이나 체계적 수단, 교육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 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임.
- 교육지원정책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고 있음.

- 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이란 이주민의 효과적 사회적응서비스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수단임.
- 이주민의 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함.

2 연구방법

가. 연구설계

- 문헌연구, 초점집단인터뷰, 사례분석, 사회조사의 다양한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혼합연구로 설계함.

나. 문헌연구

-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
-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외국의 법률과 정책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

다. 초점집단인터뷰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가 실천경험을 통해 통찰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함.

라. 사례분석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민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높은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함.

마. 사회조사

1) 표집 및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 표집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으로 함.
- 결혼이주여성은 126명의 사례가 모두 분석에 사용됨.
- 외국인노동자는 124명의 자료가 분석됨.
- 난민은 50명의 자료가 분석됨.
- 이주아동은 67명의 자료가 분석됨.

2) 자료수집방법

- 조사도구는 문헌연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구조화된 질문지가 사용됨.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난민, 이주아동, 난민아동 등 5개 유형의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추가됨.
- 자기기입법과 대면면접법이 병행됨.
- 대면면접은 2시간의 면접원 교육을 받은 유급면접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과 학부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됨.

제3장 문헌고찰

1 이주민의 인구동향

가. 체류합법성을 기준으로 한 이주민 규모

1)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1,462,694명이며 이 중 등록외국인이 975,922명, 단기체류자가 324,170명, 거소신고자가 162,602명에 해당됨.
-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11년 6월 1,392,167명 대비 2012년 6월까지 5.1%가 증가함.

2) 등록외국인

-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총 975,922명임.
- 한국계 중국인이 368,163명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중국(147,138명), 베트남(114,123명), 필리핀(34,000명), 인도네시아(31,471명), 우즈베키스탄(28,949명), 타이(24,036명), 미국(23,244명), 일본(22,157명), 캄보디아(21,705명), 몽골(21,509명), 스리랑카(21,502명), 타이완(21,173명) 등이 20,000명 이상으로 비교적 큰 규모를 보임.

3)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171,659명으로 집계됨.
-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수는 2002년 289,23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첫 만료 시점인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나. 유형별 이주민 규모

1) 결혼이주민

-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147,091명이며 여자가 126,741명, 남자가 20,350명에 이룸.
- 국적국 별로는 중국(한국계포함)이 92,269명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베트남 38,753명, 일본 11,448명, 필리핀 9,118명, 캄보디아 4,583명, 타이 2,613명, 몽골 2,412명 순으로 나타남.

2)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수는 2007년에 259,805명, 2008년에 437,727명, 2009년 575,657명, 2010년 558,538명, 2011년 552,9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 국적국별 외국인노동자 수는 중국이 22,992명, 한국계 중국인이 295,604명, 일본은 1,604명, 몽골은 11,047명, 베트남은 64,407명, 필리핀은 26,855명, 태국은 22,518명, 캄보디아는 11,649명, 미국은 13,796명에 달함.

3) 난민

- 2012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4,593명이며 이중 29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음.
-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는 151명이며 2,133명은 난민지위가 불허되었고 721명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남.

4) 이주아동

- 2012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는 총 168,583명이며 이중 남자가 86,169명, 여자가 82,414명임. 양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는 10,451명, 한부모만이 외국인인 자녀는 146,071명임.

2 다문화정책 모델

가. 동화주의 모델

- 소수집단이 주류집단과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융해되어 주류집단과 분리될 수 없는 데에 목적을 둠.
- 동화주의 모델을 다문화정책으로 선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음.

나. 다원주의 모델

- 민족적인 차이나 이질성을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집단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함. 따라서 국적국으로 유입된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소수집단의 주류사회와의 공존에 목적을 둠.
- 다원주의는 크게 평등적 다원주의와 불평등 다원주의로 나누어 짐.

다. 차별적 배제모델

- 소수집단을 주류사회에 필요한 영역 내에서 받아들여 주류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공적으로 엄격히 통제함. 따라서 소수집단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

거권과 같은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임.

- 차별적 배제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 독일의 ‘초청 노동자’제도를 들 수 있음.

제4장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 실태

1 결혼이주여성

가. 일반적 특성

-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결혼한 상태인 이주여성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92.8%가 기혼 유배우자, 0.8%는 사별, 5.6%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연령이 31.49세이고 최소 19세에서 최대 60세의 넓은 범주를 보임.
- 이주 전 국적국의 교육 기간은 평균 11.3년이며 최저 3년에서 최대 19년으로 나타남.
- 국적국별 분포는 중국이 34.9%, 베트남이 27.8%, 필리핀이 11.1%, 일본이 7.1% 순이며 그 외에 캄보디아, 몽골, 태국, 라오스 등으로 나타남.
- 국적을 신청할 당시 또는 신청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주여성 중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류준비가 어려워서’ 등 정보부족이나 과정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이 44.0%를 차지함.

나. 경제

- 결혼이주여성의 18.6%는 가족 생활비가 매우 적다고 평가했으며, 23.5%는 지난 1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답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생활비를 빌린 대상은 가족(56.0%)과 친구(40.0%)로 비공식적 체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은 여성은 3.2%에 불과함.

다. 건강

-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나 부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여성이 8.1%에 달했으며, 병원에 가지 못한 주요 원인은 돈이 없어서(44.4%), 건강보험이 없어서(22.2%)등 치료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의 대부분은 그냥 쉬거나(25.0%), 아무것도 하지 않는(50.0%) 등 질병이나 부상을 그대로 방치해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병원비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도움을 준 대상은 친구, 교회, 단체 등 주로 비공식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는 없었음.
- 건강보험이 없다고 답한 여성은 24.0%로 이는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이 적지 않음을 알려줌.

라. 고용

- 2011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9.7%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은 34.7%로 비교적 낮았음. 특히 72.6%의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

마. 주거

- 배우자나 가족에게 쫓겨나 노숙한 경험이 있다는 결혼이주여성이 2.4%를 차지함.

바. 교육

-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은 한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이었으

-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은 한국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나타남.
- 직업기술교육은 욕구가 높은 반면 실제 교육을 받은 여성은 16.0%에 그침.

사. 가정생활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으로 아이 양육법을 배우고 싶다는 여성이 47.8%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부모교육을 받은 여성은 20.0%에 불과함.
- 6.4%의 여성이 한 달에 한번 또는 일 년에 한번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임시주거지(42.8%)와 이야기할 대상(57.1%)으로 나타남.

2 외국인노동자

가. 일반적 특성

- 외국인노동자의 51.6%는 남성, 48.3%는 여성이었으며, 45.1%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은 평균 34.4세로 최저 14세에서 최고 68세의 범주를 보임.
- 한국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4.4년으로 1년 미만에서부터 최고 21년으로 나타남.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한 기간이 평균 5.6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음.
- 국적국은 몽골이 58.9%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필리핀이 17.7%, 우즈베키스탄이 16.1%, 중국이 6.5%, 캄보디아가 0.8% 등으로 조사됨.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노동자는 64.5%에 불과했으며, 35.4%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경제

- 외국인노동자의 29.0%가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음.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 중 지난 일 년 간 돈이 없어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1.8%를 차지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결식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건강

- 51.6%의 외국인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32.3%의 응답자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을 가지 못했으며 그 이유를 치료비가 없거나 또는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함.

라. 고용

- 직무유형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일이 50.0%,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장일이 12.9%, 서비스가 8.9%, 사무직이 4.8%, 장사가 4.0%, 단순 노동이 3.2%, 농장일이 2.4%, 전문직이 1.6%, 농사가 0.8%의 순이었으며, 조사 당시 현재 일하지 않는 응답자가 4.8%를 차지함.
-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을 알게 된 경위는 친구가 50.9%,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소개받았다가 17.0%, 광고를 통해서가 12.3%, 직장동료가 6.6%, 교회나 NGO가 5.7%, 가족 및 친척이 2.8%로 나타남.

마. 주거

- 노숙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10.5%에 달했으며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대부분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음.

바. 교육

- 외국인노동자의 77.4%가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어교육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함.

사. 가정생활

- 48.3%의 외국인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 건강보험가입이나 산업재해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함.
- 외국인노동자의 욕구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자녀교육지원서비스로 나타남.

3 난민

가. 일반적 특성

- 난민의 58.3%는 남성, 41.7%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34세로 68.8%는 기혼이며 31.3%는 미혼으로 나타남.
- 국적국은 방글라데시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콩고가 14.6%, 우간다가 12.3%,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6.3%, 스리랑카, 카메룬, 코트니브아르가 각각 4.2%를 차지함.
-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평균 5.3년이었으며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17년의

넓은 범주를 보임.

나. 난민지위

- 난민 응답자의 53.2%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으며 25.5%는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12.8%는 난민지위를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8.5%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남.

다. 경제

- 29.2%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으며, 7.5%는 결식횟수가 1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밥을 먹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친구, 교회, 난민지원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라. 건강

- 18.8%의 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거나 또는 매우 나쁘다고 평가해 난민의 건강상태가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조사됨.
- 건강보험 가입률은 41.9%에 불과했으며 30.4%는 질병에도 병원에서 치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역시 비용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원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난민은 NGO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마. 고용

- 47.9%만이 취업자인 것으로 조사됨.
- 29.2%는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공장일, 2.1%는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2.1%는 서비스, 2.1%는 농사, 10.4%는 농장일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바. 주거

- 31%의 난민은 월 평균 주거비로 31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난민들의 월 평균 생활비 74만원의 4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 교육

- 한국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교육은 14.0%, 한국문화교육은 12.0%를 차지함. 직업기술교육 10.0%에 불과했으며 대학교육 등 기타 유형의 교육이 24.0%로 나타남.
- 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라는 의견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기술교육이 19.1%, 컴퓨터교육과 난민신청교육이 각각 12.8%, 한국문화교육이 10.6%로 조사됨.

아. 가족생활

- 현행법상 난민지위 인정자의 경우 국민주택 입주 자격은 부여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서류준비상의 어려움, 보증금 등의 문제로 입주사례가 거의 없음.
- 48.9% 이상의 난민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난민이 37.5%에 달함.

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 난민지위 인정자

-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응답자는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0%에 불과함.

2) 난민지위 신청자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민지위 신청자의 71.4%가 매우 필요하다, 25.0%가 필요한 편이다, 3.6%가 별로 필요 없다고 답함.
- 국민임대주택 입주 혜택에 대해서는 78.6%가 매우 필요하다, 10.7%가 필요한 편이다, 10.7%가 별로 필요 없다고 답함.
- 생활비 보조는 78.6%가 매우 필요하다, 14.3%가 필요하다, 7.1%가 별로 필요 없다고 답함.
- 자녀들이 한국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85.7%, 필요하다고 10.7%, 별로 필요 없다고 3.6%로 나타남.
-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82.1%가 매우 필요하다, 14.3%가 필요하다, 3.6%가 별로 필요 없다고 답함.
-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78.6%가 매우 필요하다, 17.9%가 필요하다, 3.6%가 별로 필요 없다고 응답함.

4 이주아동

가. 일반적 특성

- 이주아동은 52.0%가 남성, 48.0%가 여성으로 몽골국적의 아동이 96%를 차지함.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아동은 90%에 달했으며 10%의 아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이주아동의 평균 연령은 13.8세이며 최소 5세에서 최고 18세의 범주를 보임.
- 한국거주기간은 평균 3.2년이며, 최고 거주기간은 13년으로 나타남.

나. 경제

- 이주아동 가정의 소득원은 부모님이 96.0%, 기타가 4.0%로 나타남.
- 1년 동안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은 2.0%에 달했으며 결식횟수는 1회에서 3회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학교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다. 건강

- 이주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병원비가 없거나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이 20.0%로 이들 이주아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음.

라. 주거

- 이주아동의 주거형태는 부모님이 임대한 집이 78.0%, 학교기숙사가 14.0%를 차지함.

마. 교육

- 96.0%의 이주아동이 동일한 국적을 지닌 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가 언어와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남.
- 부모가 귀국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한국사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이주아동이 14.0%에 달함.

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 이주아동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다가 62.0%, 필요한 편이다가 34.0%, 별로 필요 없다가 4.0%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음.

5 난민아동

가. 일반적 특성

- 난민아동의 성별 구성비는 66.6%가 남성, 33.3%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6세로 나타남.
- 아동의 출생지는 100%가 대한민국이었으며 아동의 국적국은 40.0%가 무

국적, 33.3%가 콩고, 13.3%가 코트디부아르, 방글라데시, 중국이 각각 6.7%로 나타남.

- 아동의 난민지위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가 60.0%,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가 13.3%,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26.6%로 조사됨.

나. 경제

-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난민아동은 14.2%임.
-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준 대상은 교회, NGO, 부모의 친구 등 민간자원에 집중되어 있음.

다. 건강

-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난민아동은 14.2%에 달함.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라. 주거

- 난민아동이 거주하는 집은 부모가 임대한 집이 93.3%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6.7%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는 난민아동은 7.1%였으며 1회에서 3회 정도 노숙한 것으로 나타남.

마. 보육

- 난민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다문화 보육시설을 이용

하는 비율이 높았음.

- 한국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돈이 부족하다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문제와 불안정한 지위가 각각 7.6%를 차지함.

제5장 외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

1 일본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자 수는 약 215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69%를 차지함.
-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149,78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06,889명(28.2%)이고, 한국(조선)이 493,489명(27.6%), 브라질이 316,967명(14.7%), 필리핀이 202,592명(9.4%)의 순서임.

2) 정책 형성 및 특성

-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임.
-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정책과 일본 재계의 다문화사회 수용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이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한 결과임.
- 2006년 3월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도도부현(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에 해당)과 시정촌이 마련하고, 다문화공생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을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흐름 가운데도 엄밀히 보면,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서 외국인의 정착을 전제로 한 중

양정부 차원의 정책은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임. 즉 ‘외국인주민 대상 시책’은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책’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체류자격

- 일본은 체류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 인정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 재류자격과 그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됨.
- 외국인이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재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 27종류가 있음.
- 최근 2012년 7월에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의하면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도입되어 과거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발행하던 외국인등록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성이 발급하는 체류카드를 통해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음.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제도

1) 법령

- 일본은 중앙부처의 다문화관련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데, 외국인시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는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함.
- 이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문화(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추진 체계

- 외국인주민이 많은 일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종합적,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인 다문화 기관으로는 국제교류협회가 있음.
- 국제교류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본어 교육, 상담활동, 모임의 조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다문화공생정책

-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공생센터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외국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일본어 수업이 있음.
-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외국인의 자국어로 제공하고 또한 외국인이 일본어 및 일본사회를 쉽게 배우도록 하는 지원으로 각 지자체는 외국인에게 행정서비스 및 각종 정보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거주지원으로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외국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거지역과 관련 규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
- 교육지원에서는 외국인 자녀들의 취학준비, 학교생활, 상급학교로의 진로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함.
- 노동환경 개선지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로 사회보험 사무소에 의뢰하여 시의 홍보지 및 상공회의소의 홍보지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수속을 요청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음.

- 의료지원으로는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언어로 작성된 의료문진표를 개발, 의료기관이 비치하는 것과 다언어로 작성된 모자수첩·조산제도 소개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 있음.
- 방재교육이 제공되는데 이는 외국인주민에게 방재교육, 훈련, 방재정보를 제공, 긴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도쿄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도쿄도 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 NPO, 40여개 자원봉사 단체가 연계하여 주재 외국인을 위한 도내 릴레이 전문가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음.
- 다문화공생사회조성사업은 일본인들이 외국인을 이해하도록 돕고 외국인이 스스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다문화공생지역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신설 또는 정비, 각 단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의 추진체제 정비로 이뤄져 있음.

2)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 일본은 1982년에 이르러서는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비준하고 국내의 평등 원칙에 따라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긴급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 지급이 이루어짐.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민은 외국인 취로자격 여부와 체류의 적법성에 상관없이 수급권에서 배제됨. 단, 미지불의료비 상환제도와 같은 긴급 의료지원은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적용됨.
- 보육지원정책으로 취업모를 위한 야간보육·재택보육 등으로 서비스가 다양화·강화되었음.
-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이수당제도가 있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산전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단기 돌봄 휴가 및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초과근무 면제, 초과근무시간 제한 등이 있음.
- 다문화공생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환경지원 차원에서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헬로우 워커'와 상공회의소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의욕이 있는 외국인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 또는 이민자 자녀에게 제공함.

2 호주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 200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는 약 2,200만 명이고, 전년도보다 451,900명이 증가하였음. 증가된 인원 중 66%는 해외 이주민 증가에 따른 것임.
- 호주는 2009년과 2010년 사이 영구이민 수가 207,000명으로 영구이민의 82%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중 약 2/3는 ‘기술에 기반을 둔’것이고, 나머지 1/3은 ‘가족이민’에 근거한 것임.

2) 정책 형성 및 특성

- 과거 백호주의(白濠主義)로 알려져 있는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2009년 현재 다문화주의적 현실에 호응하여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호주의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시민권 부여의 조건은 기초적인 영어실력에 대한 요구와 시민권의 부여에 따른 책임과 권리에 대한 숙지임.

3) 체류자격

- 호주의 이민제도는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의 적응을 촉진함으로써 호주의 경제적·인구적·사회적 복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제도적으로는 이민자를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경제적 기술을 가진 이민자’와 ‘가족 이민자’ 및 재외동포나 원주민

등 '특별 자격이민자'로 나눌 수 있음.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령

- 1958년 제정된 이민법(Migration Act 1958)과 시행령이 이민행정을 규율함.
- 이민법 개정은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어야만 가능하고 이민법시행령은 사증 발급 규정 등을 담고 있는데, 이민·시민권부 장관의 권고를 받아 총리가 개정할 수 있음.
- 연방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관한 법률과 민족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었음.

2) 추진 체계

- 다문화정책의 추진 주체는 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민사회, 비정부기구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와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 호주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연방정부의 이민·시민권부임.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 인도적 정착 프로그램(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 Program)은 최근 도착한 난민들에게 집중적인 정착지원을 제공함.
- HSS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제공되며, 특히 취약한 클라이언트

를 위해서 더 연장될 수도 있음.

- 복합사례지원서비스(CCS)는 이민·시민권부 지원으로, 전문화되고 집중적인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새로 입국한 난민들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MEP)은 실용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나 인도주의적 입국자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이민·시민권부 지원 프로그램임.
- 정착지원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 SGP)은 이민자, 난민, 인도주의적 입국자들이 자립적이고 좀 더 완전하게 호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 통번역전화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는 이민·시민권부 지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사회 언어를 커버하며 이루어지며 일주일 내내 24시간 전화 및 현지 통역 및 번역 서비스임.

2)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 호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 급여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호주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음.
- 모든 공공부조제도는 ‘가족·주거·공동체서비스·원주민부’ 산하 ‘센터링크’에서 담당함.
-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직자수당, 아동보육비, 장애인연금 등 직접적 현금 급여 사업을 주로 맡음. 시설운동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주정부·지방정부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위임함.
- 주정부는 병원·교육·서비스 시설 등을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 대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호주에서는 장기 체류자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교육과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는 1972년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한 이래, ‘다양성 존중’을 표방하는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3 독일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7년 약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함.
- 부모세대에서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에서 출생, 외국인이었으나 독일로 귀화, 독일인-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독일 출생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하는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은 2005년을 기준으로 10%를 차지함.

2) 정책 형성 및 특성

-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및 국적법은 전통적인 속인주의 방식을 변경하여 이주민 가정 출생자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속주주의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음.
- 이 법은 외국인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법률 개정 전 국적 신청 자격요건이 1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파격적임.
-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여 국적, 난민, 이민, 망명 등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이 법은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였음.

3) 체류자격

-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이민법에 근거하여 체류허가와 정착허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체류허가와 정착허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체류기간의 제한 여부에 있음. 체류허가는 체류기간이 일정하도록 제한되지만, 정착허가는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음.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령

-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법은 2005년 제정된 이민법으로 외국인의 입국·거주·이주자의 통합정책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도입 2년 후인 2007년 7월에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이 법에 의하면 영구주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독일 거주 8년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함. 이는 이전 15년 이상 독일 거주가 귀화조건의 일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임.

2) 추진 체계

- 2005년 이민법 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외국인과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정책을 전담할 기구인 연방 이민·난민청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하여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연방이민·난민청은 사회통합기획과·사회통합교육지원과·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3개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업무는 이민법에 따른 통합코스 실행, 지역별 사회·문화적 통합사업 조정, 연방 차원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 총괄, 사회통합프로젝트 지원, 이주 초기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음.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 독일 내 장기 거주하며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강좌를 이수해야 하며, 크게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언어강좌 과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주민 상담서비스는 2005년 1월부터 연방내무부의 관리 하에 실행되고 있으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함.
-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는 아동수당이 있는데, 이는 독일 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면 독일인과 동등하게 자녀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현재 독일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각 시별로 이주민 가족을 위한 행정부서를 마련, 자녀들의 언어 교육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원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2)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 정착 이민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도 대부분이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있음.
-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은 취업활동 여부와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 국내에 거주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함.
- 이민자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동조합 가입에도 제한이 없음. 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체계도 갖춰져 있으며 이민자와 그 자녀는 상담·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이 됨.

4 네덜란드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 네덜란드의 신규 이민자 수는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들어오는 이민’으로 인해 2009년 146,400명으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나가는 이민’으로 인한 네덜란드의 인구 유출은 2009년 약간 감소했음.

2) 정책 형성 및 특성

- 우파 성향의 얀 페터르발케넨더(Jan Pieter Balkenende) 총리가 집권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네덜란드는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혁을 단행했음.
- 1970년대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를 이민자 통합에 관한 공식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여, ‘이민자의 출신국 문화를 유지하는 통합’ 정책을 추진했음
-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약간 성격이 변화되어, 1990년대 이후 ‘동화’를 점점 더 강조함.

3) 체류자격

- 2004년에는 가족형성의 최소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어 구사능력과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 받아야 함.
- 합법 체류허가(1년 단위)를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계속 네덜란드에 체류한 외국인도 네덜란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체류허가 소지자더라도 생활무능력자, 범법자, 해외거주자, 네덜란드 사회에 위협이 될 소지가 다분한 자, 영주권 신청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자 등은 영주권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제

- 네덜란드의 외국인 체류자와 사회통합 관련 주요 법률은 첫째, 외국인의 입국 및 사증 허가를 규정하는 법률로 외국인법. 둘째, 이민자 사회통합을 규율하는 이민자 사회통합법. 셋째, 국적법은 외국인의 국적취득 관련 사항을 규율함. 넷째,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외국인고용법. 다섯째, 외국인고용차별법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임.

2) 추진 체계

- 네덜란드에서 내무·왕국관계부는 이민 정책 수립 기능을 맡고, 이민·귀화청은 이민 정책의 집행 기능을 맡음.
- 이민·귀화청은 내무·왕국관계부의 외청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관리, 귀화 업무, 난민 수용 등을 담당함. '이민·난민장관'을 대신하여 외국인 정책, '외국인법', '국적법'을 집행하고,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함.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민 정책에 투영되면서,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민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에 밀려 퇴조하였음.

2) 시민(외국인) 대상 지원정책

- 네덜란드에서 결혼이민자는 네덜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이 됨.
- 공공부조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로 부가급여,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부조, 노령·부분장애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노령·부분장애 실업자영자를 위한 소득지원, 국가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주요 사회보험 종류로는 노령보험, 장애보험, 유족보험, 건강보험, 특별의료급여, 질병·출사보험, 산재·직업병보험, 실업보험과 가족급여가 있음.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아동급여가 있음.
- 가족정책은 노동시장정책, 보육정책, 생애주기저축제도가 있음.
- 최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은 언어능력향상과 네덜란드 사회와 문화의 이해에 대한 것으로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정부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님.

5 프랑스

가. 이주민 현황과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 프랑스의 체류 외국인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647만 명으로 집계되어 프랑스 총 인구의 5.8% 임.
- 외국인 체류자 중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은 35%이고, 제3국 출신은 65%임.
- 유럽출신 중에서는 포르투갈이 가장 많고, 알제리와 모로코 출신이 그 뒤를 이음.

2) 정책 형성 및 특성

- 프랑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프랑스 혁명 이념인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

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3) 체류자격

- 동화주의정책은 2005년 소요사태를 기점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 입국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더욱 폐쇄적으로 전환되었음.
-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가족재결합조건의 강화, 고숙련노동자 모집, 거주 및 국적취득의 제한으로 볼 수 있음.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령

-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법령은 최근 2006년에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 2008년 제정된 이민통제·동화 및 망명에 관한 법률이 있음.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법률로 2001년에 제정된 차별퇴치에 관한 법, 2006년 제정된 기회균등법이 있음.

2) 추진 체계

- 2007년 4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다문화정책이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로 단일화됨.

다. 이주자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 프랑스 정부는 교육과 취업에서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6년 3

월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를 설립하고 또한 기회균등법을 입법화하여 프랑스에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차별방지 조치,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가하고 있음.

2) 이주민 사회보장제도

-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등 직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본 국에서 치료가 어려워 프랑스에서의 의료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수당이 주어지기도 함.
- EU 및 EEA 출신의 외국인인 경우 출신국의 사회보장체계에 가입된 경우, 프랑스 거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인 경우 장기체류허가를 가진 자에 한해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짐.
- 프랑스 정부는 증가하는 이주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프랑스 사회로의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3) 외국의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불법·단기체류자) 사회복지지원 사례

- 프랑스에서는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등 직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본 국에서 치료가 어려워 프랑스에서의 의료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수당이 주어지기도 함.
- 의료보험지원제도 (Aide Medicale de l'Etat - AME)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의 100% 무상 치료를 보장하는 국가 의료지원체제로 2000년 1월 1일 도입되어 그 전까지 도별로 관리되었던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무상 의료지원 장치를 대체함.
-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제6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현행 법령

1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가. 헌법적 근거

1)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이주민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구분은 현실적이지 않음. 우선 기본권의 중점이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옮겨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자유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기본권의 분류는 시대의 요청에 맞지 않게 되었음.
- 사회보장정책의 입안자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인해 막연히 형성된 대중의 심리적 불안과 여론에 좌우되기보다는 국민국가적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인적 범위를 논하기를 지양하여 국적을 초월한 사회권의 보편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2) 헌법 제6조 제2항의 재해석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 정부는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있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상호주의적·상대적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일반국제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나. 국제법규

1)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타국에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의 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1919년 국제노동컨퍼런스에서 채택된 권고에 반영된 두 가지 주된 목적으로 첫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의 평등한 대우. 둘째, 국가 간 이민 정책의 조율을 들 수 있음.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일반국제법으로 승인하고 있는 이상 그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바 이주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됨.

2) 국제연합(UN)의 이주노동자협약

- 1990년 국제연합의 이주노동자협약 채택 이후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

3) 국제이주민권리장전

- 국제이주민권리장전은 이주민의 각종 권리 보호에 관한 기존의 모든 국제법(조약, 관습국제법, 각국의 관행 및 실무 등 포함)을 참고하여 얻은 제안들이 담겨 있음.
-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명쾌히 또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단일한 법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을 담고 있음.

4) 상호주의의 문제점

-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 실제로 유럽재판소(EGH)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프랑스의 해당 법률이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음.
-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법’과 같은 경우는 1993년 개정되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여 심지어는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재량에 의해 보상을 하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2 지방자치시대와 ‘주민’으로서의 이주민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인적 요소로 주민참여의 주체가 됨.
-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은 자연인·법인을 불문하고 내국인·외국인임을 묻지 않으며, 연령 등을 불문하는 개념임. 즉 주민의 개념과 국적과는 분리가능성이 인정됨.

2) 주민의 요건

- 주민의 요건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사무의 객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인 주민의 요건에 해당되는 ‘주소’라는 것은 자치행정과 관련된 주민의 공법상 권리·의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소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관련된 현행법령

가. 기본법령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제정)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및 외국인 관련 정책의 기본법 구실을 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 법은 외국인 처우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임.

2)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3) 이주민 지원 조례

- 이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나. 개별 사회복지지원 체계별 이주민 관련 법령

1) 긴급복지지원

- 2005년 12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음.
- 기본적인 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혼인과 가족을 중시하고 있는 관계로 비합

법적 체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2) 보건의료권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그 적용대상으로서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지만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일정한 경우에 이주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 때에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임. 부모가 비합법적 체류 상태인 경우 자녀를 낳았을 때 본국송환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고, 이에 따라 무국적 자녀가 발생하게 되며 이들은 이후 의료서비스와 교육에의 접근이 차단 되게 됨.
-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부모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법령이 외국인에 대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경우 긴급복지의 경우에도 그 보호의 대상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3) 교육권

-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목표와 내

용이 현재의 법제에서처럼 그들을 언제까지나 이주민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는 자세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되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전제하고 그 교육내용은 물론 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저 교육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임.

4 시민단체가 보는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법적 문제

가. 경제적 지원

1) 외국인노동자

- 인도적 차원에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까지 긴급복지 수혜자격이 확대 되어야 할 것임.

2) 난민

- 난민 인정자는 입법 예고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움.

나. 건강 지원

1)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난민의 보험료와 보험료 계산시점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불안한 생활에서 안정적 도움이 절실한 체류 외국인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일회성 도움이 아닌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도 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같이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어 일상적인 의료혜택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2) 난민

- 일상적인 의료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보호 서비스가 필요함.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 등록이 가능해져서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고용 지원

1) 외국인노동자

-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근거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이므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음.

라. 주거 지원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난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주거 관련 제도가 필요함.

마. 교육 지원

- 국적국 학제의 상이함이나 학력의 확인 가능한 증빙이 없어 학교 입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임.

- 학교에서의 학력인정이 되지 않고 수료만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주아동이 전자 시스템에 의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제7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의 지역사례

1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특성

-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양상과 지역 차원의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특징 중 하나는 지역별로 이주민의 구성과 성격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임.
- 다문화사회정책의 지자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적 혹은 행정적 단위를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

2 사례지역 1 : 경기 안산시

가. 거주 외국인 현황

- 안산시는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이 2011년 1월 기준 50,864명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밀집도가 현저히 높은 대표적인 지역임.
-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69.1%로 상당히 높아 주로 공단 입지의 지역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나.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 안산시는 2007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전국 최초로 2009년 3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획기적인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
- 안산시는 또한 2005년 전국 최초로 이주민 전담부서인 ‘외국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정책 거버넌스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

-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2008년 관주도의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지자체 내의 부서와 통합하여 ‘외국인주민센터’라는 별도의 전담 기구를 탄생시키고 담당공무원 20명을 배치함.

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의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인권 증진 기반조성,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이해증진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1999년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을 통하여 민간 부문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었음.
- 안산시 지역에서는 보편적 인권 옹호 성격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이 이루어짐.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주민 정책 추진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극명하게 나누는 중앙부처의 정형화된 관리 방식의 이식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음.
-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거주 외국인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가 제도 내부에 마련되었음.
- 2009년에는 ‘안산시거주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도 설치·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거버넌스 체제가 지자체 제도로 포섭되는 경향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3 사례지역 2 : 경기 수원시

가. 거주 외국인 현황

- 수원시 외국인주민은 2008년 25,019명에서 2009년 30,139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1,552명으로 2008년 대비 26.1% 증가하였음.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 외국인주민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임.

나.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 수원시는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
- 표준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거주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수원시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은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담당인력 5명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 수원시가 외국인주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수원시는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수원중앙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은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복지사업,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와 ‘수원이주민센터’임.
- 두 기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상담이며,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주요 대상임.
- 작업장 환경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야 하고, 비합법적 체류의 문제는 법무부와 협조하여야 함. 이러한 문제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수원시의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들 간 연계가 부족하고, 동일 기능수행으로 경쟁적 관계 형성이 드러나고 있음.
-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사례를 원활하게 의뢰하거나 받기 위해서는 기관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네트워크를 추동할 핵심기관이 필요함.

4 사례지역 3 : 전북 무주군

가. 거주 외국인 현황

- 무주군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로 2011년 현재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하여 총 152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음.

나.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

- 무주군은 2010년 4월 들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표준조례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자로 한정하되,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재해·질병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거나 비합법적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음.

- 무주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없으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여성복지업무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여성복지정책과를 소관부서로 한 것은 외국인주민의 58.1%가 여성이기 때문으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담인력 없이 겸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다.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 주요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녀방문학습지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을 154세대 52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 무주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 양상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이 지방 차원에서 집행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줌.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주요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고 이외에 지역의 몇몇 민간단체가 간헐적·주변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
- 무주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음.
- 무주군과 같이 대부분의 이주민이 결혼이민자이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미약

한 가운데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관료적 집행구조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5 시사점

- 지역별 사례 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거주 외국인 사회복지지원 체계는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 지원 사업 내용, 민관의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사회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특성과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조정과 협력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구체적으로 정책 의제 발굴 및 방향설정, 실행 등 정책 과정의 각 단계별로 중앙부처와의 관계설정,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 사이의 경쟁과 비협력 문제, 당사자인 이주민의 참여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거버넌스를 지속할만한 중심적 조정자로서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제8장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지원방향의 개선방안

가. 외국인주민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기초한 사회보장

- 유럽 선진국의 이주민정책은 체류 자격·국적 관련 정책·이민자를 위한 언어 및 적응 교육만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사회복지지원체계 관련 정책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음. 그 이유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에게도 사회복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임.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정부는 외국인등록을 필수로 하며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자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 이전이라도 사회·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에게 혜택 및 자격은 물론 현재 시행하는 다문화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만 보임.

나. 복지적 접근에서 역량강화적 접근으로 전환

- 이주민 접근 방식을 수동적인 복지수혜자 위치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역량강화를 통한 이주민 통합을 지향하는 이민의 경영·관리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
- 이주민이 사회적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이주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언어, 정치, 경제, 사회, 정체성 등에 대한 영역별 접근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 전략들이 필요함.

2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가.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실효성 강화

-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현재 자율적 선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도 기존 NGO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이 있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적되고 있음. 이주민의 체류 및 국적에 있어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교육지원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나.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혜택 차별 철폐

- 결혼이민자는 한국인의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사회통합정책과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

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

1)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대

-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게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의 법적 합법성에 따라 생명존엄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함.

2) 긴급의료 보장

- 우리나라에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의료문제로 비합법적 체류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다른 식생활 문화 등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임.
- 국제협약에서는 ‘어떠한 비합법 상태에서도 긴급의료는 거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준하여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의 의료 문제에 한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조례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의 핵심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날 때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함.

마.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주민 조항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 자체가 ‘복리사무’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지원체계 관련 조항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 과정에서 주민의 개념에서 배제되었던 외국인을 주민으로 포섭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함.

3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가. 이주민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및 정비

1) 직업교육

- 실제 직업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과 난민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주민의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관찰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함.
- 결혼이주여성은 교육적 배경, 직업경험, 전문성 등 다양성이 높은 집단으로 향후 희망하는 직종 또한 다양함.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직업교육의 직종을 고 숙련의 전문화된 직종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 이주민의 직업교육 기관을 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해 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 등으로 확대하여 이주민이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해야 함.
- 이주민의 언어문제가 직업교육의 장애요인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직업교육을 다언어로 제공하거나 통역사를 배치해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2) 직업적응서비스

- 이주민에게는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도하는 직업적응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나. 한국어교육체계 정비

1) 학교 내 한국어교육

-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의 수단인 언어습득을 지원하는 자국어 수업 프로그램을 제도교육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주아동이 언어적 문제로 한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진해야 함.

2) 학교 밖 한국어교육

-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이 수강생 수의 제한, 강사임금의 문제, 공간의 제한성 등으로 개설강좌 수, 강좌 수준, 개설 시수, 개설 시간대 등이 제한되어 있음.
- 기초적인 한국어 습득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관의 역량 상 상급강좌의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급강좌가 개설될 때까지 한국어 수강을 중단하거나 기초반 강좌를 반복해서 수강하는 경우가 빈번함.
- 따라서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함.

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라. 이주민 적응지원서비스의 제도화

1) 사례관리를 통한 난민적응지원 프로그램 수립

- 난민은 어떤 연고나 지지체계도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고용주 등 최소한의 연고가 있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와는 다른 종류의 적응과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난민은 강도 높은 밀착형 적응 프로그램을 필요로 함.

2) 이주민 사전적응지원프로그램 도입

- 이주민에게 인간으로서 자신이 갖는 권리, 건강보험,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관과 역할, 지역사회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서비스가 구상되고 제공되어야 함.
- 이주민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통합적 정보를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입국 전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이주민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마. 관련 전문직종사자의 이주민 이해에 대한 교과목 이수 의무화

- 대인서비스 전문가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시각은 그가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함.
- 따라서 법조인·의료인·교육자·사회복지사 등 대인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본문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국내 체류 이주민의 증가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990년 1.2%에 불과하던 국제결혼 비율이 2011년에는 10.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2년 6월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1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1980년대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12월 현재 55만 명(법무부, 2012)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6년에 8곳에서 2007년 16곳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등은 외국인 거주자가 2만 명 이상으로 외국인 집단 거주지화 되고 있다(통계청, 2007).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수는 1,409,577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12), 유엔 국제이주기구(IOM)가 발표한 ‘2005 국제 이주자 보고서’는 비합법적 체류를 포함해 약 200만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관찰되는 국내 체류 이주민의 문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주민의 양적 증가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경험하는 문제들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이주민이 경험한 문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이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주체의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관찰된다.

결혼이주여성은 재정상황, 부부관계, 사회문화적 적응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결혼이주 여성의 50% 이상이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절대빈곤상태에 처해 있으나 법적 지위의 한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조차 받기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언어의 한계, 문화·정서적 차이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도 높은 수준이며, 언어폭력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 또한 30% 이상으로 보고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외국인노동자는 하루 2교대, 평균 15시간 이상의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높은 산업재해율과 임금체불율로 고통 받고 있다(설동훈, 2003).

외국인노동자는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받는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건강 문제, 금전적 문제,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많은 경우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라는 이유로 자발 또는 비자발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264명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기는 하나 난민지원에 관한 제도의 미비로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문현, 2008). 이주사유 또는 법적 지위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 난민이 경험하는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는 여타의 외국인 이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적인 이주의 확산은 성인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부모와 함께 이주하거나 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증가하면서 이주아동 인구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주아동 또한 법적 지위와 사회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60% 이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입학이 불가능했으며 이주아동의 15%는 학교의 거부로 교육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특히 이주아동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심리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저해 받았으며 학교생활 중에도 민족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설동훈 외,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인구이동의 확대라는 세계적 기류 속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국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으로서 이들

이 경험하는 문제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체류 이주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고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과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셋째,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넷째,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다섯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이주민의 범위

1) 정의

(1) 사전적 정의

이주란 개인이나 종족, 민족 따위의 집단이 본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민이란 자신이 태어났거나 본래 살던 곳에서 거주지를 이동해 정착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즉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주민은 이주경험을 전제로 한다. 한편 이민자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이주한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민자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이주와 이주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차이가 있으며 이주민보다 협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자신이 태어났거나 또는 본래 살던 국적국을 떠나 우리나라로 이동해 정착한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주한 당사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는 이주민의 정의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민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의한다.

(2) 조작적 정의

이주경험은 개인이나 집단이 이주민으로 분류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인 반면 이주목적, 귀화여부, 체류의 합법성 등은 이주민과 비이주민의 경계를 만드는 필수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복지권을 지닌 귀화자는 이주경험과 관계없이 연구대상에서 제외

하고자 한다. 한편 이주경험이 없으나 부모의 이주경험과 국적으로 인해 사회보장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이주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에 있는 개인은 이주민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자신의 이주경험을 조건으로 하는 사전적 의미의 이주민 정의에서 벗어나 가족의 이주경험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을 자신이나 부모가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이주를 경험했으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의 범위를 결혼이주민, 외국인노동자, 난민, 이주(난민)아동의 네 유형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유형별 이주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주민¹⁾

결혼이주민이란 결혼을 이유로 국적국을 떠나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은 결혼이민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정의에 근거해 본 연구는 결혼이주민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외국인노동자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정의에 근거해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

1) 결혼이주민, 결혼이민자, 혼인이주민 등의 용어가 혼합적으로 사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출처와 맥락에 따라 결혼이주민, 결혼이민자의 용어를 혼용하였다.

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난민

난민이란 정치적 사유 등으로 자신의 국적국 이외의 국가로 피신한 비자발적 이민자이다(정인섭, 2009). 1951년 UN이 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난민인권센터, 2011).

난민은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인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로 세분화된다. 본 연구는 이들 세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난민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이주아동

이주민의 사전적 정의에 근거하면 이주아동은 본인이 태어났거나 살던 곳을 떠나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이주경험과 연령만을 제한할 뿐 아동의 국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위 등은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²⁾은 이주아동을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부모를 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로 정의하여, 아동이나 부모의 이주경험은 배제한 채 부모의 국적과 아동의 연령만을 제한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의 정의에 따르면 내국인과 결혼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어머니를 둔 중도입국 외국인아동은 이주아동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이들 정의의 한계와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주아동을 본인 또는 부모가 국적국을 떠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2010년 10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나.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범위

1)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정의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지원체계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여 일하는 다양한 주체와 일의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원체계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주체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지원체계는 사회복지의 추진 체계, 정책 및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추진 체계는 사회복지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체계화된 방식을 말한다. 정책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에 관한 원칙을 의미하며(Titmuss, 1963) 주로 법령에 기초하여 구조화된다. 전달체계는 정책을 실제화 하는 행정적 절차와 서비스 제공절차를 의미한다.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체계는 이주민의 출입국, 체류권 및 국적, 인권보장 등의 다양한 쟁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상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권으로 제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

(1) 사회복지지원체계 영역에 대한 견해

사회복지의 경계의 탄력성이 커서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정의하는가에 따라 대상이 되는 제도의 영역이 다양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이주민의 기본적 욕구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을 선정했다.

Marshall(1970)은 사회복지의 영역을 소득보장, 보건 및 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으로 구분했다. Townsend(1975)는 Marshall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의 영역을 소득보장, 보건 및 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으로 설명했다. Dinito와 Dye(1983)는 사회복지 경계의 모호성을 전제하고 사회복지를 소득보호, 영양, 의료, 사회서비스의 네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Wilensky(1985)는 의료와 가족정책의 두 영역으로 단순화하기도 했다. Beveridge(1942)는 사회가 보장해야 할 다섯 가지 영역으로 소득, 의료, 교육, 주택과 함께 고용을 추가해 다른 학자들과 차이를 보였다(김학만·김경우·이용환·진석범, 2005 재인용).

사회복지의 경계를 인간의 삶의 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모호해지는 문제가 관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을 이주민의 기본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계지원, 건강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사회적응서비스지원으로 제한했다.

(2) 사회복지지원체계의 영역

① 생계지원

생계지원정책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법으로 정해진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여 개인 또는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계지원정책에는 대표적 공공부조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긴급복지지원정책 등이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생존권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소득이 최저생활비 이하인 가족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빈곤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긴급복지지원정책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정책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한다.

② 건강지원

건강지원정책은 사회구성원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정책을 통해 건강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은 사회보험원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건강보험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법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험료 부담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김학만 외,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료급여정책은 저소득국민의 의료비 보장과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예방, 재활, 치료 서비스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한다.

③ 고용지원

고용지원정책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고용지원정책은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는 고용촉진정책과 취업자의 취업안정성을 높이는 고용안정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고용지원정책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빈곤감소와 사회참여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 주요한 정책이다. 이주민의 고용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이 있으나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의 고용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④ 교육지원

교육지원정책은 교육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방침이나 체계적 수단, 교육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활동의 기본방침이나 지도원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지원정책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에서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제공하는 교육비지원등도 교육지원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사회적응서비스지원

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은 이주민의 효과적 사회적응서비스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수단이다. 이주민의 사회적응서비스지원정책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한다.

사회적응지원서비스는 이주민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헌연구, 초점집단인터뷰, 사례분석, 사회조사의 다양한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한 혼합연구로 설계했다.

나.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첫째,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둘째,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외국의 법률과 정책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 초점집단인터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가 실천경험을 통해 통찰한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했다. 참여자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3명의 사회복지 현장전문가로 구성되었다. 1회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은 어떠하며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다.

라. 사례분석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했다. 주민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의 비율이 높은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외국인노동자가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유사군 사이의 비교를 시도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특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마. 사회조사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사회조사를 실행했다.

1) 표집 및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 표집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은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곳과 지역사회복지관 1곳, 경기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곳, 전남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곳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 표집이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12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126명의 사례가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외국인노동자는 서울지역 교회 1곳, 서울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곳, 다문화축제현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12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난민은 난민인권센터를 통해 조사대상자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5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주아동은 서울지역 지역사회복지관 1곳, 서울지역 다문화 학교 2곳, 난민인권센터를 통해 조사대상자 표집이 이루어졌으며 67명의 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 자료수집방법

조사도구는 문헌연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구

조화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난민, 이주아동, 난민아동 등 5개 유형의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며, 유형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추가되었다. 외국인노동자용 질문지는 영어와 따갈로그어, 몽골어 버전이, 이주아동용 질문지는 몽골어 버전이, 난민과 난민아동용 질문지는 프랑스어와 영어의 두 가지 번역본이 제작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능력에 따라 자기기입법과 대면면접법이 병행되었다. 외국인노동자 또한 자기기입법과 대면면접이 병행되었으며, 영어, 우즈베키스탄, 몽골어 통역자가 대면면접에 참여했다. 이주아동과 난민은 자기기입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대면면접은 2시간의 면접원 교육을 받은 유급면접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학과 학부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었다.

제3장 문헌고찰

1 이주민의 인구동향

가. 체류합법성을 기준으로 한 이주민 규모

1)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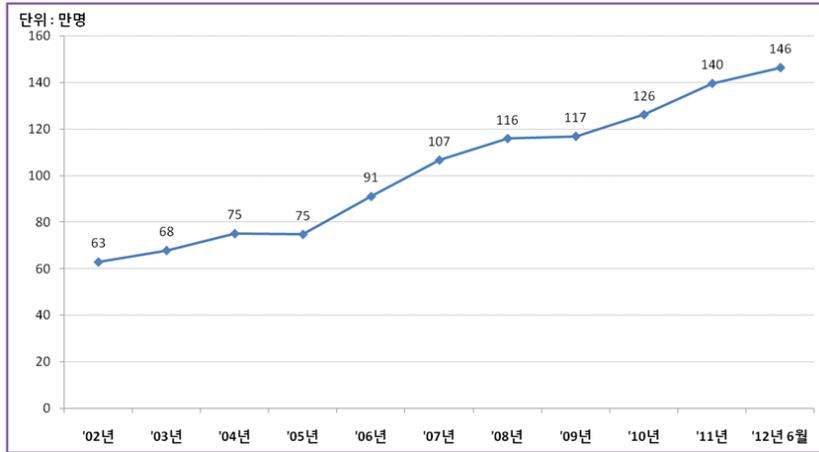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유형은 90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등록외국인, 90일 이하의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단기체류자 그리고 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로 거소신고를 마친 거소신고자 세 가지로 구분된다. 2012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1,462,694명이며 이중 등록외국인이 975,922명, 단기체류자가 324,170명, 거소신고자가 162,602명에 해당한다 (법무부, 2012).

<표 3-1> 체류외국인 총괄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1년 6월	1,392,167	978,237	306,510	107,420
2012년 6월	1,462,694	975,922	324,170	162,602
전년대비증감률	5.1%	-0.2%	5.8%	51.4%
구성비	100%	70.3%	22.0%	7.7%

출처: 법무부(2012. 9)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 6월 1,392,167명 대비 2012년 6월까지 5.1%가 증가했다.



출처: 법무부(2012. 9)

<그림 3-1> 체류외국인 동향

2) 등록외국인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총 975,922명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368,163명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중국(147,138명), 베트남(114,123명), 필리핀(34,000명), 인도네시아(31,471명), 우즈베키스탄(28,949명), 타이(24,036명), 미국(23,244명), 일본(22,157명), 캄보디아(21,705명), 몽골(21,509명), 스리랑카(21,502명), 타이완(21,173명) 등이 20,000명 이상으로 비교적 큰 규모를 보인다(법무부, 2012).

<표 3-2>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명)

총계	중국 (한국계 포함)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이	미국	일본	캄보디아	몽골	스리랑카	타이완	기타
975,922	515,301	114,123	34,000	31,471	28,949	24,036	23,244	22,157	21,705	21,509	21,502	21,173	96,752

출처: 법무부(2012. 9)

등록외국인의 연령대별 인구 수는 9세 이하가 16,816명, 10대가 16,733명, 20대가 308,826명, 30대가 254,174명, 40대가 194,573명, 50대가 145,235명, 60대가 32,505명, 70대가 5,401명, 80대 이상이 1,659명에 달

한다. 20대가 31.6%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30대가 26.0%, 40대가 19.9%로 뒤를 이었다(법무부, 2012).

<표 3-3> 등록외국인의 연령대별 인구 (단위: 명, %)

연령대	인구	비율
9세 이하	16,816	1.72
10대	16,733	1.71
20대	308,826	31.65
30대	254,174	26.05
40대	194,573	19.94
50대	145,235	14.88
60대	32,505	3.33
70대	5,401	0.55
80대 이상	1,659	0.17
총계	975,922	100.00

출처: 법무부(2012. 9)

비자 유형별 등록외국인 수는 주로 외국인노동자가 취득하게 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소지자가 238,672명, 주로 중국동포 취업자들이 취득하는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가 286,684명, 결혼이주여성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 비자(F-6) 소지자가 50,709명에 이른다(법무부, 2012).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2012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409,577명으로 우리나라 주민 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한다. 외국인노동자가 588,944명, 결혼이민자가 144,214명, 유학생이 87,221명, 재외동포가 135,020명, 기타 외국인이 162,082명, 혼인귀화자가 76,472명, 기타 사유의 귀화자가 47,040명, 국제 결혼가정자녀가 168,583명이다(행정안전부, 2012).

남성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전체 남성 외국인주민의 6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뒤이어 기타 외국인이 12.9%, 외국국적 동포가 10.5%를 차지했다. 여성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30.2%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뒤이어 결혼이민자가 20.9%, 기타 외국인이 13.1%, 외국국적 동포가 7.2%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2).

<표 3-4>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남	여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노동자	408,912	180,032	588,944
	결혼이민자	19,630	124,584	144,214
	유학생	42,250	44,971	87,221
	외국국적 동포	67,990	67,030	135,020
	기타 외국인	83,690	78,392	162,082
	소계	622,472	495,009	1,117,481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혼인귀화자	4,268	72,205	76,472
	기타 사유	18,561	28,479	47,040
	국제결혼가정자녀	86,169	82,414	168,583
	소계	108,998	183,098	292,096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3) 불법체류외국인³⁾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은 171,659명으로 집계되었다(법무부, 2012). 이는 2011년 6월 말 166,518명 대비 3.1%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시기의 국내 체류외국인 1,462,694명의 11.7%에 달한다.

<표 3-5>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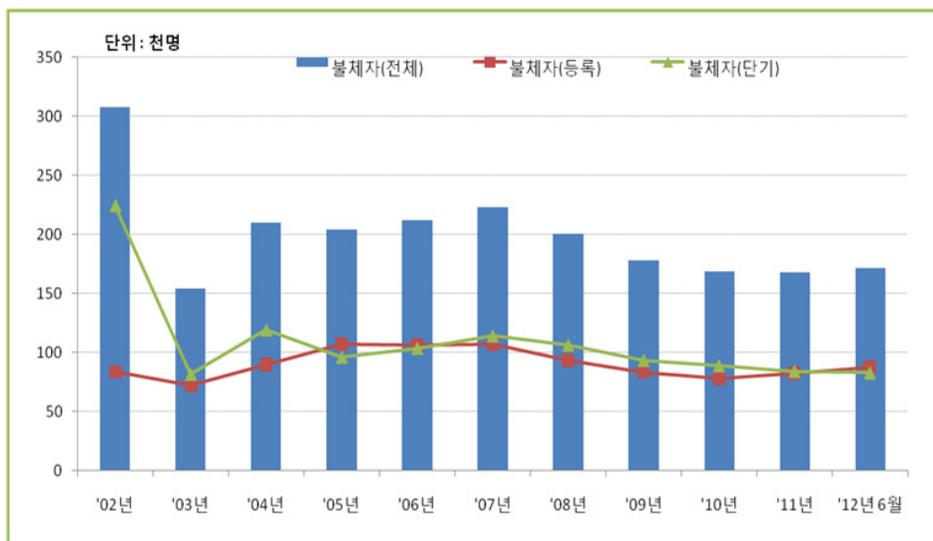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총계	등록	단기체류	거소신고
2011년 6월	166,518	80,206	85,146	1,166
2012년 6월	171,659	87,691	83,045	923
전년대비 증감률	3.1%	9.3%	-2.5%	-20.8%

출처: 법무부(2012. 9)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는 2002년 289,239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 첫 만료시점인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법무부의 통계를 인용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표현했다.



출처: 법무부(2012. 9)

<그림 3-2> 국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변화추이

나. 유형별 이주민 규모

1) 결혼이주민

1980년 특정 종교의 영향으로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 초에는 조선족 동포나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활발해졌다. 1990년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와 구소련국가 여성과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문화적 스펙트럼이 확대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1990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또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에 의한 국제결혼건수는 4,710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결혼건수의 1.2%를 차지했다. 이들 국제결혼부부의 83%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이루어졌으며 17%만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 사이 국제결혼 사례는 크게 증가하여 2000년 전체 결혼건수의 3.7%에 해당하는 12,319건이 국제결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국제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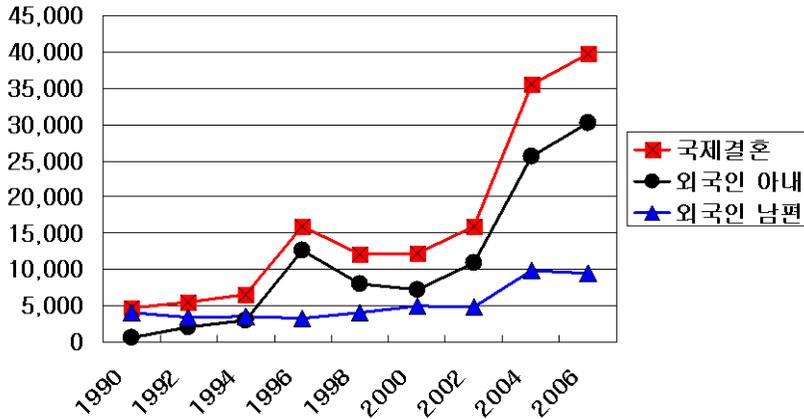
부부의 54%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그리고 46%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전체 결혼건수의 11.9%에 해당하는 332,752건이 국제결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제결혼부부의 76%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에 의한 결혼으로 나타나, 1990년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에 의한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대조를 보인다(통계청, 각해당년도). 이는 곧 우리사회의 국제결혼 사례의 증가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3-6>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단위: 건, %)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0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2	419,774	5,534	1.3	2,057	0.5	3,477	0.8
1994	393,121	6,616	1.7	3,072	0.8	3,544	0.9
1996	434,911	15,946	3.7	12,647	2.9	3,299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출처: 통계청(1990~2006)



<그림 3-3> 국제결혼건수의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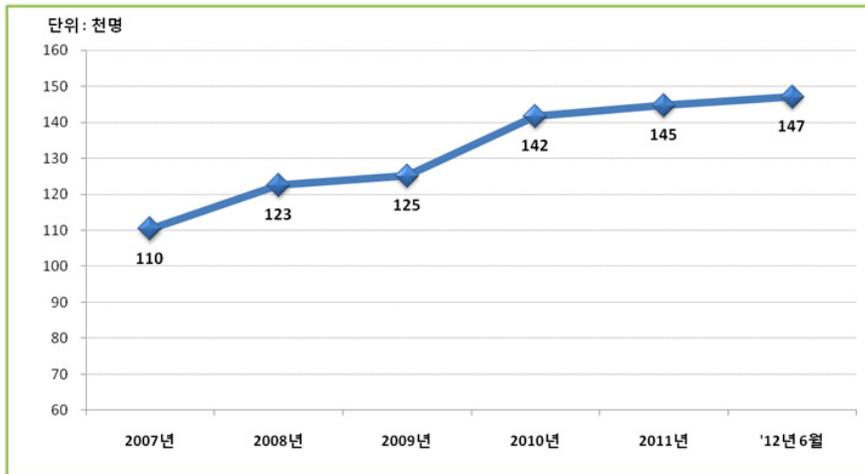
<그림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는 매년 증가추이를 보여 2010년에는 결혼이민자 체류가 전년대비 13.2%, 2012년에는 전년대비 2.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7>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단위: 명, %)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1년6월	'12년6월
인원	110,362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4,058	147,091
전년대비 증감률	-	11.0%	2.1%	13.2%	2.1%	-	2.1%

출처: 법무부(2012. 6)



출처: 법무부(2012. 6)

<그림 3-4>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법무부의 결혼이민자⁴⁾ 체류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147,091명이며 여자가 126,741명, 남자가 20,350명에 이른다. 국적국별로는 중국⁵⁾이 63,639명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베트남 38,753명, 일본 11,448명, 필리핀 9,118명, 캄보디아 4,583명, 타이 2,613명, 몽골 2,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 국제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47,091	63,639	28,630	38,753	11,448	9,118	4,583	2,613	2,412	14,525
여자	126,741	51,934	20,953	38,537	10,383	8,864	4,577	2,568	2,349	7,529
남자	20,350	11,705	7,677	216	1,065	254	6	45	63	6,996

출처: 법무부(2012. 6)

*여성 86.2%, 남성 13.8%

*중국 43.3%, 베트남 26.3%, 일본 7.8%, 필리핀 6.2% 순임

4) 국민의 배우자 :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5) 한국계가 포함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민 가운데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수는 2006년 65,243명, 2007년 87,964명, 2008년 102,713명, 2009년 125,673명, 2010년 125,087명, 2011년 141,65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2년 1월 현재 결혼 이주민수는 144,214명이며 남성이 19,630명으로 13.6%, 여성이 124,584명으로 86.4%를 차지했다(행정안전부, 2012).

<표 3-9> 결혼이주민 거주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65,243	87,964	102,713	125,673	125,087	141,654	144,214
남성	9,835 (15.1%)	12,497 (14.2%)	13,711 (13.3%)	15,190 (12.1%)	15,876 (12.7%)	18,561 (13.1%)	19,630 (13.6%)
여성	55,408 (84.9%)	75,467 (85.8%)	89,002 (86.7%)	110,483 (87.9%)	109,211 (87.3%)	123,093 (86.9%)	124,584 (86.4%)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결혼이주민의 국적별 인구수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현재 베트남이 37,03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34,906명, 한국계 중국이 29,184명, 일본이 11,145명, 필리핀이 8,292명, 캄보디아가 4,561명, 태국이 2,593명, 중앙아시아가 2,508명, 미국이 2,408명, 몽골이 2,387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을 포함한 기타 국가국적의 결혼이주민이 9,198명에 달했다.

<표 3-10> 국가별 결혼이주민 국적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베트남	중국	중국(한국계)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중앙아시아	미국	몽골	기타
전체	144,214	37,032	34,906	29,184	11,145	8,292	4,561	2,593	2,508	2,408	2,387	9,198
남성	19,630	181	3,891	7,558	1,007	226	6	42	68	1,806	58	4,787
여성	124,584	37,121	31,015	21,626	10,138	8,066	4,555	2,551	2,443	602	2,329	4,138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2) 외국인노동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2012년 1월 현재 588,944명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2007년에 259,805명, 2008년에 437,727명, 2009년 575,657명, 2010년 558,538명, 2011년 552,94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적국별 외국인노동자 수는 중국이 22,992명, 한국계 중국인이 295,604명, 일본은 1,604명, 몽골은 11,047명, 베트남은 64,407명, 필리핀은 26,855명, 태국은 22,518명, 캄보디아는 11,649명, 미국은 13,796명에 달했다(행정안전부, 2012).

<표 3-11> 국가별 거주 외국인노동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거주자	259,805	437,727	575,657	558,538	552,946	588,944
중국	30,952	31,720	25,234	21,640	21,705	22,992
중국(한국계)	87,162	222,547	321,847	307,609	281,211	295,604
일본	2,741	1,249	1,317	1,413	1,481	1,604
몽골	11,569	14,391	13,276	12,646	12,380	11,047
베트남	25,659	40,620	50,244	51,371	56,889	64,407
필리핀	23,946	30,979	30,674	29,532	29,312	26,855
태국	17,862	23,813	26,011	25,180	24,263	22,518
캄보디아	2,289	3,897	4,779	5,329	7,106	11,649
미국	3,472	2,304	11,939	13,337	14,490	13,796
기타	54,153	66,207	90,336	90,481	104,109	118,472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외국인노동자의 현황은 산업연수(D-3), 교수, 연구, 산업지도(E-1~E-10), 방문동거자 취업(F-1-4), 방문취업(H-2)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노동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행정안전부, 2012). 따라서 이는 고학력 및 고급기술을 지닌 전문직 노동자를 포함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비전문직 노동자 규모는 위에서 제시된 외국인노동자 규모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문직 노동자는 주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2012년 6월 현재 비전문취업비자 소지자는 238,672명,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는 286,684명으로 파악된다(법무부, 2012).

3) 난민

2012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인은 모두 4,593명이며 이중 29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151명이며 2,133명은 난민지위가 불허되었고 721명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반기 동안 667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이중 31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신청자 대비 난민지위인정률이 4.6%에 그쳤다. 난민지위신청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신청건수 대비 인정건수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 3-12> 난민지위 현황 (단위: 명)

연도 \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회
총계	4,593	291	151	2,133	721
'94-'03	251	14	13	50	39
2004	148	18	1	7	9
2005	410	9	13	79	29
2006	278	11	13	114	43
2007	717	13	9	86	62
2008	364	36	14	79	109
2009	324	70	22	994	203
2010	423	47	35	168	62
2011	1,011	42	20	277	90
2012. 1~6월	667	31	11	279	75

출처: 법무부(2012. 6)

4) 이주아동

이주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는 없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자녀 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2012년 1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는 총 168,583명이며 이중 남자가 86,169명, 여자가 82,414명이다. 양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는 10,451명, 한 부모만이 외국인인 자녀는 146,071명이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아동을 분류한 것으로 아동의

국적이나 이주여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이주아동의 현황에 대한 파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3-13> 이주아동 현황 (단위: 명)

	계	남	여
외국인부모	10,451	5,249	5,202
외국인-한국인부모	146,071	74,670	71,401
한국인 부모 ⁶⁾	12,061	6,250	5,811
총계	168,583	86,169	82,414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외국인 자녀의 수는 2007년에 44,258명, 2008년에 58,007명, 2009년에 107,689명, 2010년에 121,935명, 2011년 151,1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국적국별 외국인 자녀의 수는 중국이 34,852명, 베트남이 34,356명, 한국계 중국인이 33,186명에 이른다(행정안전부, 2012).

<표 3-14> 국가별 외국인 자녀 거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중국	7,716	10,889	35,932	29,800	34,852
중국(한국계)	14,201	16,681	18,669	31,404	33,186
일본	6,016	6,508	6,838	5,734	14,510
몽골	405	816	1,681	1,807	2,250
베트남	5,062	8,194	22,491	27,517	34,356
필리핀	6,013	6,378	10,687	11,926	13,937
태국	799	870	1,563	1,711	2,082
인도네시아	202	196	499	505	576
미국	852	2,406	683	821	1,207
기타	2,992	5,069	8,646	10,707	14,198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연령대별로는 전체 외국인 자녀수 대비 만6세 이하의 자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만16세~만18세 이하의 자녀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했으나 부모의 재혼으로 조사당시 현재 외국인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동의 수이다.

<표 3-15> 연령별 외국인 자녀 거주 현황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만6세 이하	26,445	33,140	64,040	75,776	93,537
만7세~ 만12세 이하	14,392	18,691	28,992	30,587	37,590
만13세~ 만15세 이하	2,080	3,672	8,082	8,688	12,392
만16세~ 만18세 이하	1,341	2,504	6,645	6,884	7,635
합계	44,258	58,007	107,759	121,935	151,154

출처: 행정안전부(2012. 1)

2 다문화정책 모델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의 수준은 국가가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다음에서는 다문화정책의 대표적 유형인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차별적 배제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동화주의 모델

동화주의 모델은 소수집단이 주류집단과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융해되어 주류집단과 분리될 수 없는 데에 목적을 둔다(이종윤, 2010). 따라서 이 모델에서의 국가는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의 정체성에 쉽게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예를 들면 속지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소수집단에게 국적이거나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귀화 절차의 간소화로 소수집단이 단기간에 주류사회에 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 시행,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공하여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의 언어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동화주의 모델을 다문화정책으로 선택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

나. 다원주의 모델

다원주의 모델은 민족적인 차이나 이질성을 차별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집단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존중한다. 따라서 국적국으로 유입된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소수집단의 주류사회와의 공존에 목적을 둔다(Marger, 2002).

다원주의는 크게 평등적 다원주의와 불평등 다원주의로 나누어진다. 평등적 다원주의는 소수집단이 정치·경제 제도 내에서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하면서 그들이 지니는 구조적·문화적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평등적 다원주의에서는 평등적 이데올로기의 작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민족적 갈등 수준을 감수하며 주류집단과의 균형과 유대를 강조한다. 반면 불평등 다원주의는 구조적·문화적 특수성의 분리, 권력과 특권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으로 인해 주류사회로 유입된 소수집단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높은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극단적 분열이 일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다. 차별적 배제모델

차별적 배제모델은 소수집단을 주류사회에 필요한 영역 내에서 받아들여주류사회로 유입되는 것을 공적으로 엄격히 통제한다. 따라서 소수집단은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거권과 같은 사회·정치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제한적이다. 국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숙민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귀화는 가능하나 엄격한 조건이 따르게 되어 소수집단을 배제하게 된다. 차별적 배제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 1960년대 독일의 ‘초청 노동자’제도를 들 수 있다. 소수집단의 노동자들은 몇몇의 노동시장에 어려움 없이 속하게 되었지만 독일의 주류문화에 속하는 것은 장려되지 않았다. 주류사회는 소수집단에 대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집단이 주류집단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4장 국내 체류 이주민의 생활실태

1 결혼이주여성

가. 일반적 특성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적이 있거나 결혼한 상태인 126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92.8%는 기혼 유배우자, 0.8%는 사별, 5.6%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31.49세이며 최소 19세에서 최대 60세의 넓은 범주를 보였다.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국적국에서의 교육기간은 평균 11.3년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최저 3년에서 최대 19년으로 나타났다. 국적국별 분포는 중국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베트남 27.8%, 필리핀 11.1%, 일본이 7.1%를 차지했다. 그 외에 캄보디아, 몽골, 태국, 라오스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32.5%에 불과했으며 11.10%는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성이 56.3%였으며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한국국적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신청최소기한을 만족하지 못해서, 서류준비가 힘들어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신청 시 어려운 점으로는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라서(23.9%), 말이 통하지 않아서(18.3%),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11.0%)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국적신청에 관련된 어려움으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연령	126	31.49	7.23	60	19
거주기간	126	5.34	4.05	17	0
교육기간	125	11.30	3.60	19	3

<표 4-2>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0	0.00
	여성	126	100.00
결혼상태	기혼 유배우자	116	92.80
	사별	1	0.80
	이혼	7	5.60
	기타	1	0.80
국적국	중국	44	34.90
	일본	9	7.10
	베트남	35	27.80
	필리핀	14	11.10
	몽골	6	4.80
	태국	3	2.40
	라오스	2	1.60
	캄보디아	7	5.60
	기타	6	4.80
한국국적	있음	41	32.50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	14	11.10
	신청하지 않음	71	56.30
	기타	0	0.00
국적신청 시 어려운 점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서	12	11.00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26	23.90
	말이 통하지 않아서	20	18.30
	서류준비가 어려워서	2	1.80
	신청기간이 길어서	2	1.80
	신청할 생각이 없어서	4	3.70
	한국 온지 2년 미만이라서	4	3.70
	기타	39	35.80

나. 경제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83,486원(표준편차=593,212)으로

비교적 낮았다. 가족의 소득원은 83.0%가 남편, 12.1%가 자신이라고 답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응답도 3.2%를 차지했다.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결혼이주여성은 3.2%에 불과했다. 생활비의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18.6%가 매우 적다, 38.9%가 조금 적다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적당하다는 이주여성은 34.7%였으며 조금 많다는 이주여성도 6.7%에 달했다. 23.5%의 이주여성은 지난 1년간 생활비가 부족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으며 이중 56.0%는 가족에게, 40.0%는 친구에게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실태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생활비	109	1,083,486.24	593,212.18	3,000,000	100,000

<표 4-4>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실태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가족생활비	남편이 번다	103	83.06
	내가 번다	15	12.10
	부모님이 준다	4	3.23
	기타	2	1.61
생활비 수혜여부	비수혜	121	96.80
	수혜	4	3.20
생활비에 대한 주관적 만족	매우 적다	22	18.64
	조금 적다	46	38.98
	적당 하다	41	34.75
	조금 많다	8	6.78
	매우 많다	1	0.85
생활비를 빌린 경험	없다	94	76.42
	있다	29	23.58
생활비를 빌린 대상	가족	14	56.00
	친구	10	40.00
	이웃	0	0.00
	교회나 단체	0	0.00
	기타	1	4.00

다. 건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9.2%는 자신의 건강을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32.0%가 좋은 편, 13.6%가 매우 좋은 편이라고 답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여성은 24.0%를 차지했으며 질병의 종류는 비염 또는 알레르기가 20.0%, 갑상선 질환이 12.0%, 자궁질환이 8.0%, 요통이 8.0%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간, 빈혈, 신장, 요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63.2%로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률인 96.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1%의 이주여성은 지난 1년 동안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건강보험이 없어서가 22.2%, 시간이 없어서, 남편이나 가족이 못 가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각각 11.1%를 차지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주여성의 50.0%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25.0%는 그냥 쉬는 등 적절한 대책 없이 병이나 부상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6%의 이주여성은 병원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는 친구가 45.5%, 교회나 단체가 25.3%, 가족이 18.2%를 차지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만을 분리해서 살펴보면 건강상태, 질병 보유율, 건강보험가입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병원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 15%의 여성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이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의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지지체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4-5>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4	3.20
	조금 나쁘다	15	12.00
	보통이다	49	39.20
	좋은 편이다	40	32.00
	매우 좋다	17	13.60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병	없다	95	76.00
	있다	30	24.00
병명 또는 이상이 있는 곳	간	1	4.00
	갑상선	3	12.00
	다리	1	4.00
	두통	1	4.00
	빈혈	1	4.00
	신장	1	4.00
	요도	1	4.00
	위	1	4.00
	자궁	2	8.00
	요통	2	8.00
	비염 및 알레르기	5	20.00
	기타	6	24.00
	건강보험 여부	없다	30
있다		79	63.20
모르겠다		16	12.80
질병부상에도 병원 못간 경험	없다	113	91.87
	있다	10	8.13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돈이 없어서	4	44.40
	시간이 없어서	1	11.10
	건강보험이 없어서	2	22.20
	남편이나 가족이 못 가게 해서	1	11.10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0.00
	말이 통하지 않아서	1	11.10
	기타	0	0.00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약을 먹거나 발랐음	0	0.00
	그냥 쉬었음	2	25.00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1	12.50
	아무것도 하지 못함	4	50.00
	기타	1	12.50
병원비 도움 필요	없다	113	90.40
	있다	12	9.60
병원비 도움 요청 대상	도와달라고 하지 않음	1	9.10
	친구	5	45.50
	이웃	0	0.00
	교회나 단체	3	27.30
	가족	2	18.20
	기타	0	0.00

라. 고용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4.7%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인 29.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하는 일로는 8.9%가 강사, 7.3%가 기술이 필요 없는 공장 일, 4.8%가 서비스, 4.0%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공장 일, 4.0%가 사무직, 0.8%가 농사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주여성은 일주일에 평균 4.8일, 하루 평균 7.25시간을 일했으며 한 달 평균 근로수입은 약 898,333원(표준편차=547,798)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직업은 19.5%가 사무직, 12.2%가 공장, 9.8%가 장사, 7.3%가 서비스, 6.5%가 운전, 5.7%가 기술직, 5.7%가 어업 등으로 조사되었다. 배우자는 일주일에 평균 5.7일, 하루 평균 10.1시간을 일했으며 한 달 평균 근로수입은 약 2,130,117(표준편차=813,242)로 나타났다.

<표 4-6>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실태1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업	없음	81	65.30
	단순기술	9	7.30
	숙련기술	5	4.00
	서비스	6	4.80
	장사	0	0.00
	농사	1	0.80
	농장	0	0.00
	강사	11	8.90
	사무	5	4.00
	기타	6	4.80
	취업희망 여부	아니오	34
예		90	72.58
배우자 직업	없음	7	5.70
	단순기술	15	12.20
	서비스	9	7.30
	장사	12	9.80
	사무직	24	19.50
	농사·농장	3	2.40
	어업	7	5.70
	노동	6	4.90
	운전	8	6.50
	건설	4	3.30
	공무	2	1.60
	자영	5	4.10
	숙련기술	7	5.70
	강사	2	1.60
	기타	12	9.80

<표 4-7> 결혼이주여성의 고용실태2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결혼이주여성	주당 근무일수	34	4.88	1.43	7	2
	일당 근무시간수	32	7.25	3.37	17	0.5
	월 평균 수입	30	898,333.33	547,798.62	3,000,000	300,000
배우자	주당 근무일수	94	5.75	0.97	7	1
	일당 근무시간수	91	10.15	2.62	24	4
	월 평균 수입	85	2,130,117.65	813,242.32	4,800,000	400,000

마. 주거

결혼이주여성의 주거형태는 47.9%로 자택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 28.1%가 전세, 19.3%가 월세, 4.1%가 기타로 기타 주거형태로는 관사, 동생 집에 거주 등이 있었다. 1.6%의 이주여성은 지난 1년간 1번에서 3번 정도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한 경험이 있으며, 0.8%의 이주여성은 4번에서 6번의 노숙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노숙한 이유로는 50%가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이 쫓아내서, 25%가 배우자가 쫓아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친구가 50%,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가 50%를 차지했다.

<표 4-8> 결혼이주여성의 주거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거형태	월세	24	19.83
	전세	34	28.10
	자택	58	47.93
	기타	5	4.13
노숙한 경험	없다	120	96.77
	1번~3번	2	1.61
	4번~6번	1	0.81
	7번~9번	0	0.00
	10번 이상	1	0.81
노숙 이유	돈이 없어서 주인에게 쫓겨남	0	0.00
	배우자가 쫓아냄	1	25.00
	다른 가족이 쫓아냄	2	50.00
	내가 도망쳐 나옴	0	0.00
	기타	1	25.00
잘 곳이 없을 때 도움 요청 대상	아무도 없음	2	50.00
	친구	2	50.00
	이웃이나 가족	0	0.00
	교회나 단체	0	0.00
	기타	0	0.00

바. 교육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이 87.9%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교육이 31.4%, 한국문화교육이 25.8%, 부모교육이 20.1%, 직업기술교육이 16.1%, 한국예절교육이 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 29.3%, 직업기술교육이 26.8%, 컴퓨터교육이 19.5%, 한국요리교육이 14.6%로 조사되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을 답한 경우가 34.0%로 상대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4-9>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에서 받은 교육	한국어교육	없다	15	12.10
		있다	109	87.90
	컴퓨터교육	없다	85	68.55
		있다	39	31.45
	직업기술교육	없다	104	83.87
		있다	20	16.13
	한국문화교육	없다	92	74.19
		있다	32	25.81
	한국예절교육	없다	115	92.74
		있다	9	7.26
	부모교육	없다	99	79.84
		있다	25	20.16
	기타	없다	121	97.58
		있다	3	2.42
꼭 필요한 교육	한국어교육		36	29.30
	컴퓨터교육		24	19.50
	직업기술교육		33	26.80
	한국요리교육		18	14.60
	한국예절교육		2	1.60
	부모교육		4	3.30
	기타		6	4.90

사. 가정생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수는 1명인 응답자가 40.8%, 2명이 26.4%, 3명이 7.2%, 4명이 1.6%, 자녀가 없는 여성이 24.0%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으로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서가 54.5%로 가장 높았으며,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22.7%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공부를 못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내가 공부를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돈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57.2%는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이중 80.0%는 낮 시간 동안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14.2%는 자신이, 5.7%는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는 너무 어리기 때문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12.5%는 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보육비 지원의 경우 87%의 결혼이주여성이 보조를 받는 것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양육 시 필요한 도움으로는 아이 양육법을 배우고 싶다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8.8%를 차지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비 보조가 17.4%로 나타났다.

<표 4-10>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자녀수	없음	30	24.00
	1명	51	40.80
	2명	33	26.40
	3명	9	7.20
	4명	2	1.60
	5명 이상	0	0.00
학령기 아동여부	없다	100	80.00
	있다	25	20.00
학교 보낼 때 힘든 점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1	4.50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0	4.50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서	1	54.50
	내가 공부를 도와주지 못해서	12	4.50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1	4.50
	돈이 없어서	1	4.50
	하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	22.70
	기타	1	4.50
학령기 아동에게 필요한 도움	공부를 도와주는 것	17	77.27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	0	0.00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것	1	4.55
	급식비나 준비물을 지원	1	4.55
	학교 끝나고 돌봐주는 것	1	4.55
	기타	2	9.09

미취학 자녀	없다	53	42.74
	있다	71	57.26
미취학 자녀 양육	내가 돌본다	10	14.29
	가족들이 돌본다	4	5.7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	56	80.00
	기타	0	0.00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	아이가 어울리지 못해서	0	0.00
	집근처에 없어서	0	0.00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0	0.00
	아이가 너무 어려서	13	81.30
	돈이 없어서	2	12.50
	기타	1	6.30
보육비의 정부보조 여부	안받음	8	12.90
	받음	54	87.10
양육 시 필요한 도움	아이 양육법을 배우고 싶음	33	47.80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	12	18.80
	원비를 도와주는 것	12	17.40
	어린이집, 유치원의 증가	5	7.20
	아이교육지원	4	5.80
	기타	2	2.90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6.4%를 차지했으며 이들 여성의 75.0%는 일 년에 한번 정도, 25.0%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강도는 몇 시간 아플 정도가 42.9%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하루 동안 아플 정도, 며칠 동안 아플 정도,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각각 14.3%를 차지했다. 폭력을 당한 후 필요한 서비스로는 이야기 할 곳으로 57.1%의 높은 욕구를 보였으며 집에서 나와 피해 있을 곳이라는 의견도 42.8%를 차지했다.

<표 4-11>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폭력경험	없다	117	93.60
	있다	8	6.40
폭력빈도	매일	0	0.00
	일주일에 한번 정도	0	0.00
	한 달에 한번 정도	2	25.00
	일 년에 한번 정도	6	75.00
폭력강도	병원에 가야할 정도	1	14.30
	며칠 동안 아플 정도	1	14.30
	하루 동안 아플 정도	1	14.30
	몇 시간 아플 정도	3	42.90
	기타	1	14.30
폭력피해 후 필요한 도움	집에서 나와 피해 있을 곳	3	42.86
	병원 치료	0	0.00
	이야기 할 곳	4	57.14
	기타	0	0.00

아. 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국적을 신청할 당시 또는 신청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주여성 중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류준비가 어려워서’ 등 정보부족이나 과정상의 어려움을 경험한 여성이 44.0%를 차지했다. 국적취득 여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으로서 사회보장권을 부여받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과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격을 보장받는 국적취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시민단체나 국제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조건인 배우자의 동의가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2007년 유엔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정기보고서를 통해 배우자의 침해에 대처할 실

행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및 법적 지위가 배우자나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여전히 배우자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본 조사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18.6%는 가족 생활비가 매우 적다고 평가했으며, 23.5%는 지난 1년간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 답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생활비를 빌린 대상은 가족(56.0%)과 친구(40.0%)로 비공식적 체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 받은 여성은 3.2%⁷⁾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주로 비공식적 체계에 의존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왔으며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사회상황을 고려할 때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 가구는 빈곤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1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9.7%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4.7%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72.6%의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사회적 참여는 물론 가족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1)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취업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국적국에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주민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국적국에서 학력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나 부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여성이 8.1%에 달했으며 병원에 가지 못한 주요 원인은 돈이 없어서(44.4%), 건강보험이 없어서(22.2%)등 치료비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여성의 대부분은 그냥 쉬거나(25.0%),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

7) 결혼이주여성의 50%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율이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연구대상자 표집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50.0%) 질병이나 부상을 그대로 방치해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병원비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받은 대상은 친구, 교회나 단체 등 주로 비공식적 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건강보험이 없다고 답한 여성은 24.0%로 이는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나 가족에게 쫓겨나 노숙한 경험이 있다는 결혼이주여성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노숙이 가족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로부터 쫓겨나더라도 의지할 친정이 없는 결혼이주여성은 가족갈등이 쉽게 노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친구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내의 지지체계도 제한적이며 이웃으로부터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 결혼이주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은 한국어교육과 컴퓨터교육이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은 한국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많은 한국어교육은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직업기술교육은 욕구가 높은 반면 실제 교육을 받은 여성은 16.0%에 그쳤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의 한국어 부족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양육자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아동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도움으로 아이 양육법을 배우고 싶다는 여성이 47.8%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 부모교육을 받은 여성은 20.0%에 불과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유치원, 학교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6.4%의 여성이 한 달에 한번 또는 일 년에 한번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임시주거지(42.8%)와 이야기할 대상(57.1%)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2011)의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은 이주여성쉼터는 여성의 언어, 문화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태조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공적 시설을 통해 보호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여성쉼터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앞서 양적 확대가 우선 과제임을 보여준다.

2 외국인노동자

가. 일반적 특성

외국인노동자의 51.6%는 남성, 48.3%는 여성이었으며, 45.1%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평균 34.4(표준편차=9.95)세로 최저 14세에서 최고 68세의 범주를 보였다. 한국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4.4(표준편차=3.7)년으로 1년 미만에서부터 최고 21년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한 기간이 평균 5.6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국적국은 몽골이 58.9%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필리핀이 17.7%, 우즈베키스탄이 16.1%, 중국이 6.5%, 캄보디아가 0.8% 등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노동자는 64.5%에 불과했으며, 35.4%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8.3%의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특성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전체	연령	124	34.46	9.95	68	14
	거주기간	123	4.48	3.76	21	0
등록증 없는 외국인	연령	44	38.72	11.05	22	68
	거주기간	44	5.63	4.43	1	21

<표 4-13> 외국인노동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64	51.61
	여성	60	48.39
결혼상태	기혼	56	45.16
	미혼	68	54.84
국적국	중국	8	6.50
	필리핀	22	17.70
	몽골	73	58.90
	우즈베키스탄	20	16.10
	캄보디아	1	0.80
외국인등록증	없다	44	35.48
	있다	80	64.52
가족동거여부	없다	64	51.61
	있다	60	48.39

나. 경제

외국인노동자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842,868(표준편차=605,305)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8.8%가 매우 적다, 24.5%가 조금 적다, 45.9%가 적당하다고 답해 주관적으로 판단한 재정상태가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의 29.0%가 지난 1년 간 돈이 없어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15.4%는 1번에서 3번, 4.0%는 4번에서 6번, 10번 이상 있었다는 응답자도 3.2%를 차지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지난 1년 간 돈이 없어 밥을 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1.8%를 차지해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는 결식이라는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을 먹지 못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가 55.1%, 직장동료가 10.3%, 교회나 단체가 3.4%에 달했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가 20.6%를 차지했다.

<표 4-14>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실태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생활비	122	842,868.85	605,305.03	3,500,000	150,000

<표 4-15>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실태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생활비에 대한 주관적 만족		매우 적다	23	18.85
		조금 적다	30	24.59
		적당 하다	56	45.90
		조금 많다	12	9.84
		매우 많다	1	0.82
지난 1년간 밥을 굶은 경험		없다	88	70.97
		있다	36	29.03
지난 1년간 밥을 굶은 횟수	전체	없다	94	76.42
		1번~3번	19	15.45
		4번~6번	5	4.07
		7번~9번	1	0.81
		10번 이상	4	3.25
	비합법 체류 외국인	없다	30	68.18
		1번~3번	9	20.45
		4번~6번	2	4.55
		7번~9번	1	2.27
		10번 이상	2	4.55
도움을 받은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6	20.69
		친구	16	55.17
		직장사람	3	10.34
		교회나 단체	1	3.45
		기타	3	10.34

다. 건강

건강상태는 조금 나쁘다가 7.2%, 보통이다가 58.0%, 좋은 편이다가 25.8%, 매우 좋다가 8.8%로 외국인노동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6.2%로 비교적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질병의 종류로는 귀, 목, 눈, 이 등이 27.8%, 신장이 13.9%, 위, 고혈압, 팔 다리 관절이 각각 11.1%, 심장이 5.6%, 간이 2.8% 등으로 나타났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33.0%,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13.7%였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노동자가 51.6%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근로자는 84.0%가 건강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32.3%였으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노동자 가운데 52.2%가 질병이나 부상에 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돈이 없어서가 45.0%, 시간이 없어서가 25.0%,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가 12.5%, 직장에서 못 가게 해서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각각 7.5%를 차지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는 약을 먹거나 바르는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의 나라에서 하던 민간요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31.7%,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17.1%, 그냥 쉬는 것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12.2%를 차지했다.

<표 4-16> 외국인노동자의 건강상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0	0.00
	조금 나쁘다	9	7.26
	보통이다	72	58.06
	좋은 편이다	32	25.81
	매우 좋다	11	8.87
치료해야 하는 병	없다	79	63.71
	있다	45	36.29
병명 또는 이상이 있는 곳	간	1	2.80
	신장	5	13.90
	심장	2	5.60

		위	4	11.10
		고혈압	4	11.10
		팔, 다리(관절)	4	11.10
		귀, 목, 눈, 이	10	27.80
		기타	6	16.70
건강보험 여부	전체	없다	64	51.61
		직장건강보험	41	33.06
		지역건강보험	17	13.71
		모르겠다	2	1.61
	비합법 체류 외국인 ⁸⁾	없다	37	84.09
		직장건강보험	4	9.09
지역건강보험		3	6.82	
질병·부상 에도 병원 못간 경험	전체	없다	84	67.70
		있다	40	32.30
	비합법 체류 외국인	없다	21	47.73
		있다	23	52.27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돈이 없어서	18	45.00
		시간이 없어서	10	25.00
		직장에서 못 가게 해서	3	7.50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0.00
		말이 통하지 않아	3	7.50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	5	12.50
		기타	1	2.50
병원 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는가		약을 먹거나 발랐음	15	36.60
		그냥 쉬었음	5	12.20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13	31.70
		아무것도 하지 못함	7	17.10
		기타	1	2.40
병원비 정부보조 여부		없다	119	95.97
		있다	5	4.03

8)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나 한국이주민건강협회의 경우 의료공제를 주고 있기에 일부 응답자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가입으로 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고용

외국인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442,122(표준편차=984,675)원,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근로자의 임금은 1,259,927(표준편차=379,368)원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직무유형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공장 일이 50.0%,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장 일이 12.9%, 서비스가 8.9%, 사무직이 4.8%, 장사가 4.0%, 단순 노동이 3.2%, 농장일이 2.4%, 전문직이 1.6%, 농사가 0.8%의 순이었으며 조사 당시 현재 일하지 않는 응답자가 4.8%를 차지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을 알게 된 경위는 친구가 50.9%,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소개받았다가 17.0%, 광고를 통해서가 12.3%, 직장동료가 6.6%, 교회나 NGO가 5.7%, 가족 및 친척이 2.8%로 나타났다.

<표 4-17>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실태1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직무유형	일하지 않음	6	4.80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공장일	62	50.00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16	12.90
	서비스 일	11	8.90
	장사	5	4.00
	농사	1	0.80
	농장	3	2.40
	단순노동직	4	3.20
	사무직	6	4.80
	전문직	2	1.60
	기타	8	6.50
	직장정보	정부소개	18
친구소개		54	50.90
직장동료 소개		7	6.60
교회나 단체 소개		6	5.70
광고를 보고		13	12.30
가족 및 친척		3	2.80
기타		5	4.70

<표 4-18>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실태2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월평균 임금	전체	114	1,442,122	984,675	10,000,000	100,000
	미등록	41	1,259,927	379,368	2,000,000	100,000

마. 주거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유형은 본인이 임대한 전세 또는 월세가 75.0%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직장에서 마련해 준 숙소나 기숙사가 20.1%, 교회나 NGO에서 마련해 준 곳이 2.4%, 친구의 집이 1.6%를 차지했다. 한 달 평균 주거비는 무료가 26.6%, 10만 원 이하가 4.8%, 11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8.0%, 21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31.4%, 31만 원 이상이 29.0%로 월 평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의 10.5%는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숙횟수는 1회에서 3회가 8.1%, 4회에서 6회가 1.6%, 10번 이상이 0.8%로 나타났다.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가 57.1%, 직장 동료와 가족 및 친척이 각각 7.1%였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외국인노동자도 21.4%를 차지했다.

<표 4-19>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거형태		직장숙소(기숙사)	25	20.16
		내가 얻은 집	93	75.00
		친구의 집	2	1.61
		교회나 단체에서 마련해 준 곳	3	2.42
		기타	1	0.81
한 달 방값		돈을 내지 않는다	33	26.61
		10만 원	6	4.84
		11만 원~20만 원	10	8.06
		21만 원~30만 원	39	31.45
		31만 원 이상	36	29.03
노숙한 경험	전체	없다	110	89.43
		1번~3번	10	8.13
		4번~6번	2	1.63
		7번~9번	0	0.00
		10번 이상	1	0.81
	비합법 체류 외국인	없다	34	77.27
		1번~3번	8	18.18
		4번~6번	1	2.27
		7번~9번	0	0.00
		10번 이상	1	2.27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준 대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3	21.40
		친구	8	57.10
		직장동료	1	7.10
		교회나 단체	0	0.00
		가족 및 친척	1	7.10
		기타	1	7.10

바. 교육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은 한국어교육이 46.8%, 직업기술교육이 9.7%, 컴퓨터교육이 5.6%, 한국문화교육이 4.8%,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이 2.4%를 차지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

77.4%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기술교육이 8.8%, 컴퓨터교육이 8.0%, 한국문화교육이 2.4%로 나타났다.

<표 4-20> 외국인노동자의 교육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에서 받은 교육	한국어교육	없다	66	53.20
		있다	58	46.80
	컴퓨터교육	없다	117	94.40
		있다	7	5.60
	직업기술교육	없다	112	90.30
		있다	12	9.70
	한국문화교육	없다	118	95.20
		있다	6	4.80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없다	121	97.60
		있다	3	2.40
기타	없다	89	71.80	
	있다	35	28.20	
꼭 필요한 교육	한국어교육	96	77.42	
	컴퓨터교육	10	8.06	
	직업기술교육	11	8.87	
	한국문화교육	3	2.42	
	기타	4	3.23	

사. 가정생활

외국인노동자의 48.3%는 한국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2.4%, 어머니는 4.8%, 배우자는 35.4%, 첫째 아이는 18.5%, 둘째 아이는 8.8%, 셋째 아이는 0.8%, 첫째 손자는 0.8%, 동생은 5.6%를 차지했다.

배우자의 성별은 남성이 54.5%, 여성이 45.4%이며 연령대는 20대가 11.9%, 30대가 54.7%, 40대가 21.4%, 50대가 9.5%, 60대가 2.3%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는 남아가 39.1%, 여아가 60.8%이며 연령대는 5세 이하가

59.1%, 6세에서 10세가 13.6%, 11세에서 15세가 13.6%, 16세 이상이 13.6%를 차지했다. 둘째 자녀는 남아가 54.5%, 여아가 45.4%이며 연령대는 5세 이하가 80.0%, 6세에서 10세가 10.0%, 11세 이상이 10.0%로 조사되었다.

<표 4-21> 외국인노동자의 가정생활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아버지	동거여부	없다	121
		있다	3
	나이	50대	1
		70대	1
어머니	동거여부	없다	118
		있다	6
	나이	40대	1
		50대	1
		60대	2
		70대	1
배우자	동거여부	없다	80
		있다	44
	성별	남자	24
		여자	20
	나이	20대	5
		30대	23
		40대	9
		50대	4
	60대	1	
첫째아이	동거여부	없다	101
		있다	23
	성별	남자	9
		여자	14
	나이	1세~5세	13
		6세~10세	3
		11세~15세	3
		16세 이상	3

둘째아이	동거여부	없다	113	91.13
		있다	11	8.87
	성별	남자	6	54.55
		여자	5	45.45
	나이	1세~5세	8	80.00
		6세~10세	1	10.00
11세 이상		1	10.00	
셋째아이	동거여부	없다	123	99.19
		있다	1	0.81
	성별	남자	1	100.00
		여자	0	0.00
첫째손자	동거여부	없다	123	99.19
		있다	1	0.81
	성별	남자	1	100.00
		여자	0	0.00
나이	1세~5세	1	100.00	
동생1	동거여부	없다	117	94.35
		있다	7	5.65
	성별	남자	2	28.57
		여자	5	71.43
	나이	20대	2	28.58
		30대	3	42.87
40대		2	28.57	
동생2	동거여부	없다	122	98.39
		있다	2	1.61
	성별	남자	0	0.00
		여자	2	100.00
나이	30대	2	100.00	

외국인노동자의 학령기 첫째 자녀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57.1%, 다문화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14.2%, 기타가 28.5%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임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 다녔으나 적응이 힘들어서 중퇴한 사례가 있었다. 학령기 둘째 자녀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50.0%, 기타가 50.0%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자녀의 낮 시간 보육은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37.5%,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25.0%, 자녀의 형제·자매

와 함께 있는 경우가 12.5%, 기타가 18.7%였으며 기타로는 부모나 친척이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렵다가 28.0%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생활비 부족이 24.5%,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19.3%, 자녀교육이 8.7%, 열악한 주거환경이 5.2%를 차지했다.

<표 4-22>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및 가정생활 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첫째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0
	한국학교	4	57.14
	다문화 학교	1	14.29
	기타	2	28.57
첫째 자녀가 8세 이상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학교에 다녔으나 힘들어서 그만둠	1	100.00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0	0.00
	한국말을 못해서	0	0.00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	0	0.00
	돈이 없어서	0	0.00
	기타	0	0.00
둘째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0
	한국학교	2	50.00
	다문화 학교	0	0.00
	기타	2	50.00
둘째 자녀가 8세 이상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학교에 다녔으나 힘들어서 그만둠	1	100.00
	한국말을 못해서	0	0.00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0	0.00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	0	0.00
	돈이 없어서	0	0.00
	기타	0	0.00
7세 이하의 자녀는 낮 시간 동안 누가 돌보는가	집에 혼자 있음	0	0.00
	형제(자매)가	2	12.50
	아내(남편)이	6	37.50
	친구나 이웃들이	1	6.25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4	25.00
	기타	3	18.75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	생활비 부족	14	24.56
	주거	3	5.26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려움	16	28.07
	자녀교육	5	8.77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11	19.30
기타	8	14.04	

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노동자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7%,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47.5%로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 반면 병원비가 없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병원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3.7%,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22.7%로 긴급복지지원과 노숙인 쉼터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허용에 대하여 69.3%가 매우 필요하다, 14.5%가 필요하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욕구를 보였다. 잘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에 대해서는 69.3%가 매우 필요하다, 1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얼마 동안이라도 지원해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67.7%가 매우 필요하다, 18.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자녀가 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88.7%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표 4-23>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 에 대한 정보	1.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노동자 모두 직장에서 모두 건강보험 가입	모른다	71	57.26	
		안다	53	42.74	
	2. 수술입원에 필요한 돈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한민국정부에 도움 요청	모른다	107	86.29	
		안다	17	13.71	
	3. 산업재해(직장에서 일하던 중 다 쳤을 때)를 당했을 때 보상 요청	모른다	65	52.42	
		안다	59	47.58	
	4.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	모른다	95	77.24	
		안다	28	22.76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 것	1. 미등록외국인노동자도 건강보험 가입	전혀필요없음	15	12.10	
		별로필요없음	5	4.03	
		필요함	18	14.52	
		매우필요함	86	69.35	
	2. 잘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 한 쉼터	전혀필요없음	6	4.84	
		별로필요없음	9	7.26	
		필요함	23	18.55	
	3.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	매우필요함	86	69.35	
		전혀필요없음	8	6.45	
		별로필요없음	9	7.26	
	4.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의 자녀 교육 지원	필요함	23	18.55	
		매우필요함	84	67.74	
		전혀필요없음	2	1.61	
		별로필요없음	4	3.23	
			필요함	8	6.45
			매우필요함	110	88.71

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외국인노동자의 29.0%가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특히 위기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거나 유사한 형편에 있는 친구가 유일한 지지원이라는 연구결과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51.6%의 외국인노동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2.3%의 응답자가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을 가지 못했으며 그 이유를 치료비가 없거나 또는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으로 밝혔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노동자의 병원이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시간부족과 법적 신분에 따른 불안감도 주목되었다.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면 근로시간 중이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노숙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10.5%에 달했으며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대부분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공적인 지지체계를 통해 도움을 받은 노동자는 없으며 외국인노동자는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공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도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할 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안녕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외국인노동자의 77.4%가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어교육을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어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는 외국인노동자가 경험하는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유엔의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이주민이 언어적인 문제로 자신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용국은 이주민에게 언어교육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인노동자에게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정부는 일정시간의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가족결합을 허가하고 있지 않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조사결과 48.3%의 외국인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노동자가 경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이용

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물론 나이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족의 질병 발생 시 병원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가는 중요한 쟁점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은 50% 미만이며 특히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률은 15%에 그쳤다. 이는 다수의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외국인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이나 산업재해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에서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1)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상대국 정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욕구가 가장 높은 서비스는 자녀교육지원서비스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중 적응상의 문제로 한국학교를 중단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한국학교 적응에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외국인노동자 자녀가 한국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가 서툰 외국학생이 수업을 이해하고 친구 사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주배경을 지닌 외국인 학생의 입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난민

가. 일반적 특성

난민의 58.3%는 남성, 41.7%는 여성이었으며 평균 34(표준편차=8.58)세로 나타났다. 68.8%는 기혼이며 31.3%는 미혼으로 집계되었다. 국적국은 방글라데시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콩고가 14.6%, 우간다가 12.3%, 미얀마

와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6.3%, 스리랑카와 카메룬, 코트니브아르가 각각 4.2%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평균 5.3(표준편차=3.96)년이었으며 최소 1년 미만에서 최대 17년의 넓은 범주를 보였다.

<표 4-24> 난민의 일반적 특성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연령	47	34.06	8.58	62	14
거주기간	49	5.32	3.96	17	0

<표 4-25> 난민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8	58.30
	여성	20	41.70
결혼상태	하지 않았다	15	31.30
	했다	33	68.80
국적	스리랑카	2	4.20
	미얀마	3	6.30
	우간다	6	12.30
	방글라데시	18	37.50
	콩고	7	14.60
	아프가니스탄	3	6.30
	카메룬	2	4.20
	코트니브아르	2	4.20
	기타	5	10.40

나. 난민지위

난민 응답자의 53.2%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았으며 25.5%는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12.8%는 난민지위를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8.5%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응답자는 지위를 인정받은 후 거주기간이 평균 2.4(표준편차=2.19)

년, 난민지위신청자는 난민지위를 신청 한 후 거주기간이 평균 4.2(표준편차=2.95)년으로 분석되었다.

<표 4-26> 난민지위1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난민지위	난민지위 인정받음	25	53.20
	난민지위 거부	12	25.50
	난민신청 후 대기	6	12.80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로 인정	4	8.50
동거가족	없다	24	51.10
	있다	23	48.90
자녀의 국적	없다	32	88.90
	있다	4	11.10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어려움	생활비 부족	13	30.20
	주거	11	25.60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려움	6	14.00
	아이들 교육	7	16.30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	3	7.00
	기타	3	7.00

<표 4-27> 난민지위2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난민지위인정 후 거주기간	25	2.40	2.19	8	0
난민지위신청 후 거주기간	18	4.25	2.95	12	0

다. 경제

난민의 월 평균 생활비는 739,772(표준편차=446,513)원으로 비교적 낮았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생활비 만족도는 매우 적다가 19.6%, 조금 적다가 31.6%, 적당하다가 30.4%, 조금 많다가 17.4%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한 난민 응답자는 29.2%로 매우 높은 구성비를 보였으며 1회에서 3회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5%, 4회에서 6회는 5.0%, 10회 이상이 7.5%를 차지했다. 밥을 먹지 못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으로는 친구가 42.9%, 교회가 28.6%, 난민지원센터가 14.3% 등으로 나타났다.

<표 4-28> 난민의 경제적 실태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월 평균 생활비	44	739,772.72	446,513.56	60,000	1,600,000

<표 4-29> 난민의 경제적 실태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	매우 적다	9	19.60
	조금 적다	15	31.60
	적당 하다	14	30.40
	조금 많다	8	17.40
	매우 많다	0	0.00
지난 1년 동안 밥을 굶은 경험	없다	34	70.80
	있다	14	29.20
지난 1년 동안 밥을 굶은 횟수	없다	34	85.00
	1번~3번	1	2.50
	4번~6번	2	5.00
	7번~9번	0	0.00
	10번 이상	3	7.50
도움을 받은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0	0.00
	친구	6	42.90
	교회	4	28.60
	난민지원 단체	2	14.30
	기타	2	14.30

라. 건강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강상태는 매우 나쁘다가 6.3%, 조금 나쁘다가 12.5%, 보통이다가 18.8%, 좋은 편이다가 47.9%, 매우 좋다가 14.6%를 차지했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질병이 있는 난민 응답자는 33.3%였으며 질병의 유형은 간, 위, 디스크, B형간염, 혈압, 불면증, 기억상실 등 다양했다. 건강보험 가입여부는 58.1%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25.6%는 직장건강보험, 14.0%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난민 응답자는 월 평균 33,682(표준편차=20,699)원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4.9%의 난민 응답자는 지난 1년 동안 병원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 중 22.0%는 친구, 9.8%는 교회, 7.3%는 대한민국 정부, 난민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며, 48.8%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던 난민 응답자는 30.4%에 달했으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69.2%가 돈이 없어서, 15.4%가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 시간이 없어서와 말이 통하지 않아서가 각각 7.7%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수술이나 입원한 적이 있는 난민 응답자는 30.6%를 차지했으며 병원비 출처는 자신이 46.7%, 난민지원 단체가 20.0%로 나타났다.

<표 4-30> 난민의 건강실태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건강보험료	17	33,682.35	20,699.40	75,000	3,600

<표 4-31> 난민의 건강실태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3	6.30
	조금 나쁘다	6	12.50
	보통이다	9	18.80
	좋은 편이다	23	47.90
	매우 좋다	7	14.60
약을 먹거나 병원을 가야하는 병	없다	32	66.70
	있다	16	33.30
병명 또는 부위	간	1	2.00
	위	2	4.00
	디스크	1	2.00
	B형간염	1	2.00
	기타	10	20.00
건강보험	없다	25	58.10
	직장건강보험	11	25.60
	지역건강보험	6	14.00
	모르겠다	1	2.30
지난 1년 동안 병원비 도움 필요	없다	27	55.10
	있다	22	44.90
병원비 도움을 받은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20	48.80
	친구	9	22.00
	교회	4	9.80
	난민지원 단체	3	7.30
	대한민국	3	7.30
	기타	2	4.90
지난 1년 동안 병원 가지 못한 경험	없다	32	69.60
	있다	14	30.40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돈이 없어서	9	69.20
	시간이 없어서	1	7.70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0.00
	말이 통하지 않아	1	7.70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	2	15.40
	기타	0	0.00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는가	약을 먹거나 발랐음	5	41.70
	그냥 쉬었음	2	16.70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2	16.70
	아무것도 하지 못함	2	16.70
	기타	1	8.30
수술이나 입원한 경험	없다	34	69.40
	있다	15	30.60
병원비 출처	내가	7	46.70
	친구	2	13.30
	교회	0	0.00
	난민지원 단체	3	20.00
	대한민국정부	0	0.00
	기타	3	20.00

마. 고용

난민 응답자의 47.9%만이 취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9.2%는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공장일, 2.1%는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2.1%는 서비스, 2.1%는 농사, 10.4%는 농장일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을 소개받은 경로는 친구가 57.1%, 교회나 난민지원 단체가 19.0%, 광고가 14.3%, 정부가 4.8%로 조사되었다. 직장이 있는 난민의 월 평균 임금은 978,571(표준편차=413,996)원으로 비교적 높지 않았다.

취업하지 않는 이유로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국 말을 못해서가 각각 12.5%,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가 9.4%를 차지했다. 기타가 53.1%에 달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일할 수 없어서, 아이를 돌보아야 해서, 학생이기 때문에 등이 있었다.

<표 4-32> 난민의 고용실태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월 평균 임금	21	978,571.42	413,996.20	1,800,000	100,000

<표 4-33> 난민의 고용실태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업형태	일하지 않음	25	52.10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공장일	14	29.20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1	2.10
	서비스 일	1	2.10
	장사	0	0.00
	농사	1	2.10
	농장	5	10.40
	기타	1	2.10
지금 일하는 직장정보	정부소개	1	4.80
	친구소개	12	57.10
	교회나 난민지원 단체 소개	4	19.00
	광고를 보고	3	14.30
	기타	1	4.80
일하지 않은 이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4	12.50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3	9.40
	건강이 좋지 않아서	4	12.50
	한국말을 잘 못해서	4	12.50
	기타	17	53.10

바. 주거

난민 응답자의 57.4%는 자신이 마련한 집에, 19.1%는 친구의 집에, 4.3%는 각각 교회와 난민지원센터에서 마련해 준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주거비용은 무료가 9.5%, 10만 원 이하가 7.1%, 11만 원에서 20만 원이 19.0%, 21만 원에서 30만 원이 33.3%, 31만 원 이상이 31.0%의 구성비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 있는 난민 응답자는 4.4%에 불과했으며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친구로 나타났다.

<표 4-34> 난민의 주거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거형태	난민지원센터에서 마련해 준 곳	2	4.30
	내가 얻은 방	27	57.40
	친구가 얻은 방	9	19.10
	교회에서 마련해준 곳	2	4.30
	기타	7	14.90
월 평균 주거비	돈을 내지 않음	4	9.50
	10만 원 이하	3	7.10
	11만 원~20만 원	8	19.00
	21만 원~30만 원	14	33.30
	31만 원 이상	13	31.00
노숙한 경험	없다	44	95.70
	1번~3번	1	2.20
	4번~6번	0	0.00
	7번~9번	0	0.00
	10번 이상	1	2.20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받은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0	0.00
	친구	1	100.00
	교회나 난민지원 단체	0	0.00
	기타	0	0.00

사. 교육

난민 응답자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 62.0%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교육은 14.0%, 한국문화교육은 12.0%를 차지했다. 직업기술교육 10.0%에 불과했으며 대학교육 등 기타 유형의 교육이 24.0%로 나타났다. 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육으로는 한국어교육이라는 의견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기술교육이 19.1%, 컴퓨터교육과 난민신청교육이 각각 12.8%, 한국문화교육이 10.6%로 조사되었다.

<표 4-35> 난민의 교육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한국에서 받은 교육	한국어교육	없다	19	38.00
		있다	31	62.00
	컴퓨터교육	없다	43	86.00
		있다	7	14.00
	직업기술교육	없다	45	90.00
		있다	5	10.00
	한국문화교육	없다	44	88.00
		있다	6	12.00
기타	없다	38	76.00	
	있다	12	24.00	
꼭 필요한 교육	한국어교육		19	40.40
	컴퓨터교육		6	12.80
	직업기술교육		9	19.10
	한국문화교육		5	10.60
	난민신청교육		6	12.80
	기타		2	4.30

아. 가족생활

난민 응답자의 44.9%는 배우자가 우리나라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성별은 남성이 59.1%, 여성이 40.9%로 연령대는 20대가 4.5%, 30대가 77.2%, 40대가 13.6%, 50대가 4.5%로 나타났다. 첫째자녀가 우리나라에 함께 거주하는 난민 응답자는 37.5%였으며 첫째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47.1%, 여자가 52.9%, 연령대는 1세에서 5세가 61.2%, 6세에서 10세가 33.3%, 11세 이상이 5.6%로 조사되었다. 둘째자녀가 우리나라에 함께 거주하는 난민 응답자는 22.4%이며 둘째자녀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50.0%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모두 1세에서 5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6> 난민의 가족생활실태1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배우자	동거여부	없다	27	55.10
		있다	22	44.90
	성별	남자	13	59.10
		여자	9	40.90
	나이	20대	1	4.50
		30대	17	77.20
		40대	3	13.6
50대		1	4.50	
첫째아이	동거여부	없다	30	62.50
		있다	18	37.50
	성별	남자	8	47.10
		여자	9	52.90
	나이	1세~5세	11	61.20
		6세~10세	6	33.30
11세 이상		1	5.60	
둘째아이	동거여부	없다	38	77.60
		있다	11	22.40
	성별	남자	5	50.00
		여자	5	50.00
	나이	1세~5세	11	100.00

난민 응답자의 학령기 자녀는 모두 한국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학교를 다니는데 50.0%는 학교에서 받아 주려하지 않아서, 50.0%는 한국말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학령 전 자녀의 보육은 친구나 이웃들이 돌보아 준다가 46.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는 배우자가 돌본다가 각각 15.4%, 아동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도 15.4%를 차지했다. 가족들과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33.3%가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생활비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교육이 20.8%,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렵다가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7> 난민의 가족생활실태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첫째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0
	한국학교	5	100.00
	다문화학교	0	0.00
	기타	0	0.00
한국학교에 다니는데 힘든 점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1	50.00
	한국말을 못해서	1	50.00
	학교를 알아보고 중	0	0.00
	학교에 다녔으나 힘들어서 그만둬	0	0.00
	돈이 없어서	0	0.00
	기타	0	0.00
둘째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	학교에 다니지 않음	0	0.00
	한국학교	1	100.00
	다문화학교	0	0.00
	기타	0	0.00
7세 이하 자녀의 낮 시간 보육	집에 혼자 있음	2	15.40
	형제(자매)가	0	0.00
	아내(남편)이	2	15.40
	친구나 이웃들이	6	46.20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2	15.40
	기타	1	7.70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	생활비 부족	8	33.30
	주거	8	33.30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려움	1	4.20
	자녀 교육	5	20.80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0	0.00
	기타	2	8.30

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1) 난민지위 인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 혜택은 매우 필요하다가 74.1%, 필요하다가 14.8%, 별로 필요 없다가 3.7%, 전혀 필요 없다가 7.4%로 조사되었다.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소개 프로그램은 매우 필요하다가 84.6%, 조금 필요하다가 3.8%, 전혀 필요 없다가 11.5%로 나타났다.

<표 4-38> 난민지위 인정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난민지위 인정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살 곳이 없는 난민지위 인정자는 나라에서 싼 값으로 빌려주는 아파트(국민임대주택)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2	7.40
		별로필요없음	1	3.70
		필요함	4	14.80
		매우필요함	20	74.10
	2. 난민지위 인정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3	11.50
		별로필요없음	0	0.00
		필요함	1	3.80
		매우필요함	22	84.60

2) 난민지위 신청자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민지위 신청자의 71.4%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25.0%, 전혀 필요 없다가 3.6%로 나타났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혜택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78.6%, 필요하다가 10.7%, 별로 필요 없다가 10.7%를 차지했다. 생활비 보조는 78.6%가 매우 필요하다, 14.3%가 필요하다, 7.1% 별로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자녀들이 한국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85.7%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10.7%, 별로 필요 없다가 3.6%로 나타났다.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82.1%가 매우 필요하다, 14.3%가 필요하다, 3.6%가 별로 필요 없다고 답했다.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78.6%가 매우 필요하다, 17.9%가 필요하다, 3.6%가 별로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표 4-39> 난민지위 신청자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난민지위 신청자 또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국가에 돈을 내고 아플 때 적은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1 3.60
		별로필요없음	0 0.00
		필요함	7 25.00
		매우필요함	20 71.40
	2. 살 곳이 없는 난민지위 신청자 또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는 나라에서 싼 값으로 빌려주는 아파트(국민임대주택)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3 10.70
		필요함	3 10.70
		매우필요함	22 78.60
	3. 돈이 없어 먹을 것과 잘 곳이 없는 난민지위 신청자 또는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는 대한민국정부에 생활비를 도와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2 7.10
		필요함	4 14.30
		매우필요함	22 78.60
	4.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지위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아이들이 한국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1 3.60
		필요함	3 10.70
		매우필요함	24 85.70
	5. 난민지위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1 3.60
		필요함	4 14.30
		매우필요함	23 82.10
	6. 난민지위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1 3.60
		필요함	5 17.90
		매우필요함	22 78.60

차. 실태조사를 통해 본 난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난민의 29.2%가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으며, 7.5%는 결식횟수가 10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밥을 먹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주로 친구, 교회, 난민지원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난민의

지지체계로써 교회나 NGO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난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난민지원에 대한 정부역할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8%의 난민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거나 또는 매우 나쁘다고 평가해 난민의 건강상태가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률은 41.9%에 불과했으며 30.4%는 질병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 역시 비용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입원비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난민은 NGO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난민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31%의 난민은 월 평균 주거비로 31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민들의 월 평균 생활비 74만 원의 4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비 대비 주거비의 비율이 매우 높아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현행법상 난민지위 인정자의 경우 국민주택 입주 자격은 부여하고 있으나 정보부족, 서류준비상의 어려움, 보증금 등의 문제로 입주사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제도적인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48.9% 이상의 난민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난민이 37.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난민에 대한 지원이 가족생활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포함한 복합적 지원의 형태를 지녀야 함을 시사한다.

난민협약은 협약 체결국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공공구제와 공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11)는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통해 난민인정에게는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응답자는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나 직업 교육을 받는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자산소득이나 창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난민의 특성상 취업은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난민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친화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이주아동

가. 일반적 특성

이주아동은 52.0%가 남성, 48.0%가 여성으로 몽골국적의 아동이 96.0%를 차지했다⁹⁾.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아동은 90.0%에 달했으며 10.0%의 아동은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아동의 평균 연령 13.8(표준편차=2.09)세이며 최소 5세에서 최고 18세의 범주를 보였다. 대한민국 거주기간은 평균 3.2(표준편차=2.58)년이며, 최고 거주기간은 13년으로 나타났다.

<표 4-40> 이주아동의 일반적 특성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연령	50	13.88	2.09	18	5
거주기간	50	3.22	2.58	13	0

<표 4-41> 이주아동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6	52.00
	여성	24	48.00
국적국	몽골	48	96.00
	기타	2	4.00
외국인등록증	없다	5	10.00
	있다	45	90.00

9) 난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전체 대상자 6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몽골국적의 아동은 71%에 해당한다. 이주아동의 국적국이 몽골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는 이주아동 중 몽골아동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실제로 높고 몽골학교 등 몽골국적 아동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0)에서도 몽골국적 아동이 조사대상자의 60%를 차지했다.

나. 경제

이주아동 가정의 소득원은 부모님이 96.0%, 기타가 4.0%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결식한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은 2.0%에 달했으며 결식횟수는 1회에서 3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돈이 없어 학교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주아동의 용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매우 적다가 2.0%, 조금 적다가 6.0%, 적당하다가 44.0%, 조금 많다가 36.0%, 매우 많다가 12.0%를 차지했으며 월 평균 용돈은 131,108(표준편차=239,205)원으로 나타났다.

<표 4-42> 이주아동의 경제적 실태1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소득원	부모님	48	96.00
	교회나 단체의 지원	0	0.00
	부모님의 친구의 지원	0	0.00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	0	0.00
	기타	2	4.00
지난 1년 동안 결식경험	없다	49	98.00
	1번~3번	1	2.00
	4번~6번	0	0.00
	7번~9번	0	0.00
	10번 이상	0	0.00
누가 도와주었는가	친구	1	100.00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0	0.00
	교회나 단체	0	0.00
	학교	0	0.00
	기타	0	0.00
1년간 준비물 준비못함	없다	48	96.00
	있다	2	4.00
용돈만족도	매우 적다	1	2.0
	조금 적다	3	6.0
	적당 하다	22	44.0
	조금 많다	18	36.0
	매우 많다	6	12.0

<표 4-43> 이주아동의 경제적 실태2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용돈	48	131,108.33	239,205.69	1,200,000	10,000

다. 건강

이주아동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조금 나쁘다가 4.0%, 보통이다가 48.0%, 좋은 편이다가 34.0%, 매우 좋다가 14.0%로 나타났다.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질병이 있는 이주아동은 28.0%를 차지했다. 질병의 종류는 관절이 15.4%이며 신장, 위, 귀·목·눈이 각각 7.7%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52.0%만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28.0%는 가입여부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을 가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이주아동은 12.0%였으며 22.2%가 교회로부터, 20.0%가 가족으로부터, 13.3%가 친구로부터, 4.4%가 학교로부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이주아동은 2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은 4.0%를 차지했으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50.0%)와 건강보험이 없어서(50.0%)로 조사되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주아동은 약을 먹거나 바르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나 입원한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은 28.0%였으며 병원비의 출처는 부모님이 92.3%, 부모님의 친구가 7.7%를 차지했다.

<표 4-44> 이주아동의 건강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0	0.00
	조금 나쁘다	2	4.0
	보통이다	24	48.0
	좋은 편이다	17	34.0
	매우 좋다	7	14.0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	없다	36	72.0
	있다	14	28.0
병명	신장	1	7.70
	위	1	7.70
	관절	2	15.40
	귀, 목, 눈	1	7.70
	기타	8	61.50
건강보험 여부	없다	10	20.00
	있다	26	52.00
	모르겠다	14	28.00
지난 1년 동안 병원비 도움 여부	없다	44	88.00
	있다	6	12.00
도움을 준 곳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9	20.00
	친구	6	13.30
	교회	10	22.20
	대한민국	1	2.20
	가족	9	20.00
	학교	2	4.40
	기타	8	17.80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 가지 못함	없다	48	96.00
	있다	2	4.00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돈이 없어서	1	50.00
	건강보험이 없어서	1	50.00
	시간이 없어서	0	0.00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0.00
	말이 통하지 않아서	0	0.00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라 두려워서	0	0.00
	기타	0	0.00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는가	약을 먹거나 발랐음	2	100.0
	그냥 쉬었음	0	0.00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0	0.00
	아무것도 하지 못함	0	0.00
	기타	0	0.00
수술이나 입원한 경험	없다	36	72.00
	있다	14	28.00
병원비	부모님	12	92.30
	부모님 친구	1	7.70
	교회나 이주민 도와주는 단체	0	0.00
	대한민국 정부	0	0.00
	부모님 일하는 곳	0	0.00
	기타	0	0.00

라. 주거

이주아동의 주거형태는 부모님이 임대한 집이 78.0%, 학교기숙사가 14.0%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는 이주아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이주아동의 주거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거형태	부모님이 얻은 집	39	78.00
	학교 기숙사	7	14.00
	부모님 친구 집	0	0.00
	교회나 단체에서 마련해준 곳	0	0.00
	내 친구의 집	0	0.00
	기타	4	8.00
노숙한 경험	없다	50	100.00
	1번~3번	0	0.00
	4번~6번	0	0.00
	7번~9번	0	0.00
	10번 이상	0	0.00

마. 교육

이주아동의 4.0%만이 한국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96.0%는 몽골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한국말을 못해서가 39.6%,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가 33.3%,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선호해서가 12.5%로 나타났다. 한국학교에 다니는 이주아동은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주아동의 성적은 조금 낮다가 2.0%, 보통이다가 48.0%, 조금 높다가 42.0%, 매우 높다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에는 42.0%가 친구들과 어울려 논다, 26.0%가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한다, 14.0%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6.0%는 집에서 쉰다, 4.0%는 학원에 간다고 답했다.

<표 4-46> 이주아동의 교육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형태	한국학교	2	4.00
	같은 나라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	48	96.00
	다문화 학교	0	0.00
	기타	0	0.00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한국말을 못해서	19	39.60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16	33.30
	다른 형태의 학교를 선호해서	6	12.50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0	0.00
	돈이 없어서	0	0.00
	기타	7	14.60
한국학교에 다니는데 어려운점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2	100.00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0	0.00
	내 나라에서의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0	0.00
	한국어를 못해서	0	0.00
	돈이 없어서	0	0.00
	기타	0	0.00
성적정도	매우낮다	0	0.00
	조금낮다	1	2.00
	보통이다	24	48.00
	조금높다	21	42.00
	매우높다	4	8.00
방과 후 활동	집 또는 학교에서 공부	13	26.00
	아르바이트	7	14.00
	친구들과 놀이	21	42.00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프로그램	0	0.00
	집에서 휴식	3	6.00
	학원	2	4.00
	기타	4	8.00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이유는 50.0%가 일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28.0%가 공부하기 위해서, 10.0%가 한국에서 결혼한 엄마와 살기 위해서, 6.0%가 공부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

타났다. 부모님이 귀국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82.0%는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답한 반면 한국에서 계속 살겠다는 이주아동도 14.0%를 차지했다.

<표 4-47> 이주아동의 입국사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대한민국에 온 이유	알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위해	25	50.00
	한국에서 결혼한 엄마와 살기위해	5	10.00
	공부하기 위해	14	28.00
	공부하는 부모님 때문에	3	6.0
	기타	3	6.0
부모님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내 나라로 돌아간다	41	82.00
	한국에서 계속 산다	7	14.00
	기타	2	4.00

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이주아동이 한국학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54.0%가 매우 필요하다, 28.0%가 필요하다, 12.0%가 별로 필요 없다, 6.0%가 전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주아동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다가 46.0%, 필요하다가 46.0%, 별로 필요 없다가 8.0%로 비교적 높은 욕구를 보였다. 이주아동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다가 62.0%, 필요하다가 34.0%, 별로 필요 없다가 4.0%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표 4-48> 이주아동의 적응지원 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이주아동의 적응지원 서비스 욕구	1. 이주아동이 한국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3	6.00
		별로필요없음	6	12.00
		필요함	14	28.00
		매우필요함	27	54.00
	2. 이주아동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4	8.00
		필요함	23	46.00
		매우필요함	23	46.00
	3. 이주아동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전혀필요없음	0	0.00
		별로필요없음	2	4.00
		필요함	17	34.00
		매우필요함	31	62.00

사. 실태조사를 통해 본 이주아동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부모가 귀국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한국사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이주아동이 14.0%에 달했다. 이는 이주아동이 미래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주아동이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주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이유는 병원비가 없거나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아동이 20.0%로 이들 이주아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아동은 주로 보호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부모의 법적 신분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 또한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1)에서 당사국(대한민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따라서 비합법적 신분의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의료서비스 지원체도를 개선해 이주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주아동은 한국어교육과 한국학교 입학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이주아동은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한국학교에 입학 할 수 있으나 언어와 적응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한국학교에 다니기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96.0%의 이주아동이 동일한 국적을 지닌 학생들로만 구성된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가 언어와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 취업국(대한민국)은 출신국(이주아동의 국적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은(국가인권위원회, 2011) 중도입국한 이주아동들이 한국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권고했으나 실질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한국어교육을 받은 아동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수의 이주아동은 사회적응지원과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중심 기관이다. 따라서 학교를 단위로 이주아동의 사회적응과 언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5 난민아동

가. 일반적 특성

난민아동의 성별 구성비는 66.6%가 남성, 33.3%가 여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6(표준편차=1.91)세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지는 100.0%가 대한민국이었으며 아동의 국적국은 40.0%가 무국적, 33.3%가 콩고, 13.3%가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중국이 각각 6.7%로 나타났다. 아동의 난민지위는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가 60.0%,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경우가 13.3%,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료 인정받은 경우가 26.6%로 조사되었다.

<표 4-49>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1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연령	15	3.6	1.91	7	1

<표 4-50> 난민아동의 일반적 특성2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0	66.67
	여성	5	33.33
태어난 곳	대한민국	15	100.00
	대한민국 외	0	0.00
국적국	콩고	5	33.30
	코트디부아르	2	13.30
	방글라데시	1	6.70
	중국	1	6.70
	무국적	6	40.00
난민지위	난민지위 인정받음	9	60.00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	2	13.33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대기 중	0	0.00
	인도적 자위를 부여 받은 자로 인정받음	4	26.67

나. 경제

지난 1년 동안 끼니를 거를 정도로 어려워 도움을 필요로 했던 적이 있었던 난민아동은 46.6%에 달했다. 도움을 준 대상은 NGO가 42.8%, 교회가 28.5%, 부모의 친구가 14.2%였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난민아동도 14.2%를 차지했다. 14.2%의 난민아동은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 밥을 굶은 적이 있으며 결식 횟수는 4회에서 6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난민아동의 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지난 1년 동안 끼니 거를 정도로 도움이 필요	없다	8	53.33
	있다	7	46.67
도움을 준 대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1	14.29
	친구	1	14.29
	교회	2	28.57
	NGO	3	42.86
	기타	0	0.00
지난 1년 동안 결식경험	없다	12	85.71
	1번~3번	0	0.00
	4번~6번	2	14.29
	7번~9번	0	0.00
	10번 이상	0	0.00

다. 건강

난민아동의 건강상태는 조금 나쁘다가 6.6%, 좋은 편이다가 46.6%, 매우 좋다가 46.6%로 나타났다. 치료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는 아동은 14.2%였으며 건강보험이 있는 난민아동은 60.0%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 했던 난민아동은 46.6%를 차지했으며 도움을 받은 대상은 부모의 친구가 30.7%, 대한민국 정부가 23.0%, NGO가 15.3%, 교회가 7.6%였으며 23.0%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질병이나 부상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난민아동은 14.2%였으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는 약을 먹거나 바르는 것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이나 입원한 적이 있는 난민아동은 33.3%였으며 병원비는 난민아동의 부모가 부담한 경우가 40.0%, 교회가 20.0%, 기타가 40.0%로 나타났다.

<표 4-52> 난민아동의 건강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0	0.00
	조금 나쁘다	1	6.67
	보통이다	0	0.00
	좋은 편이다	7	46.67
	매우 좋다	7	46.67
질병	없다	12	85.71
	있다	2	14.29
건강보험	없다	6	40.00
	있다	9	60.00
지난 1년 동안 병원비 도움 필요	없다	8	53.33
	있다	7	46.67
병원비 도와준 대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3	23.08
	부모친구	4	30.77
	교회	1	7.69
	NGO	2	15.38
	대한민국 정부	3	23.08
	기타	0	0.00
지난 1년 동안 병원 치료받지 못한 경험	없다	12	85.71
	있다	2	14.29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돈이 없어서	2	100.00
	시간이 없어서	0	0.00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0	0.00
	말이 통하지 않아서	0	0.00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라 두려워서	0	0.00
	기타	0	0.00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는가	약을 먹거나 발랐음	2	100.00
	그냥 쉬었음	0	0.00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0	0.00
	아무것도 하지 못함	0	0.00
	기타	0	0.00
수술이나 입원한 경험	없다	10	66.67
	있다	5	33.33

병원비 출처	부모	2	40.00
	부모친구	0	0.00
	교회	1	20.00
	NGO	0	0.00
	기타	2	40.00

라. 주거

난민아동이 거주하는 집은 부모가 임대한 집이 93.3%를 차지했으며 기타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 노숙한 경험이 있는 난민아동은 7.1%였으며 1회에서 3회 정도 노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난민아동의 주거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주거형태	부모가 얻은 집	14	93.30
	부모친구가 얻은 집	0	0.00
	NGO나 교회에서 얻어준 집	0	0.00
	기타	1	6.70
노숙한 경험	없다	13	92.86
	1번~3번	1	7.14
	4번~6번	0	0.00
	7번~9번	0	0.00
	10번 이상	0	0.00
잘 곳이 없을 때 도움을 준 대상	아무도 도와주지 않음	0	0.00
	친구	0	0.00
	교회나 NGO	1	100.00
	기타	0	0.00

마. 보육

난민아동의 83.3%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아동이 너무 어리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유형은 다문화 보육시설이 60.0%, 한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20.0%, 기타 유형이 20.0%를 차지했다. 난민아동의 한국적응 정도는 낮다가 10.0%, 보통이 30.0%, 높다가 30.0%, 매우 높다가 30.0%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아동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돈이 부족하다가 53.8%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 문제와 불안정한 지위가 각각 7.6%를 차지했다.

<표 4-54> 난민아동의 가정생활실태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아이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나	아니다	2	16.67
	그렇다	10	83.33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기관에서 거절	0	0.00
	언어문제	0	0.00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문제	0	0.00
	돈이 없어서	0	0.00
	아이가 너무 어려서	1	100.00
	기타	0	0.00
어떤 형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나	한국아이들이 있는 곳	1	20.00
	국적국의 아이들이 있는 곳	0	0.00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 곳	3	60.00
	기타	1	20.0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의 문제	교사와의 어려움	0	0.00
	친구와의 어려움	0	0.00
	한국어 부족	1	11.11
	기타	8	88.89
아동의 한국의 적응정도	매우낮음	0	0.00
	낮음	1	10.00
	보통	3	30.00
	높음	3	30.00
	매우높음	3	30.00
아동양육의 어려움	돈의 부족	7	53.85
	언어 문제	1	7.69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	0	0.00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	0	0.00
	불안정한 지위	1	7.69
	기타	4	30.77

바. 실태조사를 통해 본 난민아동의 사회복지지원체계에 대한 문제점

난민아동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한국국적을 지닌 난민아동은 없었다. 난민아동의 40.0%는 무국적자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무국적 난민아동은 존재를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한 난민 신청자와 비합법적 체류 이주민 자녀가 제도와 절차의 부재로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난민 신청자와 비합법적 체류 이주민 자녀의 등록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인권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1)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무국적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는 난민아동은 14.2%, 돈이 없어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난민아동은 14.2%에 이를 정도로 난민아동의 다수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준 대상은 교회나 NGO, 부모의 친구 등 민간자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난민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다문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문화 보육시설의 장점도 적지 않으나 다문화 보육시설은 난민아동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고 주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제5장 외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

다문화사회는 국적, 민족,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는 각국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정기간(비교적 장기간 또는 영구적)의 정주가 기대되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적 협력·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가마다 단순하게 이주민여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부터 다인종화·전지구화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며,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자치단체별로 그 수준이 다르므로 보편적 의미로서 ‘다문화’라는 잣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Castles와 Miller(2009)는 각국의 이주민 수용방식에 대해 차별적 포섭·배제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ist model), 다원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차별적 포섭·배제 유형은 소수집단과의 접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회피하는 수용방식이며 동화주의 모델은 주류 문화를 위주로 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모델은 주류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존중의 질서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지향한다. 국가 간 이동과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차별적 포섭·배제 모델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국가는 동화주의 모델이나 다원주의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이주민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출신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정도에 따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동화(assimilation)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하기도 하나 나라마다 그 이주민 정책 수단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수렴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동일 차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캐나다·미국·호주·영국·네덜란드·스웨덴 등 다원주의 모델로, 프랑스·독일·일본·대만·한국 등을 동화모델로 파악하는 방식인 반면, 후자는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¹⁰⁾’를 활용하여 점수를

10)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지표(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로 번역할 수 있는 연구집단 SGI(2009)는 ‘안보와 통합’이라는 주제로 “정책이 이민자들을 그 사회에 통합하는 것을

매기는 작업으로 각국의 이주민정책 유형을 평가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각국은 과거와 다른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이주민 정책 유형 및 방향의 재편과 변화 이행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과거 차별배제 유형에서 동화주의모델로 이행하기도 하며 다원주의모델에서 동화주의모델로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정책을 선택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각 유형 별로 변화하는 이주민정책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나라들로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이주민 정책 형성 및 특성, 관련 법령 및 추진 체계, 이주민 지원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일본의 외국인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자 수는 약 215만 명(법무성 출입국관리국통계자료, 2008)으로 일본 인구의 1.69%를 차지한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금지하고, 일본계 이민 2·3세를 기술노동자로 수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계 브라질인이나 일본계 페루인이 대거 유입되었고 그 수가 2007년을 기준으로 약 38만 명에 이르고 있다(양기호, 2009). 미등록 외국인은 149,78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06,889명(28.2%)이고, 한국(조선)이 493,489명(27.6%), 브라질이

지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OECD 회원국 30개 나라의 실적을 평가하여 점수를 1점에서 10점을 부여하였다. 질적평가를 통해 네 등급으로 구분하면 1등급(9~10점)은 문화, 교육, 사회정책이 효과적으로 통합을 지원한다. 2등급(6~8점)은 정책이 이민자들을 그 사회에 통합하여 하나, 효과적이지 않다. 3등급(3~5점)은 문화, 교육, 사회정책이 통합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4등급(1~2등급)은 문화, 교육, 사회정책이 이민자 공동체를 격리시킨다(설동훈 외, 2011).

316,967명(14.7%), 필리핀이 202,592명(9.4%)이다.

일본의 다문화사회 형성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970년 이전에는 일본의 외국인주민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거주하던 재일 한국조선인과 재일 대만인이 대부분이었다(올드커머). 1980년대 이후 국가 간 인구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1990년의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의 개정으로 일본계 브라질의 정주자 체류 자격이 주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증가하였다(뉴커머). 이에 따라 1995년 이전에는 외국인등록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과 조선인이었으나 1995년 이후로는 국적이 급속도로 다양해졌다.

2) 정책 형성 및 특성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외국인 출입국은 국가의 업무이나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받아들이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외국인의 정주화를 전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수행한다. 일본 정부가 다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외국 인력의 수용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에 기인한다(양기호, 2009).

일본의 다문화사회 형성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인 1970년대는 재일 한국인의 정주화와 차별철폐운동으로 특징지워진다. 전후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해 외국인이 된 구식민지 출신자 중 한국 국적자들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자 재일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 정책의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이 1977년 ‘재일한국인의 생활을 위한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전국적인 행정차별 철폐운동을 시작하였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도 국제인권 규약의 서명과 비준이 행해진 1978년부터 1979년에 걸쳐 체류 권리의 보장과 사회보장의 적용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일부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들도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및 지방공무원으로의 채용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외

국민 정책은 주로 식민지시대부터 종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던 소위 ‘올드 커머’로 불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이었다.

두 번째 단계인 1980년대는 지역의 국제화와 ‘뉴커머’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경을 횡단하는 사람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정부에 의한 중국 귀국자 및 인도차이나 난민의 수용, ‘유학생 유치 10만인 계획’에 의한 유학생의 유입, 농촌지역으로의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와 엔고 등의 경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노동자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공공부문에서 국제화 노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자치성 내에 외국인 정책의 시행을 위한 ‘국제교류기획관’이 설치되었고, 지자체 간에 ‘국제화추진자치체협의회’가 설립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세 번째 단계인 1990년대는 뉴커머의 정주화와 외국인시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1990년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조업의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일본계 남미인인 닷케이진들에게 정주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뉴커머)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1980년대로부터 증가해 온 국제결혼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영주자격과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자도 늘어났다. 이 시기부터 사회보장과 아동 보육 및 교육의 문제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표출되었고, 이주민을 일본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정책과 일본 재계의 다문화사회 수용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이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한 결과 일본 총무성은 2005년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6년 3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안(플랜)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후속 보고서를 제안한 바 있다. 2006년 3월 총무성이 전국적인 다문화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도도부현(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에 해당)과 시정촌에 마련하고, 다문화공생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문화공생을 “국적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4년 도요타 선언은 다문화공생사회가 ‘일본인

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나 가치관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이다. 또한 건전한 도시생활에 불가결한 준법과 의무 이행을 토대로 한 '공생사회'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 흐름을 엄밀히 보면,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고객인 외국인주민의 수요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외국인민의 정착을 전제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거의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주민 대상 정책'은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책'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선주 외, 2009; 이혜승 외, 2011; 설동훈 외, 2011).

3) 체류자격

일본은 체류자격에 관한 법적 근거인출입국관리법 및 난민 인정법에 의하면 외국인의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 재류자격과 그에 맞는 재류기간이 부여된다. 외국인이 일본에 체제하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의거하여 일본에서 체제하며 활동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 27종류가 있다. 활동 내용에 제한이 없는 자는 대부분 장기 체류자들로 입국관리특례법에 기초하여 재일한국조선인 등의 특별 영주자와 1990년 법 개정으로 인해 입국이 용이해진 일본계 남미인(닛케이진)과 중국귀국자, 인도차이나 난민, 배우자가 일본인인 외국인 등이 영주자격의 취득 등에 의해 정주하는 경우이다. 한편 활동 내용에 제한이 있는 자로는 유학생, 연수생, 기업 내 전근자, 전문기술자 등으로 이들은 장기체재나 영주를 예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2004년 말 현재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 등록자의 66%를 차지하는 1,296,026명이며, 활동내용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등록자의 34%인 677,721명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게 허가되는 체류 기간은 영주자를 제외하면 최장 3년, 일반적으로 3개월, 6개월 또는 1년으로 극히 짧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극단적으로 짧은 체류기간과 자격 변경의 어려움으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그들의 권리보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최근 2012년 7월에 개정된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의하면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도입되어 과거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발행하던 외국인

등록증 제도를 폐지하고, 법무성이 발급하는 체류카드를 통해 3개월 이상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도록 개정하였다.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게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각종 신고 의무가 엄격해지고,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신분 보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인해 체류허가 기간이 지난 사람은 체류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체류허가 기간이 끝난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에 1년 단위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는 기존 법을 개정함으로써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아무런 신분적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외국인 관리를 법무성으로 일원화해 불법취업 및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단속을 효율화한다’는 목적에서 일본 정부가 3년 전 이 법을 고쳐 이번에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체류자 관리도 매우 엄격해져 외국인은 주소지가 바뀌면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근무처 등에 외국인등록사항이 바뀌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체류카드의 수령·휴대·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20만 엔(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합법 체류자들에게는 장점이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카드 소지자는 1년 안에 재입국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체류허가 기간은 지금의 3년에서 최장 5년까지로 늘어난다. 하지만 외국인인권법연락회 등 일본 인권단체들은 ‘체류자격을 5년으로 인정받으려면 학령기의 자녀가 외국인학교가 아닌 일본학교에 다녀야 하는 등의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한겨레신문사, 2012.6.24일자).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제도

1) 법령

일본은 중앙부처의 다문화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데, 외국인시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중앙정부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문화공생정책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이에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문화 추진계획 정비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가와사키 시에서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조례를 제정하였고, 미야기 현에서는 다문화공생사회의 형성의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별로 다양한 지침들을 마련하였는데 그 예로 가나가와현 1991년 국제정책추진플랜, 오사카부 1992년 국제화추진지침, 1998년 외국인주민 시책 기본지침, 하마마쓰시 2001년 세계도시비전, 가와사키시 2005년 다문화공생사회추진 기본지침, 히로시마시 2006년 다문화공생지역만들기 추진지침, 아이치현 다문화공생만들기사업 등이 있다(주성훈, 2010).

결국 이와 같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정책과 일본 재계의 다문화사회 수용에 관한 입장 표명 등이 일본 중앙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게 된다. 그 결과 일본 총무성은 2005년 ‘다문화공생의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고, 2006년 3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안(플랜)에 관하여’라는 보고서와 2007년 3월에는 후속 보고서를 제안한 바 있다. 2006년 3월 총무성이 전국적인 다문화사회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총무성은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추진주체로는 중앙정부보다는 도도부현(우리나라 특별시·광역시·도)에 해당과를 시정촌에게 마련하도록 하고 다문화공생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총무성(2006)은 <표 5-1>과 같이 다음의 5가지를 다문화공생의 의의라고 정리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받아들이는 주체로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공생 시책 담당자이다(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공생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인권 규약, 인종차별 철폐조약 등 외국인 인권 존중의 취지에서 시작된다(외국인의 인권보호). 셋째, 지역사회의 활성화는 지역산업과 경제의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역의 활성화). 넷째, 다문화공생의 마을 만들기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력 향상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의 육성을 가능하게 한다(주민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다섯째, 국적과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한다(유니버설 디자인의 마을 만들기).

<표 5-1> 일본의 다문화공생 플랜의 주요 내용

다문화공생의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의 수용주체로서의 지역 • 외국인주민의 인권보장 • 지역의 활성화
기본정책 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향상 • 유니버설 디자인의 마을 만들기 • 커뮤니케이션 지원 • 생활지원 • 다문화공생제도의 추진체제 정비

출처: 김이선 외(2006)

이러한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인권보장, 이문화(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다문화공생’(多文化共生)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가치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정책대상과는 달리 일본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한 것이다. 즉 다문화공생이란, 일본에서 국적과 민족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추진 체계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다.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받아들이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11) ‘다. 이주민 지원 정책 내용’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1990년대 이래 정부 주요 부처는 남미 출신의 일본계 후손인 닛케이진 중심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부처의 시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內閣官房 홈페이지). 먼저 법무성은 출입국관리 기본계획(제1차 1992년, 제2차 2000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노동성(현 후생노동성)은 1993년에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상황에 대해 사업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외국인고용상황보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은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외국인 아동 학생의 유입 및 상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외국인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를 배치하고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장려하는 ‘외국인아동 학생 입학 추진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문화청도 1994년부터 변화하고 있는 지역 상황에 맞추어 일본어 교육 추진에 힘쓰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해온 자치성(현 총무성)은 1989년 지역국제교류추진의 책정에 관한 지침을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통지하고 ‘외국인이 활동하기 쉬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뉴커머의 증가와 정주화에 대응한 ‘내향적 국제화’ 시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자치단체가 나타났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시책의 체계화, 종합화를 추진하여 이에 대한 기본 지침과 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표 5-2>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대표적 행위자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5-2> 일본 다문화공생의 추진주체

행위자 분류		부처(부서) 및 기관
중앙정부		• 문부과학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국토교통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지자체	도도부현	• 인권실, 국제과, 국제정책과, 국제실, 다문화공생지원실, 국제교류과
	시정촌	• 다문화공생계, 국제교류계, 마을만들기추진과, 인권추진과, 시민활동과, 구민과
산하공공기관		• 입국관리소, 전국시정촌국제문화연구소, 공생의 마을만들기간담회
민간단체 및 기타 기관		• 자치체국제화협회, 외국인집주도시회의, 난민지원협회, 다문화공생센터, 교육센터

출처: 이선주 외(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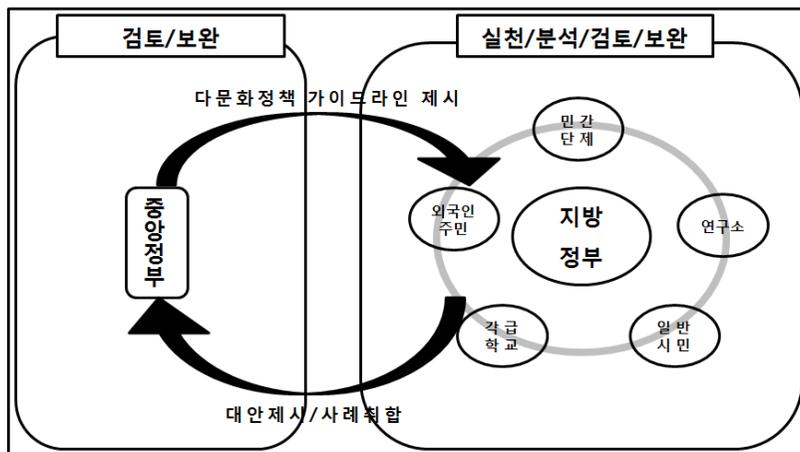
한편 외국인주민이 많은 일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보다 종합적, 계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인 다문화 기관으로는 국제교류협회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민간(국제교류협회)간의 역할분담은 <표 5-3>과 같다. 여기서 국제교류협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본어 교육, 상담활동, 모임 조직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총무성, 2006). 일본계 남미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다수 모여 사는 ‘시정(市町)’은 2001년 5월 ‘외국인집주도시회의(外國人集注都市會議)’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시책에 대해 정보교환과 중앙정부에 제언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표 5-3>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의 역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
기본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의 경계를 넘은 광역적 과제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외국인 주민을 직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체와 NPO 등의 가교역할
구체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계획의 책정 • 지역 전체의 사회 자원 (인재, NPO, 교재 등)의 조사 • 광역통역사 파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의 개발 • 시정촌 정보의 공유체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계획의 책정 • 외국인주민에의 상담업무 • 지역주민의 교류 기회 제공 • 지역의 관련단체의 네트워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체와 NPO등의 연계체계 만들기와 모델 사례의 광역적 보급(도도부현협회) • 다언어 정보수집과 유통체계 만들기(도도부현협회) • 일본어교실과 모국어교실 등의 개최(시정촌협회) •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보수집과 발신(시정촌협회) • 통역사번역인재의 발굴(시정촌협회)

출처: 김범수(2007)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시행의 특징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정책이 시달되는 상의하달식의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와 지역 내 외국인집단, NGO, NPO 등이 상호 협력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 실행하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여러 관련 기관과 협력 사업을 실행하고 이의 성과 및 대안에 대해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순환적인 행정체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1>와 같다.



출처: 조현미(2009)

<그림 5-1> 일본의 다문화공생 플랜 추진 방식

다. 이주민 지원 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 정책: 다문화공생 정책

일본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행정은 국가소관으로 외국인을 어떤 형태로 일본사회에 받아들일지에 관한 기본 입장은 국가가 결정한다. 그러나 일단 입국한 외국인을 지역사회에 받아들이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다문화공생 시책의 담당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역할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종합적, 계획적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 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본어 사용 능력과 일본 사회체계에 대한 지식 및 이해이다. 일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의 예로 도쿄의 다문화공생 센터 사업을 볼 수 있다. 이 센터에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 외국인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일본어 수업이 있다. 이외 국제교류협회에서 실시하는 일본어 교육을 살펴보면,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재류외국인 체험살롱이란 사업 아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식의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지도하는 살롱식 일본어 교실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아이치현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10회 이상의 교육 수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일본어 교육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은정, 2009).

커뮤니케이션 지원의 또 하나의 축인 일본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정보의 다언어화’가 마련되어 있다. 즉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보를 외국인의 자국어로 제공하고 각 지자체로 하여금 외국인에게 행정 서비스 및 각종 정부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 제공하여 외국인이 일본어 및 일본 사회를 쉽게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외국인 지원을 위해 설치된 공민관 및 국제교류센터에서는 일본어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언어로 외국인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생활정보, 교육제도, 거주관련제도, 복지제도,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다언어 출판 및 이에 대한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김범수, 2007). 예를 들어 아이치현, 군마현, 나가노현, 토치기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나고야시의 6현 내 시정촌이 작성한 다언어문서를 아이치현 웹시스템으로 만들어 시정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언어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다언어생활정보센터의 설립·운영하고 있다.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13개 언어로 방송하는 외국어 방송국도 설립하여 관서지방의 자치단체가 ‘지방정부정보(Local Government Information)’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2) 생활지원

외국인의 적합한 생활을 위해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방재 등의 지원 등이 있는데 첫째, 거주 지원으로는 주택임대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외국인과 일본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거지역과 관련 규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다. 먼저 대표적인 거주 지원은 외국인 거주 지원 시스템(가나가와현)으로 여기에는 부동산 산업계 단체, 민족단체, 각 지역의 국제교류협회, YMCA, 가나가와 외국인 주거 서포트 센터, 행정(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국어로 된 주택관련 각종 매뉴얼을 구비하고 외국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둘째, 교육 지원에서는 외국인자녀들의 취학준비, 학교생활, 상급학교로의 진로 및 취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교육 지원으로는 하마마츠시의 ‘외국인 학습 서포트 교실’이다. 하마마츠시는 2002년부터 ‘외국인 학습 서포트 교실’을 시내 4개소에 설치하여 미취학 아동에게 취학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사를 배치하여 브라질인 아동 학생에 대한 지도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셋째, 노동환경 개선 지원은 외국인 고용사업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로 아이치현 토요하시시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사회보험 사무소에 의뢰하여 시의 홍보지 및 상공회의소의 홍보지를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수속을 요청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넷째, 의료 지원으로는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병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언어로 작성된 의료문진표를 개발하여 의료기관 비치 및 다언어로 작성된 모자수첩, 조산제도 소개 자료를 배부하는 것이다. 미에현 국제교류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 서포트 프로그램에는 의료통역 자원봉사의 능력향상 연수(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중국어)와 의료통역자 파견 파일럿 사업, 외국인 의료정보의 정비, 건강상담회의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방재 지원은 외국인주민에게 방재교육, 훈련, 정보를 제공하여 긴급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조현미, 2009). 요코하마시 국제교류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해 시 다언어정보 네트워크 만들기’에서는 재해 등의 비상사태 시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표시 시트표를 출판하여 피해를 입은 타 자치단체에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쿄도의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쿄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도쿄도 내 자치단체, 국제교류협회, NPO, 40여개 자원봉사 단체가 연계하여 주재 외국인을 위한 도내 릴레이 전문가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비자·체류자격, 국제결혼·이혼, 사고 등의 법률상담, 임금·해고 등의 노동에 관한 상담, 건강보험·실업보험·연금 등의 상담, 교육과 진학 상담, 구매와 계약의 문제, 주거의 곤란함 등에 통역 자원봉사자와 전문가들이 대응하고 있다. 한편 후쿠오카 국제교류협회의 ‘따

뜻한 후쿠오카' 외국인 학생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후쿠오카시, 국제교류협회, 시민과 기업, 지역단체 등에서 '후쿠오카 외국인학생지원회'를 구성하여 교류 사업과 정보를 제공, 상담업무를 통해 외국인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3) 다문화공생 사회 만들기

다문화공생 사회조성 사업은 일본인들이 외국인을 이해하도록 돕고 외국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다문화공생지역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신설과 정비 및 각 단체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다문화공생정책 추진체제 정비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지원 사업을 기획·담당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행정청사 내에 설치하고 지자체 단위의 체제를 재정비하며, 외국인주민시책 담당부서가 중심이 되어 횡단적인 조정을 통한 부서 간 연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차원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문부과학성에서 추진하는 교육대책과 후생노동성에서 추진하는 고용대책 그리고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는 주거대책 등이 있다. 교육대책에는 공립학교에 전입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책으로 교육위원회의 상담원 배치,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도우미 배치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학이 어려운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하는 취학 지원(학용품비, 급식비 등)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방과 후 어린이 교실 추진사업을 통해 일본어 지도와 함께 일본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활동, 학습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용대책으로는 정주 외국인에 대한 취직 지원이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고 고용 안 내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정주 외국인의 원활한 취직을 위해 통역 및 상담원을 증원하고, 시정촌과 연계한 원스톱 상담코너를 설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토교통성에서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외국인의 입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일본은 1982년에 이르러서는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비준하고 국내외 평등 원칙에 따라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 일본인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등하게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개호보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같은 생활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¹²⁾.

긴급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영주권자가 아닌 이주민은 외국인 취로자격 여부 및 체류의 적법성에 상관없이 수급권에서 배제된다. 단, 미지불의료비 상환제도와 같은 긴급의료지원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일본의 합법적 체류 이주민 대상의 주요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설동훈 외, 2011).

(1) 사회복지정책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1970년대에 정규고용 및 종신고용, 완전고용, 경제성장, 핵가족 모델, 지역사회의 연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최근 들어 경제환경·사회환경의 변화로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사회적 스트레스의 증가, 자살, 우울증의 증가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후생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초보험법 등이 있다. 둘째, 사회수당으로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법, 주택보상법 등이 있다. 셋째, 공공부조로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등이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호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후행연금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 아동부양수당 등 기타 사회보장보험이 있다.

(2) 가족정책

첫째, 국제결혼중개업관리정책으로 일본라이프디자인카운셀러협회라는 사업주 단체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 인증 제도로 ‘동그라미 적 마크’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국제결혼중개업계에서 우량업체를 선별하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둘째, 보육지원정책으로 취업모 중심의 정책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취업모를 위한 야간보육제

12) 1946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 1950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외국인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행정통달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궁핍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자립 가능한 영주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택보육 등으로 서비스가 다양화 및 강화되었다. 셋째, 아동·청소년 가족소득지원정책으로 일본은 현재 요보호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정책이 없으며,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이수당제도가 있다. 그 외에 보육료지원, 유아교육비지원, 임신부검진, 출산육아일시금, 유아의료보조, 아동육성수당, 아동부양수당 등이 있다. 넷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산전산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단기 돌봄 휴가 및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초과근무 면제, 초과근무시간 제한 등이 있다. 다섯째, 돌봄·양육지원정책으로 지역양육지원 거점사업, 영아가정 전도방법사업, 유아가정 전 거주 방문사업, 유아가정 전 가구 방문사업, 곤니치와 아카짱 사업, 양육지원방문사업, 가족지원센터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 등이 있다. 여섯째, 모성보호제도로 일본은 OECD 평균수준의 모성보호제도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엔젤플랜'과 '신엔젤플랜'을 통해 보육시설 확충과 방과 후 보육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노사 간 일과 삶의 조화 현장 및 일과 삶의 조화 추진을 위한 행동지침을 체결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정비, 남성의 육아지원, 장시간 근무억제 등 노사의 자주적 대응이 제시되고 있다.

(3) 고용정책

일본에서는 외국인 또는 이민자가 일본 국민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문화공생 정책의 일환으로 노동환경 지원 차원에서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헬로우 워커'와 상공회의소 등과의 연대를 통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의욕이 있는 외국인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국인 고용정책이 단기취업, 교체순환, 정주화 방지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등 정착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명시적 차별을 받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인에 비해 열등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그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기회평등 혹은 차별방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4) 자녀교육정책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외국인 또는 이민자 자녀에게 제공한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의무교육 대상 연령대면 일본 국민과 동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호주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호주는 196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동질적인 인구구성을 보였으나 196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가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의 이민을 받아들여 캐나다 다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했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가로 독특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호주 인구의 해외 출생자 비율은 약 23.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호주는 인구의 약 43.0%가 외국태생이거나 적어도 부모 중의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여개의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이다(주성훈, 2010). 200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는 약 2200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451,900명이 증가하였다. 증가된 인원 중 66.0%는 해외 이주민 증가에 따른 것이다. OECD(2011) 통계에 의하면, 호주는 2009년과 2010년 사이 영구이민 수가 207,000명으로 영구이민의 82.0%는 이민 프로그램(migration program)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약 2/3는 ‘기술에 기반을 둔’(skill stream) 것이고, 나머지 1/3은 ‘가족이민’에 근거한 것이다.

2) 정책 형성 및 특성

과거 백호주의(白濠主義)로 알려져 있는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2009년 현재 다문화주의적 현실에 조용하여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유의정 외, 2009).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백호주의’ 정책과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1970년대 이전까지 호주의 독특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동화주의 모형이다. 즉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통하여 백인 중심적 지배체제와 인종적 동질성을

형성하고 국가적 통합을 추구하는 백호주의 정책을 지향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래 영국과의 관계 변화, 아시아권과의 경제적 교류 증대 등으로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연방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s)가 설치되었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관한 법률과 민족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었다.¹³⁾ 호주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연방정부의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이다.¹⁴⁾ 다문화정책의 추진주체는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와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 배경을 살펴보면, 다문화주의 정책은 1973년 당시의 이민 장관인 그래스비(Grassby)가 미래를 위한 다문화사회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기되고 다문화주의가 정책 순위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주의가 호주정부의 정책으로 천명된 것은 1978년 갈벌리 보고서(The Galbally Report)가 발간되면서부터이다. 이 보고서가 공식화한 다문화주의의 4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동등한 기회보장과 공적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둘째, 모든 사람은 편견 없이 자신의 문화를 보유 셋째, 이민자에게는 특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마련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하여 입안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갈벌리보고서에서 제시된 다문화주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정책권고는 정부정책에 거의 모두 수용되었으나 새로운 이민자에 대한 랭귀지 코스와 생활임금 지급 등의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한 핵심적인 권고는 프레이저 자유당 정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1986년 Committee of Review에 제출된 보고서(The Juoo Report)는 다문화주의를 동등한 참여로 정의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10여 년 동안의 다문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겪고 있는 사회적 불이익을 지적하면서 이

13)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공동체관계위원회 및 다문화주의 원칙 법률 2000(Community Relation Commission and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Act 2000)을 제정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 거주민들이 서로 다른 언어, 종교,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해 NSW 주정부는 주민의 평등한 권한 및 책임을 도모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뉴 사우스 웨일즈의 공동체관계위원회(CRS)라는 이름을 가진 법인이 구성된다. 위원회는 장관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정상우2008-10).

14) 이민부의 명칭에 '시민권'이 들어간 사실은 현재의 호주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다양성 강조에서 사회통합의 강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회입법조사처, 2009).

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불평등 제거를 주장하였다. 1988년 Committee to Advice on Australia's Immigration Policies의 보고서(Immigration: Commitment to Australia)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개념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989년 호주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와 거의 유사한 정책기조인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National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를 발표하였고, 2003년 ‘다문화 호주 : 다양성을 통한 통합’을 발표하였다. 첫째, 시민의 의무(civic duty)전략으로 모든 호주는 호주 사회의 자유와 평등, 다양성을 보장받고 호주 사회의 기본원칙과 사회구조를 유지하여야 할 시민적 의무를 지닌다. 둘째, ‘문화적 존중(cultural respect)’전략으로 모든 호주는 법에 따라 자신의 문화와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타인의 동일한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하여야 할 상호존중 의무를 지닌다. 셋째, ‘사회적 평등(social equity)’전략으로 모든 호주는 대우와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고, 사회적 평등은 모든 호주인에게 호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삶에 공헌하도록 허용하며, 인종·종교·문화·언어·지역·성별 등에 기반을 둔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넷째, ‘생산적 다양성(productive diversity)’전략은 모든 호주는 생산적 다양성으로부터 이익-인구집단의 다양성에 기인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이용승, 2004).

1970년대 후반 이래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점차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보다 선택적이고 기술 집중적인 방향’이다. 선택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한편으로 1977년 처음 공식 발표된 난민 정책 역시 진화하였다. 당시 난민의 인도주의적 재정착은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전반적인 자발적 이주 프로그램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인도주의 이민과 관련된 정책은 연간 수적인 제한을 받는다. 2007년 기준으로 호주에서 수용하는 인도주의 이민의 최대허용인원은 연간 1만 3천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천 명이 난민이다. 절대적 수치나 1인당 비율에서 호주의 인도주의적 재정착 프로그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전 지구적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Global Special Humanitarian Program: SHP)은 UN 난민 정의에 공식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모국에서 인권 침해 등 근본적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까지 포괄한다(OECD, 2007).

한편, 2010년 8월 길라드 총리가 취임한 직후 호주정부는 ‘큰 호주’ 정책을 폐기하였다. 그는 “이민자 유입 등 인구 확대 정책은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난, 주거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큰 호주’ 정책 폐지로 이민법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신규 유입 이주민 수가 대폭 줄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 까지 신규 유입 이주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나 급감했다.

호주의 이민 정책에서 중요한 시민권 부여의 조건은 기초적인 영어실력에 대한 요구와 시민권의 부여에 따른 책임과 권리에 대한 숙지이다(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시민권 부여에 따른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을 강조하고, 여전히 백인우월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백호주의로 인한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다양한 시민사회집단과의 협조 속에서 다문화주의를 실현해 가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3) 체류자격

호주의 이민제도는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의 적응을 촉진함으로써 호주의 경제적·인구적·사회적 복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으로는 이민자를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적으로는 ‘경제적 기술을 가진 이민자’(skill immigration stream)와 ‘가족이민자’(family immigration stream) 및 재외동포나 원주민 등의 ‘특별 자격이민자’(special eligibility migration)로 나눌 수 있다. 호주 사회의 낮은 출산율과 고령사회로의 진입,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주 프로그램 등은 이민 제도의 중심적 고려 사항이 되어 있다.

가족 이주를 통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약혼자·배우자·자녀·부모 등을 포함한다. 그들과 결혼했거나 약혼 상태에 있는 외국인, 사실혼관계(동성 결혼 포함)에 있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관계에 기초한 영주권 발급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 임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임시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호주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나이든 부모(Aged Parent)’를 위한 사증과 ‘기여하는 나이든 부모’를 위한 사증(Contributed Aged Parent)’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사증 범주에 포함된 영주권자의 경우 호주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그를 재정 보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나이든 부모를 위한 사증’의 경우 신청자와 그 신청자의 동반 가족 구성원에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기여하는 나이든 부모 사증’의 경우는 신청자와 그 자녀에게 좀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즉, 후자는 호수에 체류하는 자녀 양육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자녀는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계 자녀뿐만 아니라 재혼에 의해 구성된 자녀, 입양 등을 포함한 자녀관계 신청에 의한 자녀 역시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영주권자 자녀의 체류는 비영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증의 종류와 유효기간에 달려 있다.

가족 이주와 관련된 영주 사증은 그 외에도 형제·자매와 같이 가까운 친척 관계에 기초하여 부여하는 친척 사증(remaining relative), 호수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에게 경제적 생계나 여타의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령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부양가족 사증(Aged Dependent Relative), 호수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부양인(carer) 사증 등이 존재한다.

한편, 영주권자로서 거주한 12개월을 포함하여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4년간 합법적으로 호수에 거주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기본적 영어 실력
- 호주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사항에 대한 적정 지식
- 시민권 신청에 관한 기본적인 특성의 이해
- 호수에 거주하거나 호주와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유지
- 확실한 신원 보증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령

1958년 제정된 이민법(Migration Act 1958)과 시행령(Migration Regulations)이 이민행정을 규율한다. 이민법 개정은 상하 양원에서 통과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민법시행령은 사증 발급 규정 등을 담고 있는데, 이민·시민권부 장관의 권고를 받아 총리가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 어디에서든지 그 개정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국적법(Australian Citizenship Act 1948), 이민아동후견법(Immigration Guardianship of children Act 1946), 이민교육법(Immigration Education Act 1971)등이 중요하다(설동훈 외, 2011).

연방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공동체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s)가 설치되었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관한 법률과 민족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2) 추진 체계

다문화정책의 추진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로 주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와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연방정부의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이다.

(1) 중앙정부 차원

호주의 이주민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이민·시민권부가 보건·고령화부, 가족·주거·공동체서비스·원주민부,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 지방·지역발전·지방자치부 등과 협조 관계를 맺으면 추진한다.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ww.immi.gov.au)¹⁵⁾는 외국인의 입국, 체류, 정착관련 업무와 시민권 및 다문화적 사건

15) 1945년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지방정부·종족업무·다문화업무부'(Local Government, Ethnic Affairs and Multicultural Affairs)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지녔다. 또한 1972년~1990년에는 '원주민업무부'(Department of Aboriginal

들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장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민·시민권부는 이민자 통합 업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2005년과 2006년의 이민·시민권부 예산 가운데 대략 3억의 호주달러는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 5천백만의 호주달러는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에 사용되었고, 5천만 이상의 호주달러는 인도주의적 정착 서비스에 배정되었다(OECD, 2007).

보건·고령화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ing)는 보건, 질병 통제 및 고령화 대책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가족·주거·공동체서비스·원주민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www.fahcsia.gov.au)는 사회와 가족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는 교육, 노동시장, 노사관계 업무는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에서 맡는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관련되어 국가 수준과 국가 내부에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들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말하기, 읽기, 쓰기, 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언어·문자해독·산술능력 프로그램(Language, Literacy and Numeracy Program: LLNP)’의 재정을 지원한다.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는 학위와 전문자격증 심사를 관장하는 ‘국립해외숙련인정사무소(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의 업무도 포괄한다. 호주에는 직업 자격증을 평가하는 여러 기관이 있다. 예컨대 컴퓨터 자격증을 기초로 이민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호주 컴퓨터 협회’(Australian Computer Society)를 통해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는 그러한 평가기관을 감독한다.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는 노동시장 정책을 맡고 있다. ‘직업 네트워크(Job Network)’의 도움으로 사적 기관과 비영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필요로 하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호주에서는 민간조직, 비영리조직 또는 정부조직이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약 절반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능대

Affairs)가 있었고, 1990년에는 ‘원주민·토러스해협제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그 후 2001년까지 ‘화해·원주민·토러스해협제도업무부’로 존속하였다. 2001년 11월 26일 그 두 부처를 합하여 ‘이민·다문화·토착민업무부’를 신설하였고, 2006년 1월 27일 토착민 업무가 ‘가족·공동체서비스·토착민업무부’로 이관되면서 명칭이 ‘이민·다문화업무부’로 바뀌었다가, 2007년 1월 23일 다시 ‘이민·시민권부’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김승권 외, 2011).

학'(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TAFE)이다. 인도주의적 이주민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이민자 자원 센터'(Migrant Resource Centres)는 인도주의적 이민자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OECD, 2007).

지방·지역발전·지방자치부(Department of Regional Australia,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는 교육과 보건 및 이주민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 분야에서 교육·고용·사업장관계부와 역할을 분담하며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지역발전·지방자치부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들을 지원하기도 한다. 예컨대 농촌지역 또는 인구증가율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려는 이주민자들을 지원한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통합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주민이 정착한 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첫 2년 동안 이주민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한다(OECD, 2007).



출처: 설동훈 외(2011)

<그림 5-2> 호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호주의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은 체류 범주에 따라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와 일반 이민자로 대상을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난민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경우 특별정착서비스(special

settlement services)를 제공하고, 이 과정을 거친 난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일반 이민자는 일반 정착 서비스(general settlement services)를 적용하고 있다.

(1) 특별 정착지원 서비스: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① 인도적 정착지원 프로그램(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 Program, HSS)

인도적 정착 프로그램(Humanitarian Settlement Service Program)은 최근 도착한 난민들에게 집중적인 정착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욕구에 기반을 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난민들이 자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례 관리를 통해, 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특별 환경에 부합하는 정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욕구에 대응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HSS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6개월 동안 제공되며 특히 취약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인도적 정착 프로그램(HSS)은 이민·시민권부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자원봉사자 그룹들 또한 입국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협력한다.

■ 인도적 정착지원 프로그램(HSS) 서비스 내용

- 사례조정, 정보 및 의뢰(Case Coordination, Information and Referrals)
 - 초기 니즈 사정에 근거한 케이스 조정 계획 수립
 - 타 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의뢰
 - proposer가 SHP 입국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착 서비스 및 부조(On Arrival Reception and Assistance)
 - 유자격 입국자 입국 시 마중, 적합한 숙소로 인도, 초기 오리엔테이션 제공, 치료, 피복 등 긴급 욕구에 대한 충족
- 거주 서비스(Accommodation Services)
 - 입국자들로 하여금 적절하고 알맞은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호주에서 자신의 가구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사용품을 제공
- 고문 및 트라우마 단기 상담서비스(Short Term Torture and Trauma Counselling Services)

- 니즈 사정, 현금 계획, 고문 및 트라우마 상담을 위한 의뢰, 고문 및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건강 이슈들에 대해 헬스케어 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언

이러한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는 인도적 정착프로그램(HSS)에서 벗어나면 이민자자원센터(Migrant Resource Centres), 이민자서비스기관(Migrant Service Agencies), 지역사회정착서비스(Community Settlement Services Scheme) 지원 기관들을 통해 제공되는 일반적 정착지원 서비스들로 의뢰된다. 이 정착 과정은 <그림 5-3>과 같다.

도착 전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Onshore)		Citizenship/Civics 정착 5년 이후
	도착	최초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문화 오리엔테이션 (AU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정착 지원 서비스 (H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정착지원 프로그램(SGP) 성인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M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권 획득 시민권 심사 시민권 지위부여

* Onshore : 비자발적 이주,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Offshore : 자발적 이주, 재정착자

출처: 호주 이민시민권부(2011)

<그림 5-3> 호주의 난민 및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의 정착지원 흐름도

② 복합사례지원서비스(Complex Case Support, CCS)

복합사례지원서비스(CCS)는 이민·시민권부 지원으로, 전문화되고 집중적인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새로 입국한 난민들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현재 정착 서비스의 범위를 넘어서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정착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전 이주 경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 상태, 입국 후 위기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 특별 욕구(exceptional needs): 정신건강(고문 및 트라우마 서비스 포함), 신체건강, 가정폭력개입, 개인적 슬픔 혹은 가족 관계 상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특별 서비스, 숙소, 금전적 혹은 법률적 이슈 처리 지원 등
- 복합사례지원서비스(CCS): 호주 전역에 걸쳐 있는 기관들로 구성된 인도주

의적 서비스 패널(Humanitarian Services Panel)을 통해 서비스 제공, 일부 서비스는 직접적 혹은 하도급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단기 위기 개입의 경우 최대 14일까지 사례 관리 서비스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제공되며, 평균 케이스 기간은 4개월이다.

(2) 일반 정착지원 서비스

일반 이주민과 특별 정착 서비스 과정을 거친 난민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 경우 일반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①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AMEP)

성인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AMEP)은 실용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한 이주민이나 인도주의적 입국자들에게 무료 영어 수업을 제공하는 이민·시민권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성인 이주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최대 510시간(난민에게는 100시간 추가)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학력의 25세 이하 난민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들은 910시간까지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다. 25세 이상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들은 61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타 모든 이주민들은 51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AMEP 수업들은 호주 내 250개 이상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제공된다. 학습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 Distance학습 또는 Home Tutor Scheme을 통해 교실 또는 지역사회 기반 또는 홈 기반으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전일반과 반일반이 있고 시간대도 주간, 야간, 주말반이 있으며, 통신교육이나 가정방문교육도 제공되고 있다. 교육내용은 영어뿐만 아니라 호주의 문화적 배경이나 관습을 비롯한 호주 사회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보육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② 정착지원 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 SGP)

정착지원 프로그램(SGP)은 특별 이민 초기 난민과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위한 집중적인 정착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정착지원 프로그램(HSS)보다 대상 집단이 더 광범위하다. 즉, 이민·시민권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SGP은 이민자, 난민, 인도주의적 입국자들이 좀 더 자립적이고 완전하게 호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SGP은 2006년 7월 1일 도입되어 어떤

지역사회 및 거주지가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큰지 정착 패턴이나 욕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와 지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2011-2012년간 3,800만 달러 정도가 전국 163개 기관의 SGP에 할당되었다(자금지원은 Minister for Multicultural Affairs에서 결정).

■ 자금지원 가능 서비스(2012-13)

- 케이스워크/조정 및 전달체계서비스
- 지역사회 조정 및 개발
- 청년 정착 서비스
- 민족 특화 지역사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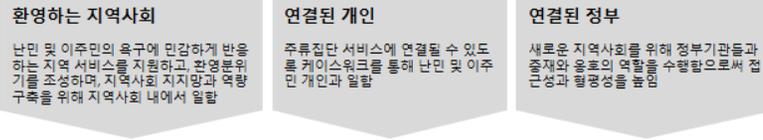
■ 자금지원 불가능 서비스(2012-13)

- 전문가 상담서비스
- 주/지방정부 기관 책임의 서비스
- 전문가 서비스(예, 영어수업 또는 아동보육)
- 기금지원 받지 않은 프로그램의 번역가 서비스
- 축제 및 축하 성격의 다문화 행사
- 인도적 정착지원 프로그램(HSS)이나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AMEP)에 의해 제공되는 중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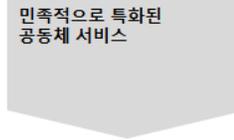
이러한 호주의 정착지원프로그램(Settlement Grant Program)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5-4>와 다음과 같다.

정착 지원 프로그램

난민과 이주민 정착 서비스



민족특화서비스



서비스 또는 활동

- 이주민의 정착지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광범위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제공되는 포괄적인 종합 서비스
- 이주민이나 이주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표적화된 지원
- 문화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젊은 이주민의 정착을 원조하기 위한 표적화된 지원
- 지역사회 조정과 개발을 통해 새 입국자들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
- 새로운 공동체의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지
- 새로 등장한 지도자와 기관에 대한 훈련, 멘토링 및 옹호
- 서비스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기관 그리고 난민과 이주민 정착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함

재정

- 정착업무가 다년간(일반적으로 3년) 지속되는 특성이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재정으로 이동
- 충족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 그러나 관련된 서비스 전달 경험을 지닌 일반주의 실천기관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없는 곳
- 난민과 이주민에게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
- 클라이언트의 수와 욕구 그리고 능력에 기초해 추가로 2년간의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
- 새로운 또는 새로 생겨난 공동체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대표하는 민족 특화된 기관 그리고 민족 특화된 단체에 재정 지원

개선된 프로그램 경영



<그림 5-4> 호주의 이민자 정착지원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 체계

③ 통번역전화서비스(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통번역전화서비스(TIS)는 이민·시민권부 지원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사회 언어를 커버하며 이루어지는 일주일에 매일 24시간 전화 및 현지 통역 및 번역 서비스이다. 호주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61 450)로 연결이 가능한 통번역라인인 TSI National(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National)을 설치하고, 1,800여 명의 통번역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100여 개국의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의료기관, 시민단체, 복지기관, 지방행정기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④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

첫째, ‘Living in Harmony 프로그램’은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의 이슈를 제기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1999년 이후 현재 388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 49개 협력사업, 9개 주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3월 21일을 Harmony Day로 정하고 지역사회 다문화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하여 다문화 행사를 주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둘째,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Living in Harmony의 일부로 정부 이민 및 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와 지역단체들이 연계하여 호주적 가치 함양 및 상호존중과 사회참여를 지역적,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호주에서는 사회보장제도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 급여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결혼이주민의 경우도 호주 시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호주의 시민인 이주민 대상 주요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

첫째, 공공부조는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있다. 출발수당(New Start Allowance)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제도가 있다. 모든 공공부조제도는 ‘가족·주거·공동체서비스·원주민부’ 산하 ‘센터링크’에서 담당한다. 둘째,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이다. 호주의 정부구조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정부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연금, 실직자 수당, 아동보육비, 장애인연금 등 직접적 현금 급여 사업을 주로 맡는다. 또한 시설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주정부·지방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을 위임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집행 업무는 ‘센터링크’의 지방사무소를 통해 추진한다. 주정부는 병원, 교육 및 서비스 시설 등을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실질적 대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가족정책

호주의 가족정책 추진 배경에는 일을 할 것인지, 아이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 부모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사회적 지원의 표적 집단은 저소득 가족이다. 부모들의 노동력 공급 장벽을 낮추기 위해 호주 정부는 강력히 개입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빈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한 부모 그 가족의 빈곤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가족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세금혜택(Family Tax Benefit: FTB)이다. 가족세금혜택의 ‘A파트’는 자녀의 수와 연령에 따라 지급되며, ‘B파트’는 한부모를 포함해 주요 소득원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가족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녀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과 육아공제(Child Care Tax Rebate)도 있다. 둘째, 근로복지 프로그램 패키지(Welfare to work package) 중 하나로 ‘부모급여(parenting payment)’가 있다. 셋째, 허가 또는 등록된 육아시설을 사용한 시간에 따라 ‘자녀보육수당’이 지급된다. 연소득이 34,310호주달러 이하인 가구나 소득보조금을 받은 가구에 대하여 시간당 2.96호주달러의 시설 사용비가 지급된다. 추가 보조는 육아공제로 이루어진다. 넷째, 모성급여(maternity payment)는 출산이나 입양에 따른 영아의 양육을 위해 지급된다. 보통 4,000호주달러가 일괄 지급되며, 둘 이상의 쌍둥이 출산 시에는 아동 수에 따라 지급된다. 급여를 위한 소득이나 자산조사는 없다. 마지막으로, 모성휴가와 육아휴직(부모휴가) 모두 무급이고 각각 6주, 52주를 보장하고 있다.

(3) 고용정책

호주에서는 장기 체류자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교육과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노동시장 통합방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의 목표가 이민자들의 직업 훈련을 장려하고, 언어습득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 능력 향상 및

실업률을 낮추는데 있다.

(4) 자녀교육정책

호주는 1972년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한 이래, 그 영향으로 교육정책에서도 ‘다양성 존중’을 표방하는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중 두드러진 것은 반 인종차별교육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반인종주의 전략을 실행,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학교의 교과과정과 평가 틀 제시 둘째, 전국의 학교 교육을 위한 세부적 인종차별방지교육 프로그램 제시 셋째, 인종차별방지를 위한 국제적 접근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 수업 전략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박성혁 외, 2008).

3 독일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현황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7년 약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한다¹⁶⁾.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¹⁷⁾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10%를 차지한다(독일연방 통계청, 2006). 외국인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터키 출신이 약 176만 명으로 가장 많아 24.7%를 차지하고 이탈리아 출신이 약 55만 명으로 7.8%, 폴란드 출신이 약 42만 명으로 6.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German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a).

16) 독일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부터 약 9%로 지속된다(연방내부부, 2008).

17) 부모세대에서 독일로 이주하여 독일에서 출생, 외국인이었으나 독일로 귀화, 독일인-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독일 출생 자녀 및 손자녀를 말한다.

2) 정책 형성 및 특성

독일은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시민권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영국과 뚜렷이 구분된다. 독일은 1950~1960년대 이주노동자를 수입하면서 정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 model)을 채택하였고, ‘이민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만 받아들인다’는 이민 정책의 기초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장기 체류가 늘면서 이주노동자를 ‘교체순환원칙’(rotation principle)에 의거하여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독일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귀국촉진정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독일 사회로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주노동자 귀국촉진정책은 사실상 실패하였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으로 정착하였다(설동훈 외, 2011).

구체적으로 독일의 이주민 정책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표 5-4>와 같다. 독일은 2차 대전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외국인노동력 유입을 장려하여 1955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그리스, 터키 등 주변 국가들과 노동력 파견협약을 통하여 소위 ‘손님 노동자’(Gastarbeiter)를 받아들였다. 1970년대 초반 외국인 과잉유입에 대한 우려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주민가족의 고용제한, 가족 재결합의 제한, 차등적인 아동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주민 유입을 줄이고 기존의 외국인을 귀환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들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엄격한 정책이 고수되었으나 이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는 동유럽으로부터 이주가 증가하고 1991년 독일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고조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고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민권 및 국적법은 전통적인 속인주의 방식을 변경하여 이주민 가정 출생자일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속지주의를 적용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외국인이 일정한 조건¹⁸⁾을 갖추고 8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법률 개정 전 국적 신청 자격요건이 1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할 것을 요구

18)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독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재정적 자립능력이 있으며 독일의 기본적인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신원조회기록 결과 상 범죄 기록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2008년 9월1일부터는 독일의 헌법,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민권 시험(naturalization test)을 통과하여야 한다.

하였던 것에 비하여 상당히 파격적이다(이용승, 2007).

이어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여 국적 및 난민, 이민, 망명 등 이주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위하여 이민자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이민법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단일한 과정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박채복, 2009). 또한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예산지원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제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를 열어 ‘국가 통합계획’(der Nationaler Intergrationsplan)을 수립하였다. 제2차 사회통합 정상회의에는 독일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각료, 다양한 이주자 연합, 비정부 민간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지난 1년 동안 6개의 워킹그룹이 작성한 약 400개의 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다. 국가통합 계획은 연방 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통합과정, 언어지원,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 여성지원, 지역의 통합노력 지원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한 종합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상무, 2009). 한편 EU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 이민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강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연령 하한을 18세로 규정하고, 가족재결합을 위하여 입국하는 배우자에게 독일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요구하며, 외국인은 반드시 통합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하였다.

<표 5-4> 독일의 시기별 이주민 정책

시기	단계	내용
1955-1972	모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모집 • 경제 및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소위 '손님노동자' 유입 •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회 및 경제정책 전무
1973-1980	확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일쇼크로 실업률 상승으로 1973년 외국인력 모집 중단조치, 1977년까지 가족재결합 제한 • 제한적 정책 불구 외국인들의 지속적 체류 증가 • '독일은 이민수용국이 아니다'라는 입장 명확
1981-1998	방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명신청자, 난민, 독일혈통 이주민 급증 • '독일은 이민수용국이 아니다'라는 입장 고수 • 외국인법 개정 (1997.1.1 효력)
1999-현재	인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법 개정 (2000.1.1 효력) • 2005년 이민법 제정 • 2007년 국가 통합계획 수립

출처: 김재경(1997)

이처럼 독일이 혈통에 기초한 이민 정책 기초를 바꿨음에도 외국인이 독일 시민권 획득 전에 과거 국적을 포기하는 쟁점, 외국인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구 동독지역의 극우파에 의한 폭력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독일은 이민자 수용에서 폐쇄적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의 폭력 사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외국 출신 학생의 유창하지 못한 독일어 실력을 문제 삼아 반외국인 정서를 자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Castles와 Miller(2009)는 이민자 통합의 '이념형'을 제시하였는데 독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차별배제모델' 또는 '동화주의모델'로 분류될 뿐 '다원주의모델'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⁹⁾. 이러한 인종차별 범죄의 증가와 외국인 혐오 세력의 존재만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처럼 '독일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본다. 독일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다문주의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그 정의와 내포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Pieterse, 2007) 독일을 다문화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19)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1970년대~1980년대에 호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이어졌다.

교체순환원칙에 입각하여 단기체류 후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받아들였던 이주노동자가 독일사회에 정착하여 ‘다문화사회’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전통이 있으니 그 해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3) 체류자격

독일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로부터 각자의 체류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이민법에 근거하여 ‘체류허가’와 ‘정착허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체류허가’와 ‘정착허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체류기간의 제한 여부에 있다. ‘체류허가’는 체류기간이 일정하도록 제한되지만, ‘정착허가’는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한 허가되는 활동 범위도 다르다. 체류허가는 체류기간이 특정한 체류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체류법 7조). 즉 명시되어 있는 체류 목적과 다른 목적의 체류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면 정착허가를 받게 되면, 영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어떠한 부차적 규정도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체류법 제9조).

외국인이 정착허가(영주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아홉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지난 5년간 체류허가를 받았고(독일인의 배우자는 3년간), 둘째, 생계가 안정되어 있고 셋째, 최소한 6개월 동안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넷째, 지난 3년 동안 6개월 이상의 구급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거나, 180일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지 않았고 다섯째, 노동자인 경우 취업허가를 받았고, 여섯째,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허가를 받았으며, 일곱째, 독일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으며, 여덟째, 독일의 법령과 사회질서, 생활방식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고 있고, 아홉째, 본인 및 동거 가족을 위한 적합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곱째와 여덟째의 요건은 사회통합코스에 참가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독일헌법 제 6조는 결혼과 가족을 국가의 특별한 보호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는 독일 가족 재결합 및 가족 이민 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도출되고, 구체적으로 체류법 제 27조에서 제35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Schneider, 2009). 결혼이민자가 외국에서 독일에 입국하려면 우선 각 나라 주재 독일대사관에 결혼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서류는 독일인 배우자의 거주지역 지방정부에 보내지고, 각 지방정부 이민관련부서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후 연방정부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정이 조금 다르나 대체로 유사한 조건과 심의과정을 거쳐 결혼사증이 발급된다. 그는 독일 입국한 후 사증이 부착된 여권을 제출하여 체류허가를 받는다. 체류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는 취업허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직종·지역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체류허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체류허가를 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독일 내 사업장에서 8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인 독일 정부에 ‘귀화’를 신청하여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혼이민자는 독일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지 2년 경과 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내 또는 남편이 독일인인 외국인이 독일에 귀화를 신청하면 예외적인 몇몇 경우²⁰⁾에만 거부될 뿐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 또한 국적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대부분 신청자가 사회복지프로그램 수혜자일 경우, 취업기간이 짧아 재정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 사료될 경우 출신국에서 국적포기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다(주재순, 2007).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령

독일은 전통적으로 혈통과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로 외국인 거주자의 오랜 역사에도 독일사회 내 외국인(이민자) 통합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거부되었 으며 더 나아가 법적인 측면에서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새로운 시민법(new citizenship law)’ 도입을 계기로 ‘출생지주의(jus soli)’ 방식 아래 독일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가 ‘독일시민권’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랫동안 고수되어온 혈통주의 대신 거주 중심의 ‘통합’이 독일사회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20) 예외적 상황이란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거나, 별거 중 이혼을 계획 중인 경우 등이다. 또, 결혼의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결혼’으로 드러날 경우 귀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독일의 이민 관련 법제를 살펴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독일이 연방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제이기 때문에 독일의 입법 체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뉘어져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더욱이 이민 및 난민 관련 행정책임은 연방, 주,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민·난민 관련 사안은 연방정부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 이민 관련 문제에서 무력하다는 뜻은 아니다. 주는 국가 단위의 입법권에 관한 포괄적 참여 권한과 거부권을 지니고 있다. 이민법의 제·개정에는 종종 상원과 하원 모두를 대표하는 특별중재위원회의 협상과 토의의 결과물인 타협(안)인 경우가 많다(Schneider, 2009). 대표적인 이주민 관련 법령은 이민법과 체류법을 들 수 있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법은 2005년 제정된 이민법으로 외국인의 입국, 거주, 이주자의 통합정책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5년과 1990년의 외국인법이 오로지 치안과 질서의 보장을 중시하였다면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이민법은 외국인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였으므로 독일 이민 정책 변화의 시작으로 여겨진다(German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독일에 체류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간소화되어 기존의 외국인법제 5조에 규정된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인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권한(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재량권(Aufenthaltsbefugnis) 외국인 체류허가의 구분은 법의 제정으로 유기한적인 체류허가(이민법 제7조), 무기한적인 정착허가(이민법 제9조)로 간소화되고 장기적 EC체류허가 자격을 부여하였다. 둘째, 정주가 가능한 노동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숙련기술자와 전문 인력의 이민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라 허용함으로써 노동허가제, 모집금지원칙의 예외규정을 핵심으로 노동이민의 합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독일경제의 발전과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예상되는 자영업자의 이민이 최초로 허용되었다. 넷째, 외국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치고 1년 동안 독일 내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도입 2년 후인 2007년 7월에는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영구주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독일 거주 8년 이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이전 15년 이상 독일 거주가 귀화조건인 일부였던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박채복, 2007).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독일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29,024명으로 나타난다(독일연방통계청, 2007-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7).

이 개정안을 통해 여러 조항들이 추가 혹은 개정되었는데 이중 중요한 변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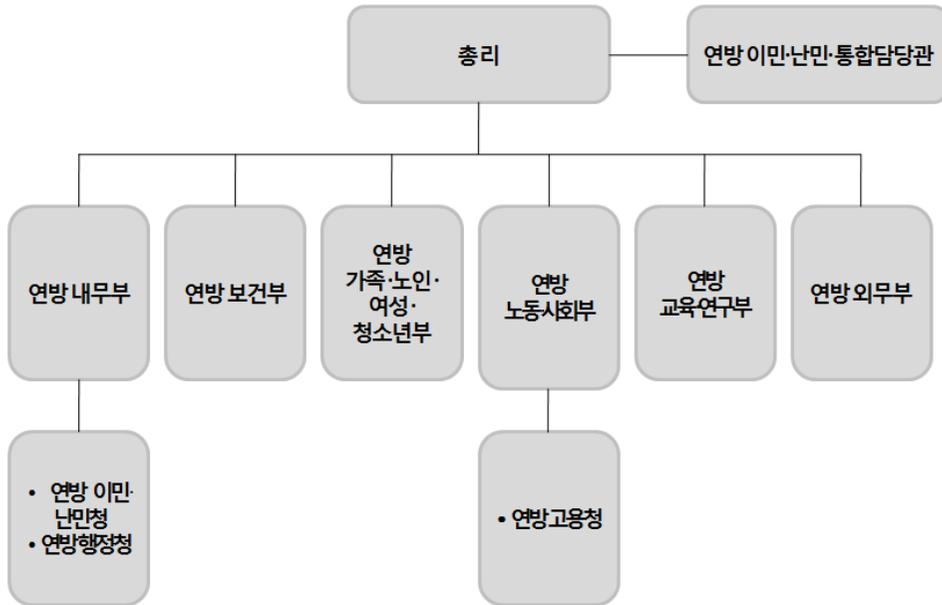
- 독일에 체류하기 위한 법적 조항 간소화: 기존 외국인법에 규정된 외국인 체류 허가의 구분인 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체류인가(Aufenthaltsbewilligung), 체류권한(Aufenthaltsberechtigung), 체류재량권(Aufenthaltsbefugnis)이 유기한 체류허가, 무기한 정착허가와 더불어 장기적 EC 체류허가 자격 부여 등이다.
- 망명 자격 거부를 당한 외국인과 같이 독일에 오랫동안 거주했으나 법적으로 출국을 앞둔, 하지만 인도주의적 문제로 인해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유기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 의무적 언어시험 및 언어교육 시간 이수 제도 실행: 언어교육 시간을 600시간에서 900시간으로 증가하고 이수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 외국인 사업체 유인을 위해 사업이민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을 100만 유로(2005년 이민법 기준)에서 50만 유로로 감소하고 10개의 직업창출 대신 5개로 감소한다.
- 노동허가와 체류허가가 통합되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 국제결혼 규정 강화: 독일 국민 혹은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EU 비회원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결혼할 시, 남성·여성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적인 독일어 구사능력을 소지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제 혼인을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2007년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한편, 체류법은 외국인의 입국·체류·취업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이다. ‘독일어’와 ‘독일사회의 이해’ 교육 과정에 중점을 둔 연방정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등록법은 독일의 이민 데이터 및 통계와 관련된 핵심 법적 근거다(Schneider, 2009).

2) 추진 체계

2005년 이민법 제정에 따라 독일 정부는 외국인과 이주자들의 사회통합정책을 전담할 기구인 연방 이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하여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방 이민·난민청은 사회통합기획과, 사회통합교육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3개 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업무는 이민법에 따른 통합코스 실행, 지역별 사회·문화적 통합사업 조정, 연방 차원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 총괄, 사회통합 프로젝트 지원, 이주초기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박채복, 2008). 독일 연방정부는 이주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정책 실시기관인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중시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용과정에서 여성이주자들에게 여성 친화적 프로그램이 차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들 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박채복, 2009).

독일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역할 분담을 살펴보면, <그림 5-5>와 같다. 연방내무부가 이민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정책 개발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연방 이민·난민청은 주로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 외무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사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연방 노동사회부는 외국인에게 취업허가를 하는 등 노동시장을 관리한다. 복지, 가족, 교육정책은 각각 해당 부처에서 수행한다.



출처: 설동훈 외(2011)

<그림 5-5> 독일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이외에도 이민 정책이 수립에 관여하여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총리실 직속 ‘연방 이민·난민·통합담당관실’이 있다. 1978년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의 통합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담당관’을 임명하다 ‘연방 이민·난민·통합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다음 <그림 5-6>에서 제시한 것처럼 5개의 테스크포스를 가진 조직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어 있다. ‘연방 이민·난민·통합담당관’의 법적 근거 규정은 ‘체류법’ 제92조부터 제94조에 있다. 담당관은 이민·난민·통합 업무에 관한 자문을 연방 정부에 제공하고, 관련 입법의 초기 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담당관은 영주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고, 외국인혐오증에 대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 2005년 이후 ‘연방 이민·난민·통합담당관’은 총리실에 제도적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어느 정부 부처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 기관이다. ‘연방 이민·난민·통합담당관’은 통합정책 개념으로 ‘국가통합계획’(Nationalen Intergrationplan) 작성을 주도하였고, ‘통합을 위한 국가실행계획(Nationalen arktionsplans for Intergration)’의 작성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이민·난민·통합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은 있지만 실행과 점검 기능은 없다.



설동훈 외(2011)

<그림 5-6> 독일 '연방 이민·난민·통합 담당관실'의 태스크포스 구성자료

2007년 7월 제2차 통합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통합계획'은 독일에서 최초로 이민자 통합정책을 결정할 때 연방 정부, 주 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주민 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등 광범위한 단체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통합계획'에는 400개의 실행 계획과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그 중 150개는 연방 정부에 의해, 250개는 비정부기구에 의해, 50개는 이주민 단체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핵심 영역은 언어 교육, 균등한 교육 기회,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등이다.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1) 통합강좌

독일 내 장기 거주하며 체류허가를 받은 모든 외국인인 반드시 강좌를 이수해야 하며, 크게 '오리엔테이션 과정'과 '언어강좌 과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통합강좌의 일부분인 오리엔테이션 강좌는 독일의 법질서, 문화,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둔다. 독일연방의 역사, 기본법 및 국민의 의무, 유럽사회적 시장경제, 유럽의 통합, 독일의 이민사 및 인간의 이해, 종교적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등 법질서, 문화, 역사 부문의 다양한 강좌 중 이주민이 선택, 수강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총 45시간의 수업이 제공된다. 수업은 독일어로 제공되며 수업 수강 이후 필기 혹은

구술시험을 치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통합강좌는 곧 언어강좌를 가리키는데 이는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즉 외국인, 독일혈통 외국인, EU 소속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강좌로 총 900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독일어 능력은 독일 내 교육 및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지며, 외국인으로 하여금 독일사회에의 수월한 적응을 위해 중요요소를 손꼽히기에 독일정부에서는 집중적인 언어강좌 체계를 도입, 제공하고 있다. 언어강좌는 모듈방식의 커리큘럼으로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수강하게 되어있다. 또한 모국어조차 문맹이거나(illiterate in their native language) 여성, 청소년과 같은 특수집단을 위한 특별언어강좌가 제공되기도 한다.

언어강좌 이수는 독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려는 자에게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005년 이민법 발효 후 1년 이상 체류가 허용된 이주노동자 및 자영업자, 이들의 가족, 망명 승인자 및 국제난민조약에 의해 체류가 허용된 난민 그리고 허용된 적소지자로 독일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독일혈통 귀환자, 독일에 5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체류신분이 보류되어 있거나 비자 문제로 신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 통합강좌에 참여가 가능하다(박채복, 2007). 하지만 경우에 따라 언어교육과정 이수 의무가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는 외국인 중 독일에서 학교 교육을 받은 아동, 청소년, 독일어 능력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박명선, 2007). 총 900시간의 강좌를 이수하고 언어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적 취득 절차에서 이득이 있는데 이는 즉 국적부여기간인 8년에서 1년을 감하여 7년 만에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2) 이주민 상담서비스

2005년 1월부터 연방 내무부의 관리 하에 실행되고 있으며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독일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새롭게 이주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후 최대 3년까지 초기상담을 제공하며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예로는 이주민의 사회적 능력을 파악하고 이런 능력을 고려, 필요한 서비스 계획 수립이 포함된다.

청소년 연령의 젊은 이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연방가족여성·노인·청소년부서가 담당하는데 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동

원, 조기상담지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하며 탁아지원과 같은 아동 대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약 360개의 ‘이주청소년서비스’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박명선, 2007).

(3) 공공 정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이 성공에 이르는데 핵심적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정보제공이다. 독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에게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내 통합정책 및 자원,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 독일의 연방이민난민국(The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BAMF)에 의해 관리된다. 리플렛 및 책자와 같은 다양한 출판물이 매년 제공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독일의 공공교통 시설이용, 공공기관이용, 재정적 지원, 학교 및 직업 소개, 언어교육 소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있다. 가장 많이 제공되는 출판물로는 이주 초기자를 위해 제작, 배포되는 ‘환영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한 기본 정보서(Welcome to Germany: Basic Information for Immigrants)’가 있으며 이 외 독일정부의 통합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 등을 담은 ‘통합을 중심으로: Focus on Integration’ 뉴스레터 그리고 ‘독일어: 외국어로써(German as a second language)’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① 자녀양육 지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이 있는데, 이는 독일 내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24)이면 독일인과 동등하게 자녀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 1명 당 부모 및 법적 보호인 중 한사람에게만 양육비가 지원되는데 아동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같이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때 지원된다.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이 가정에게 큰 경제적 압박으로 다가온 사실을 인식, 독일정부에서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자녀양육보조법(Federal Child-Raising Allowance Act)을 정하여 연방자녀양육보조비(Federal child-raising allowance)를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연방부모수당법(The Federal Parental Benefit Act)으로 대체, 제정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동에 해당된다. 즉, 2006년 12월 31

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연방자녀양육보조법에 적용된다. 연방부모수당법 수혜의 자격요건은 자녀양육보조법과 동일하고, 수당 액은 부모의 소득과 직결된다. 자녀양육보조와 같이 독일에 영구 거주하거나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녀교육 지원

현재 독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외국인 자녀이거나 혹은 이주민 가정의 자녀는 전체 학생의 약 10%를 차지한다. 현재 독일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다양한 언어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각 시별로 이주민 가족을 위한 행정부서를 마련, 자녀들의 언어 교육 및 적응을 위한 다양한 원조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예로 독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민가정 자녀지원 지역사무소(Regionale Arbeitsstellen F. 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aus Zuwandererfamilie - RAA)를 살펴볼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주민 가정의 독일어 습득 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가정의 순탄한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에 처음 시행, 현재 27개 지방을 두고 실행이 되고 있다. 학령기 이전 단계의 조기지원부터 시작, 학령기에서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아울러 다양한 지원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숙제지도 및 언어지도와 같은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5-5>와 같다.

<표 5-5> 독일의 RAA의 주요 언어 프로그램

사업명	대상	목적	사업내용
손잡고이끌기(Griffbereit)	1~3세	다언어교육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손잡고이끌기(Griffbereit) 배낭(Rucksack)	4~6세	다언어교육	이주민 가정 아동의 독일어 및 모국어 능력 향상
이주아동청소년지원 사업 (Formig)	이주민 가정 청소년	언어교육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함께 말하기(MitSprache)	초등학생	언어교육 및 숙제지도	언어능력 향상 및 숙제지도 프로그램
제2언어 독일어(Module Duetch als itsprache)	교사	독일어 교수법 지도	독일어 교수법 자료개발

출처: 김은정(2009)

2) 이주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독일은 1880년대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무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노령, 질병, 재해,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정책을 구축한 전형적인 사회보험형 국가이다. 독일에서 이민자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착 이민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도 대부분이 사회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독일의 공공부조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은 취업활동 여부와 국적에 관계없이 독일 국내에 거주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독일의 사회법에는 체류 외국인 생계보호, 질병 시 도움, 임신·모성 보호, 수발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내·외국인간의 차별이 존재하기는 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항상 존재한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보험 조합이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취업 노동자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즉, 결혼이주민은 독일 국민과 거의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이민자도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노동조합 가입에도 제한이 없다. 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체계도 갖춰져 있으며 이민자와 그 자녀는 상담·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민법에 의거 ‘언어 및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 대상의 사회보장제도에는 독일의 사회보장의 5부문 즉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연금, 사고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사회복지보조금, 자녀수당 및 양육수당 등을 포함한다.

4 네덜란드

가. 이주민 현황 및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네덜란드의 신규 이민자 수는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이민’으로 인해 2009년 146,400명으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나가는 이민’으로 인한 네덜란드의 인구 유출은 2009년 약간 감소했다(OECD, 2011).

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제 3국 외국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터키 출신 이민자로 92,698명이 있으며, 모로코 출신이 70,801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08년 네덜란드 시민권 취득자는 총 28,229명으로 그 중 모로코 출신이 5,034명이고, 터키 출신이 3,147명으로 2007년 시민권 취득자 수인 30,653명에 비해 약간 줄었다(Dutch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0). 네덜란드의 국제결혼비율은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결혼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Tolsma, Lubbers and Coenders, 2008).

2) 정책 형성 및 특성

현재 네덜란드 이민 정책은 EU 국가들 중 가장 엄격하다. 우파 성향의 얀 페터르발케넨더(Jan Pieter Balkenende) 총리가 집권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네덜란드는 이주민 유입을 제한하는 방향의 개혁을 단행했다. 특히 2005년 제정된 이민자 사회통합법은 네덜란드로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네덜란드어와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Bonjour, 2008).

과거 네덜란드는 이민에 대한 오랜 관용의 역사와 함께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네덜란드에서 다문화적 속성이 강화된 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이민자의 대량 유입을 배경으로 한다. 이민의 물결이 가장 거셌던 시기는 1960년대로,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터키와 모로코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량 받아 들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남아메리카의 수리남이 독립하면서 수리남 출신 이민자가 유입되었다. 즉 네덜란드는 남유럽에서 ‘이주노동자(guset workers)’를 받아들였고, 수리남으로부터 ‘해외 시민(oerseas citizens)’을 수용하였으며, 유럽과 아시아로부터는 ‘귀환자(repatriates)’를 받아들였다. ‘이민자’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실질적 이민자가 대거 입국한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그들이 정착하기를 바라지 않았으나, 결국에 그들은 네덜란드 사회에 정착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그들을 ‘알락토넨(allochtonen; people from elsewhere)’이라 부른다.

1970년대 네덜란드는 연성마약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등 진보 정책을 수용하는 진보적이고 관용적인 나라로 명성을 얻어왔다. 그와 발맞춰 네덜란드 정부는 ‘다문화주의’를 이민자 통합에 관한 공식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여, ‘이민자의 출신국 문화를 유지하는 통합(integration with preservation of one's original culture)’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이민자들에게 지방의회 투표권, 이중국적 등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약간 성격이 변화되어, 1990년대 이후 ‘동화’를 점점 더 강조하였다. 그러던 중 2004년 테오 반 고흐 암살 사건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의 느슨한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정치적으로는 확연히 보수화되는 경향과 함께 이민을 통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²¹⁾. 그 사건은 많은 네덜란드인들로 하여금 이민자가 네덜란드 사회에 기여하는지 또는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 네덜란드 이민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1년부터 외국인이 네덜란드에 체류하려면 3년 안에 네덜란드어를 마스터해야 한다. 그 기간에 네

21) 2004년 테오 반 고흐 암살 사건이후, 네덜란드에서 다문화주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우파 성향의 내각은 다문화주의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피트 하인 도너 내무부장관은 2011년 6월 네덜란드 의회에서 자신이 제출한 통합 법안을 설명하면서 “다문화사회 모델이 내포하고 있는 상대주의 자체로부터 거리를 두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즉, 그는 이민자가 네덜란드의 문화규범·가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통합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덜란드어를 배우지 못한 외국인은 더 이상의 네덜란드 정부 통합정책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민자에 대한 통합 지원을 무기한 지원하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네덜란드 유대교 랍비인 로드 삭스(Lord Sacks)는 ‘관용’과 ‘다문화주의’를 구별하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사회’라기 보다는 ‘관용적 사회’(tolerant society)라고 언급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던 나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의 취업이민을 통제하려 할 때, EU 신입 회원국으로부터 새로운 노동력 이동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네덜란드는 폴란드·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 출신 이민자의 유입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이 네덜란드의 다문화적 구성과 네덜란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3) 체류자격

매우 진보적이고 자유로웠던 1980년대와 달리, 1990년대 네덜란드 가족 이민 정책은 소득조건(income requirement), 단기체류허가 조건, 합법적 문서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점점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기독교민주당 출신 총리인 루드 루버스(Rudd Lubbers)의 ‘권리와 의무’(right and duties) 접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3년 루드 루버스 총리의 세 번째 내각이었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의 연립정부 당시에 이루어진 가족이민 정책에 대한 첫 번째 개혁에서는 ‘이민자에게 요구되는 소득 수준’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또한 네덜란드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하고 결혼할 당시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족 형성(family formation)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이민 당국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서의 합법화에 대한 조항은 1996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가나·인도·나이지리아·파키스탄·도미니카 공화국 등 이른바 ‘문제국’의 문서들은 모두 공식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94년에는 위장결혼방지법(Wet voorkoming Schijnhuwelijken); Law on the Prevention of Marriage of Convenience이 제정되어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인 경우 이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연령차, 상대방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 교제 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

것을 제출해야만 이민 절차를 받을 수 있었다. 1998년에는 네덜란드에서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입국 전에 출신국에서 단기체류허가를 우선적으로 취득해야만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취득 조건 역시 엄격히 하였다. 2000년에는 새외국인법(Foreign Law)이 만들어져, 소득 조건이 기존의 복지 수준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었다(Bonjour, 2008).

현재 적용되는 국제결혼 배우자와 동거인에 관한 체류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Bonjour, 2008).

- 결혼 및 동거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외국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됨
- 신청자(네덜란드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와 재정보증인은 가족형성의 경우 최소 21세, 가족 재결합의 경우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함
- 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은 네덜란드에 신청서가 도착한 이후부터 함께 살아야 하며, 같은 주소에 살면서 ‘공동의 가구’를 꾸려야 함
- 신청자는 ‘이민자 사회통합 시험’에 합격해야 함
- 보증인이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함

네덜란드에서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동일하다. 2004년에는 가족형성의 최소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되었고, 그 기준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이민자 사회통합법’에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이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어 구사능력과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해당 시험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시험 대비 연습문제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 출신 외국인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한국, 미국인은 단기체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민자 사회통합 시험’도 면제된다. ‘가족 재결합’의 경우, 네덜란드의 복지수준이 정하는 두 사람(결혼한 부부)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요구된다.

외국인 미성년 자녀가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부모와 재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는 18세 이하의 아동이어야 함
- 신청자는 기혼자가 아니며, 결혼한 적이 없어야 함
- 신청자는 실제로 가족의 구성원이어야 함
- 신청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살기 원하는 부모와 가족관계가 있어야 함
- 신청자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함
- 신청자는 네덜란드에 도착한 이후 부모가 함께 살아야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 신청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신국에 있는 경우 출신국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 신청자의 부모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함

한편, 합법 체류허가(1년 단위)를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계속 네덜란드에 체류한 외국인도 네덜란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 소지자하더라도 생활무능력자, 범법자, 해외거주자, 네덜란드 사회에 위협이 될 소지가 다분한 자, 영주권 신청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자 등은 영주권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네덜란드에서 영주권자는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네덜란드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과 네덜란드 국민으로 귀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그리고 네덜란드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거주한 외국인 또는 네덜란드 국민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후 3년 이상 네덜란드에서 거주한 외국인이 네덜란드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네덜란드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시민권 신청 시점에서 과거 4년 동안 5백 만 원 벌금형 이상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할 경우 원래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귀화자는 선거권·피선거권 등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는 등 기존 국민과 동등하게 일체의 권리를 누린다.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제

네덜란드의 외국인 체류와 사회통합 관련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입국 및 사증 허가를 규정하는 법률로 외국인법(Vreemdelingenwet: Aliens Act)이 있다. 둘째, 이민자 사회통합을 규율하는 이민자 사회통합법이 있다. 셋째, 국적법(Rijkswet op het Netherlanderschap)은 외국인의 국적취득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넷째, 외국인 또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외국인고용법(Aliens Employment Act)이 있다. 다섯째, 외국인고용처벌법 Administrative Penalty for Aliens Employment Act)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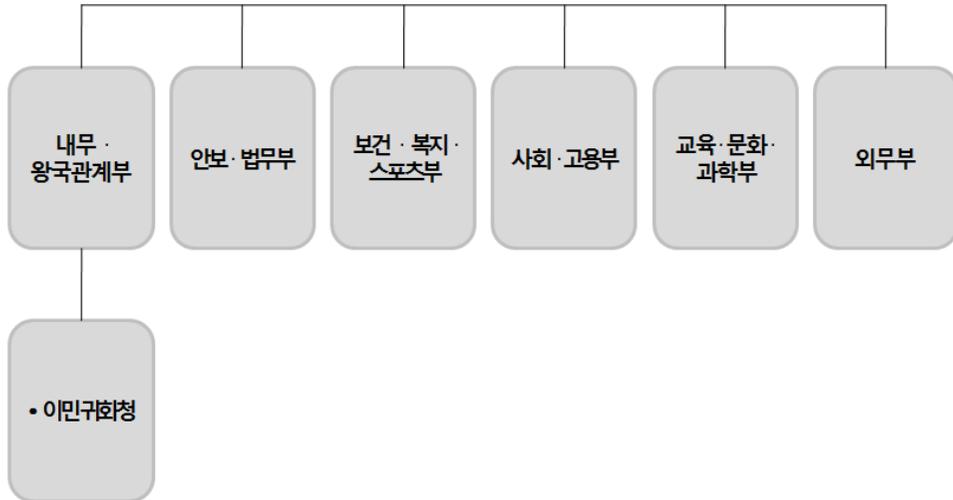
2) 추진 체계

네덜란드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내무·왕국관계부와 이민·귀화청이 안보·법무부, 보건·복지·스포츠부, 사회·고용부, 교육·문화·과학부, 외무부 등과 협조 관계를 맺으며 추진한다. 내무·왕국관계부는 이민 정책 수립 기능을 맡고 이민·귀화청은 이민 정책의 집행 기능을 맡는다.

내무·왕국관계부는 네덜란드 정부의 11개 부처 중 하나로 정책수립, 법령 마련, 정책 실행과 조정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내무·왕국관계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집행, 공공행정, 중앙정부공무원 인사관리, 헌법과 헌법기관제도, 해외영토인 쿠라사오·세인트마틴·아루바와 파트너십, 공공주택과 정부건물, 통합정책, 이민·난민정책 등을 다룬다. '내무·왕국관계장관(Minister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과 '이민·난민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and Asylum)'의 두 명의 장관이 있다. 이민·귀화청은 내무·왕국관계부의 외청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관리, 귀화 업무, 난민 수용 등을 담당한다. '이민·난민장관'을 대신하여 외국인 정책 '외국인법', '국적법'을 집행하고,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한다.

'안보·법무부'는 2010년 10월 내무·왕국관계부에서 공공 안전 업무를 인수

받은 후, 네덜란드로 입국하는 이민 규제 업무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단속 및 강제 퇴거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외무부는 외국인 사증 발급 업무, 보건·복지·스포츠부는 복지정책과 가족정책, 사회·고용부는 노동시장 정책, 교육·문화·과학부는 교육정책을 다룬다.



출처: 설동훈 외(2011)

<그림 5-7>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다. 이주민 지원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정책

1990년대 이후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민 정책에도 투영되면서,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이민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에 밀려 퇴조하였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네덜란드 내에서 무슬림 인구의 사회통합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기 시작했고, 무슬림 문화를 낙후된 문화라고 지칭한 ‘핌 포르퇴인 리스탕’이 2002년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부상하여 기독교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한 중도우파 집권 이후,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급속히 보수화되었다(설동훈 외, 2011).

2003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연구를 위한 임시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정부가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해 진지한 시도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로 시기적으로 늦었으며,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부분적으로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책 자체에 기인하기 보다는 이민자들 스스로의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현행 네덜란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한다. 2009년 SGI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에서 네덜란드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총 4등급 중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2) 시민(외국인) 대상 지원정책

네덜란드에서 결혼이민자는 네덜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 급여의 경우 영주권자나 영주가 예상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므로, 결혼이민자는 네덜란드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네덜란드의 시민 대상 주요 사회통합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정책

첫째, 공공부조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로 부가급여(Supplementary Benefit Act: TW),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부조(Disablement Assistance for Handicapped Young Persons: Wajong), 노령·부분장애 실업자를 위한 소득지원(Income Provisions for Older or Partially Disabled Unemployed Persons Act: IOAW), 노령·부분장애 실업자영자를 위한 소득지원(Income Provisions for Older or Partially Disabled Formerly Self-employed Persons Act: IOAZ), 국가지원(National Assistance Act: ABW)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는 한 해의 급여비용이 그 해에 납부된 보험료로 지급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급여는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네덜란드 사회보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주요 사회보험 종류로는 노령보험, 장애보험, 유족보험, 건강보험, 특별의료급여, 질병·출사보험, 산재·직업병보험, 실업보험과 가족급여가 있다.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아동급여가 있다.

(2) 가족정책

첫째, 네덜란드의 주요 일·가족 양립정책으로는 노동시장정책이 있다. 파트타임 노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파트타임 근로 차별금지법과 근로시간조정법 등에 근거하여 파트타임에 대한 고용보장 및 처우 개선을 하였고, 노동자의 근무시간 증감에 대한 요구권리를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하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과 근로시간조정법에 근거한 내용의 노동시간정책, 휴가정책으로 모성휴가·부성휴가·입양휴가·응급휴가·단기케어휴가·장기케어휴가 등이 있다. 하지만 휴가기간이 비교적 짧고 급여대체율이 낮아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둘째, 보육정책은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보육시간을 부모들의 근무시간과 맞추어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셋째, 생애과정에 기반을 둔 생애주기저축제도(Life-course saving scheme)는 개인의 생애계획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시간이나 돈을 저축하는 제도이다. 생애주기저축제도는 장기휴가에 관한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3) 고용정책

최근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은 언어능력향상과 네덜란드 사회·문화의 이해에 대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막대한 예산을 이민자 언어교육에 쏟고 있다. 과거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고용 특히 여성의 고용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노동시장 통합정책은 정부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노동시장 통합에 도움을 주는 언어교육 제공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네덜란드는 다른 OECD에 비해 이민자들이 취업 할 때의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 멘토링 프로그램, 회사 페어,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제한적이다(OECD, 2008).

(4) 자녀교육정책

학교에서의 인종적·사회적 차별은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두는 사항이다. 다

른 국가들에 비해 평등한 국가로 꼽히는 네덜란드에서도 차별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OECD, 2010). 소수민족 학생의 비율이 50~60%를 초과하는 경우,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급증한다.²²⁾

5 프랑스

가. 이주민 현황과 정책 특성

1) 이주민 현황

프랑스의 체류 외국인 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647만 명으로 집계되어 프랑스 총 인구의 5.8%이다(OECD, 2011). 외국인 체류자 중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은 35%이고, 제3국 출신은 65%이다. 유럽출신 중에서는 포르투갈이 가장 많고, 알제리와 모로코 출신이 그 뒤를 이었다(Fench National Contact Point of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총 영주 이민 유입량은 199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 약 4만 8천명, 1997년 약 7만 4천명, 1998년 11만 명으로 증가하다 1999년 8만 2천 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2004년까지 14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Kofman, Rogoz and Levy, 2010). 특히 이중 결혼으로 인한 입국 사례가 가장 많은데 2007년을 기준, 프랑스 국민과의 결혼으로 입국한 배우자는 36,365명으로 이는 전체 입국 사유 중 25%를 웃도는 비율로 가족재결합에 의한 입국과 체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 외 학생의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주민(유학생)이 36,916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입국이 허가되는 난민, 망명자, 건강상의 이유 순으로 프랑스 거주 신청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통계가 보여주듯 프랑스로 들어오는 이민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9년 영주 이민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가 감소하였고 그중 가족이민 건수는 약 7만8천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가 줄어들었다.

22) 네덜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한다(OECD, 2010).

감소 추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위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줄어들었고, 가족재결합 기준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2) 정책 형성 및 특성

프랑스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하나에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assimilation)’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프랑스와 공화주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동화주의정책은 초기 이주민 정책부터 최근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5년의 소요사태²³⁾를 계기로 현재 국내외로 논쟁이 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 18세기와 19세기 출산을 저하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결합한 국적법을 통해 외국인들을 유인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프랑스에 가장 많이 이주한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유럽출신으로 독일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및 벨기에 출신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유럽출신으로 독일인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및 벨기에 출신 외국인들이 기술자, 가정부 등으로 활동하며 프랑스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Schuerkens, 2005).

이런 현상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²⁴⁾까지 지속, 프랑스정부는 전쟁 이

23)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한 교외지역에서 검찰심문을 피해 달아나던 아랍계 청년들의 감전사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주민 2·3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태로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30일 동안 247개 도시에서 방화 및 건물파괴, 차량 소실 등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이다(한승준, 2008). 이 사건은 ‘평등’과 ‘통합’을 추진해오던 프랑스정부의 ‘동화주의’ 모델에 입각한 이주민 통합전략의 실패를 알리는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오랜 이주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보이지 않는 차별 및 배척, 사회적 권리에서의 소외 등이 낳은 결과로 볼 수 있다(곽원섭, 2007).

24) 1차 전쟁 시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의 협약을 통해 440,000명 정도의 이주민들을 유입, 농업 및 산업 노동자로 이들을 받아들였다. 1917년에 처음으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체류허가(Residence permit) 제도가 생겼다. 이후 1920년대에는 노동자와 더불어 정치당명을 원하는 난민들이 입국하기 시작, 1931년에 이미 외국인들이 프랑스 인구의 6.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까지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이중 많은 수가 프랑스 시민권(360,000명)을 획득하였다. 이 당시 시민권 획득을 위해서는 프랑스 체류 3년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되었으며 프랑스인과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도 본인의 출신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외국인

후 전후 복구, 노동력 부족, 감소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외국인노동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이주민 유입을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이민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가족이민자의 수 역차 변화하였다. 특히 1993년 수정 법안은 가족 재결합 접수 전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하여 그 해 이민자 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1998년 ‘개인 및 가족생활’이라는 원칙 아래 가족이민자에게 단기체류허가를 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다시 가족이민자 수가 증가하였다 (Kofman, Rogoz and Levy, 2010).

프랑스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구하는 공화주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주의이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임을 주창하는 ‘공화주의 원리’와 달리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부의 행동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프랑스 학교에서 이슬람 히잡, 유대인 스킨캡, 십자가상 및 타 종교적 상징을 금지한 것은 그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프랑스는 혁명 이념인 공화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이 지니는 개별적 정체성과 상관없이 공화주의의 기치 아래 통합되어야 하고 민족, 문화, 종교 등의 개인적 특수성을 공적 영역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의 소요 사태를 계기로 동화주의 통합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나 시민권 및 국적 취득 요건이 강화되어 2006년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²⁵⁾이 제정되면서 이주 정책에 있어서는 오히려 폐쇄적으로 전환되었다.

3) 체류자격

프랑스 정부의 이주민 정책은 이주민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프랑스가 추

에 대한 프랑스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혐오적(xenophobic)으로 이 시기 동안 프랑스 내 이주민 수는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Schuerkens, 2005).

25) 프랑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프랑스 국적취득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고, 이주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데려오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며, 10년 동안 거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구하는 하나에 가치에 동화시키기 위한 ‘동화(assimilation)’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프랑스와 공화주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동화주의모델은 초기 이주민 정책부터 최근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5년 소요사태를 기점으로 이주민 및 외국인 입국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이 더욱 폐쇄적으로 전환되었다²⁶⁾. 먼저 2006년 법률 제정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 숙련노동자 모집, 가족재결합조건의 강화, 거주 및 국적취득의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 숙련노동자 모집

새로운 법률 아래 프랑스 정부는 노동력의 수요가 있는 직종 및 지역을 파악, 이들을 위한 외국인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특히 고 숙련노동자들에게 한해 3년 동안의 체류가 가능한 ‘기술과 재주(skills and talents)’ 비자를 발급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타국과 당국의 ‘기술의 순환’을 강조, 고 숙련노동자의 프랑스 입국에 대해 ‘두뇌유출’로 우려할 수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배려로 ‘공동개발 협약(co-development agreement)’을 맺은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6년 이내 본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동의한 외국인에 한해서 발급하였다.

(2) 가족재결합조건의 강화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이주민들이 프랑스 사회의 가치체계를 존중하고 이들의 프랑스 사회로의 통합을 이끌고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와 맞서기 위한 정책의 재정비라 설명한다. 즉, 프랑스 사회의 가족에 대한 원칙 및 가치체계를 존중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민이 자신의 가족을 프랑스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이전의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그 자격요건의 일부로 본인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서류 제출도 추가되었다. 즉, 최저임금 이상의 소

26) 시민권 및 국적취득의 조건이 강화된 것 뿐 아니라 가족결합 및 프랑스 입국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졌는데 이는 2006년에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과 2007년에 제정된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볼 수 있다.

득이 있어야 하며 프랑스정부 제공의 어떤 지원도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프랑스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에 10년 체류허가 발급을 위해 2년의 취득기간이 요구되었던 것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더 나아가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를 행하는 외국인은 발견되는 즉시 비자가 취소된다.

(3) 거주 및 국적취득의 제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그동안 완화했다고 판단되는 프랑스 국적취득 조건을 강화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10년 동안 거주한 외국인에게 프랑스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했던 자동적인 합법화 제도(Chevenement 법)가 폐지되었다. 그 결과 2006년 체류허가를 신청한 약 30,000명 중 오직 7,000명만이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프랑스에 입국하는 모든 이주민들은 ‘환영 및 통합 계약(Reception and Integration Contract-CAI)’에 동의해야 하는 사회통합법(contrat d'accueil et d'integration:CAI)²⁷⁾을 적용받는다.

전반적으로 2006년의 법률 제정은 선택적 이민체제(selective migration system)로의 돌입을 예고, 보다 폐쇄적인 정책의 도입을 보여주었다²⁸⁾. 이러

27) CAI는 2005년 설립된 외국인 환영 및 이주를 위한 국가 기관(National Agency for the Reception of Foreigners and for Migration-ANAEM)에 운영, 관리된다. 초기에 계약이 자발적 성격을 띤 것에 반해 현재는 모든 입국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바뀌었으며 계약을 서명함으로써 이주민은 프랑스정부의 원칙, 법규, 가치체계를 존중하겠다는 서약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계약 서명 프로그램은 약 반나절동안 진행되며 계약에 대한 내용, 프랑스에서의 삶, 프랑스의 법 및 가치체계가 소개되며 또한 신체검사, 사회복지사와의 미팅, 프랑스 언어 평가 등이 진행된다. 이 후 하루 동안 시민권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이주민의 프랑스 언어 수준에 따라 200~400시간가량의 언어교육이 제공된다. 또한 선택적으로 '프랑스에서의 사는 것-Living in France' 수업이 하루에 걸쳐 진행된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관할구역 구청에서 가능하며 입국자와 ANAEM의 직원이 함께 이를 신청한다. 만약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체류허가 갱신이 거부되거나 10년 체류 비자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2006년 11월을 기준으로 200,000개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중 2/3이 마그레브 및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주민이었다. 85%의 계약자가 40세 미만의 성인이었으며 56%가 프랑스인과 결혼한 가족구성원으로 입국한 외국인이었다(Vaisse, 2006).

28) 이에 대한 반대집회가 프랑스 내에서 빈번히 일어났으며 실제 약 6,000명에 이르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Le Monde, 207 재인용 이민경, 2007). ‘이민·통합·난민·가족이민에 관한 제1631호 법률’은 ‘이민자의 통합 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민자는 ‘환영과 통합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는 2003년 12개 도에서 시행된 이래 2005년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계약서는 이민자가 프랑스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 언부, 남녀

한 흐름은 2007년 사르코지 정부 아래 새로운 법안으로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대한 법률’에도 반영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향후 가족, 친척과 합류하기 위해 이주를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그 혈연관계 검증을 위해 DNA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유치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증가,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억제, 불법이민 통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던 이주민 숫자가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들어섰으며 반면에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추방은 크게 증가하였다(한승준, 2008).

나. 이주민 관련 법 및 추진 체계

1) 법령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법령은 최근 2006년에 제정된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 2008년 제정된 이민통제·동화 및 망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법률로 2001년에 제정된 차별퇴치에 관한 법, 2006년 제정된 기회균등법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와 통합에 관한 법률(2006년)은 프랑스 정부가 선택적 이민체제(selective migration system)를 도입한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이주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여 가족재결합 조건의 강화, 선별적 이민의 강화, 거주 및 국적취득의 제한을 특징으로 한다. 2006년에 제정된 이민 및 사회통합법은 시민교육과 언어교육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한편, 최소한 10년 이상 프랑스에서 살았던 이주민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였던 자동적인 합법화 법안은 폐지되었다.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프랑스인과 외국인간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경우 결혼 이후 최소 3년간의 대기기간(기존에는 2년)과 충분한 언어능력을 입증해야만 10년 기간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민 및 사회통합법은 프랑스의 경제나 명예에 도움이 되는 재능이나 능력을

평등 정교분리원칙과 같은 공화국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서이다. 또한 이민자는 ‘프랑스어’와 ‘공민’ 강화를 수강해야 한다. 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민자는 프랑스 사회에 자신이 ‘잘 통합되어 있음’(well-intergrated)을 입증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이민이나 취업목적의 이민,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나 연수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둘째, 이민통제·동화 및 망명에 관한 법률(2008년)은 이민통제를 추가적인 조치를 규정하였다. 가족재결합 조건을 강화하고,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유치기간을 12일에서 30일로 늘려 불법체류를 억제하는 것이다. 법률 시행 결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이주민 숫자가 2006년에는 2.6% 감소하고, 망명허가 역시 35%가 감소하였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추방은 2005년 22,000명에서 2006년 33,000명으로 증가하였다(한승준, 2008).

셋째, 차별퇴치에 관한 법(2001년)은 고용을 포함한 차별에 대하여 시민단체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증명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998년 이후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인종차별 퇴치 협정을 체결하였고 통합과 차별 퇴치 지원기금(Funds d'Action et de Soutien pour l'integration et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FASILD)을 설치하였다.

끝으로, 기회균등법(2006년)은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소외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⁹⁾. 프랑스 정부는 2005년 소요사태 이후 동화주의 통합 정책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교육과 고용에 있어 기회균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genc de la cohesion sociale et de l'egalite des chances)를 설립하였다.

2) 추진 체계

2007년 사르코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4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었던 다문화정책이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로 단일화되었다. 이 부

29) 이 법은 청년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연소자에 대한 수습교육 기회 제공, 수습근로자의 지위 강화, 이주민 학생을 위한 교육 및 차별방지 조치 등을 규정하여 이주민 2세들이 학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이주민의 실업률이 자국민에 비하여 1.5배 이상 높고 취업에 있어서 이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이 높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비록 법률이 이주민 2세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는 이민의 흐름을 억제하고, 통합을 촉진하며, 프랑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장려한다는 4대 목표를 기치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민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별적 이주정책, 가족여부 검증을 위한 DNA 검사, 불법이민의 통제를 위한 단속쿼터제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김은정, 2009).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는 사회보장청, 연대·사회통합부, 노동·고용·보건부, 국민교육·청소년·협회활동부 등과 협력 관계를 맺으며 추진한다. 내무·해외영토·지방자치단체·이민부는 산하에 집행기관으로 ‘이민·통합청’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출처: 설동훈 외(2011)

<그림 5-8> 프랑스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추진 체계

다. 이주자 지원 정책

1) 이주민 대상 지원 정책

프랑스 정부는 교육과 취업에서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gene de la cohesion sociale et de l'egalite

des chances)를 설립하고 또한 ‘기회균등법’(loi pour l'egalite des chances)을 입법화하여 프랑스에 새롭게 이주한 이주민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차별방지 조치,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노력은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이주민의 실업률이 자국민에 비해 1.5배 이상 높다는 점, 취업에 있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높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다(Vaisse, 2006).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각종 공공, 민간기관들과 인종차별 퇴치 협정을 체결하였고 ‘통합과 차별퇴치 지원기금’(Funds d'Action et de Soutien pour l'integration et la Luttee contre les Discriminations: FASILD)을 통해 재정지원을 제공하였다. 2001년에 들어 ‘차별퇴치에 대한 법’을 제정, 고용관련 차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차별퇴치평등고용청’(Haute Autorite de Lutte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Egalite-HALDE)을 대통령 산하에 설립하였다. HALDE 담당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인종차별금지에 관련된 업무와 평등의 실현 및 신장을 위한 업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인종차별사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하며 이를 기초로 관련 법률 제정을 제안하거나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곽원섭, 2007). 2006년에 제정된 기회균등법은 고용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청년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소자에 대한 견습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나이 상한을 14세로 낮추어 이주민 2세들이 일찍부터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젊은 이주민(young immigrant)들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다(한승준, 2008).

2) 이주민 사회보장제도

(1) 이주민 사회보장 제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혜택을 이주민에게도 보장한다. 하지만 이주민에게 있어 합법적 체류라는 조건과 세부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대부분이다(Schuerkens, 2005).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의 경우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등 직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본 국에서 치료가 어려워 프랑스에서의 의료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불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수당이 주어지기도 한다(곽원섭, 2007). EU 및 EEA 출신의 외국인인 경우 출신국의 사회보장체계에 가입된 경우, 프랑스 거주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회원국 출신 외국인인 경우 장기체류허가를 가진 자에 한해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진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는 여러 종류의 제도(regime)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에게 해당되며 프랑스 인구 80%가 적용되는 일반형식(general schemeregime generale), 비농업계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자치형식(autonomous scheme-regimes autonomes), 농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농업형식(agricultural scheme- regimes agricoles), 그리고 공무원 등에게 해당되는 특별형식(special scheme-reegimes speciaux)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일반형식 사회보장에 해당되며 이는 연금, 유족연금, 실업보험, 장애인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 수당 등을 포함된다. 고용을 통해 보험 가입이 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위 보험에 동시 가입이 된다. 일반형식 보험의 경우 세금(CSG and CRSD)과 기여금액으로 운영되며 기여금은 대부분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며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의 7.5%를 CSG 명목으로 납부하며 0.5%를 CRSD로 납부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험지원제도 (Aide Medicale de l'Etat - AME)를 운영하는데 그 대상 및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ME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기초 의료보험제도로 최소 3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일정 소득제한을 넘지 않는 자에 한해 제공된다.
- 신청은 거주관할지역 기관에서 하며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본, 거주증명서(주소가 기재된 공과금 등), 12개월 동안의 소득증명서 등이 있으며 승인 시 1년 동안의 의료보험이 제공된다.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프랑스의 교육 정책은 이주민 통합을 위한 강력한 통합전략이다(한승준, 2007). 프랑스 정부는 증가하는 이주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프랑스 사회로의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교육제도에 있어 인종·종교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등의 원칙을 채택, 공교육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히 ‘평등’원칙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은 보통의무무상교육의 프랑스 교육 제도 하에 프랑스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새로운 이주민 아동을 포함, 이주민 가정 출신의 아동들의 학업 수준 및 교육 수준은 프랑스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난다. 예로 15세 아동의 수학, 언어 및 학업수준을 비교한 국제 PISA 연구 결과, 이주민 가정의 15세 아동들이 프랑스인 가정의 아동들보다 약 70-80점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aisse, 2006). 이런 교육성파에서 오는 집단 간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81년에 프랑스 정부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교육지대(Priority Education Zone-ZEP)를 마련했다. 이는 ‘덜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Vaisse, 2006; Choo, 2008).

첫째, 저소득층, 낮은 졸업률, 높은 외국인 인구 비율, 높은 실업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인구들이 집중해서 거주하는 지역을 ZEP으로 선정, 선정된 지역 공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둘째, 모든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언어 습득 및 숙달에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만 3세부터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기교육을 장려한다. 넷째, 생활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해 교사 교류, 보충수업, 상급학교 방문, 안내책자 배부 등 상급학교로의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우선교육망을 설치, 우선교육의 실행 경험과 방법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이를 위한 학군별 자료관을 설치 담당자들을 지원한다.

ZEP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이주민 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실행된 프로그램은 아니다. 하지만 1994년에 이미 ZEP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가정의 아동이 총 이용자의 30%를 웃돈다는 점과 ZEP 지역이 이주민 집중지역과 중첩된다는 사실은 프랑스의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인구집단이 이주

민가정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런 우선지역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2006년에는 Rueseau ambition reussite(RAR)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RAR은 ZEP 중 가장 고위험군 지역을 선택, 이 지역들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1,000명 이상의 경력 교사들과 3,000명 이상의 교육학 조교(pedagogical assistants)를 지원하고 있다 (Vaisse, 2006).

프랑스 정부는 또한 1965년부터 1984년까지 프랑스 전국에 ‘이주민 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정보센터’(Centres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CEFISEM)을 세워 초등학교 내에는 통합반, 중학교 과정에는 적응반을 설치 및 운영하였다. 이는 2002년 ‘이민자와 비정착 주민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센터’(Centre academique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enaf) et des enfants du voyage)로 대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은정, 2009).

- 이주 가정을 위한 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
-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
- 지역 교사들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와 같이 CASNAV 프로그램은 이주민 가정 아동들의 빠른 프랑스어 습득 및 학교 적응과 교사들 및 일반인 대상의 교육을 통해 이들 아동들의 프랑스 문화 이해 및 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둔다. 2007년을 기준으로 파리 내 CASNAV은 20개 구 중 15개 구에 초등학교 통합반이 개설 및 운영되고 있으며 총 604명의 아동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2009).

3) 외국의 미등록외국인(불법·단기체류자) 사회복지지원 사례

(1) 미등록외국인 의료보장제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보장혜택을 이주민에게도 보장한다. 하지만 이주민에게 있어 합법적 체류라는 조건과 세부적으로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대부분이다(Schuerkens, 2005).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주민의 경우 프랑스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등 직무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본 국에서 치료가 어려워 프랑스에서의 의료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불법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일부 수당이 주어지기도 한다(곽원섭, 2007).

특히, 프랑스에서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험지원제도 (Aide Medicale de l'Etat - AME)를 운영하고 있다. AME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의 100% 무상 치료를 보장하는 국가 의료지원제도로 2000년 1월 1일 도입되어 그 전까지 도별로 관리되었던 미등록 이주자들을 위한 무상 의료지원 장치를 대체하였다. AME로 보상되는 항목으로는 개별 의사에 의한 진단비, 병원에서의 진단이나 의료시술비, 약국에서의 의약비, 각종 의료검사, 치과치료, 임신 중절 등이다. AME 주요 혜택자는 보완적 보편 의료보험(CMU complémentaire)의 1인 연간 수입 한도액 7447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며, 프랑스 거주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인 미등록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경우에 한해 무상 응급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현 의료보장제도는 행정적, 경제적 자격과 상관없이 극빈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의 무상 진료 지원이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치료받아야 한다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의료보험지원제도의 그 대상 및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 AME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기초 의료보험제도로 최소 3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가구소득이 일정 소득제한을 넘지 않는 자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경우에 한해 무상 응급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거주관할지역 기관에서 하며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본, 거주증명서(주소가 기재된 공과금 등), 12개월 동안의 소득증명서 등이 있으며 승인 시 1년 동안의 의료보험이 제공된다.

한편, 프랑스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면 제 발로 경

찰의 불법이민자 관리 부서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매당 30~40만 원 정도의 거주 수당을 1년 동안 지불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시행은 미등록외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혼란에 의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는 외국인 이민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상과피에’(서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체류 허가 심사를 통해 14만 명 중 7만 7천여 명은 국내 체류를 양성화했으나 6만3천여 명에 대해서는 체류허가를 거부했다. 심사의 기준에도 인권이 적용됐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과 노약자가 우선됐다(노재철, 2010).

(2)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건강권 보장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모든 아동이 사회적 출신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동 협약에 비준한 호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방법 개정이나 조례 지정을 통해 그들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교육권, 의료보호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11월 동 협약에 비준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차별 없이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건당국은 국내 불법 체류 아동의 건강권을 방치해 왔다. 이에 2003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인 아동과 동등한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불법체류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8월 17일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아, 국내 거주 18세 미만 불법 체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하여 기본적인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6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현행 법령

국내 체류 이주민을 지원해야 할 필요는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최고의 가치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권리는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에 속하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민이나 외국인노동자, 난민을 지원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주아동에 관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후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주민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의 정당성의 근거로 헌법상 기본원리인 복지국가원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복지국가란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국가를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거³⁰⁾로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를 인용하고 있다. 복지국가원리는 국가의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에 관해서 헌법적 윤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전광석, 2009). 그만큼 복지국가원리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응하는 입법적 권한에 그 실현이 맡겨져 있다. 어떠한 입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적극적인 국가 개입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가 입법자에게 있는 것이다. 입법자들은 헌법상 가치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활배려(Daseilsvorsorge)³¹⁾를 위한 복지행정에 관한 입법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종래와 같은 개인의 자유방임, 불간섭의 원리와는 결별하고 국가가 사회형성의 적극적인 목적을 부여받고 이를

30)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31) 생활배려(Daseilsvorsorge)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급부 행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생활배려라는 말은 Forststoff 교수가 고권적인 침해행정으로부터 대비되는 급부행정을 그 구조적인 특성과 의미 속에서 서술코자 발전시킨 개념이다.

위하여 행위 하는 인권보장의 임무를 가진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원리상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배려하는 급부를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 의료 보장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회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생활배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된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지점은 복지국가가 과연 ‘국민’에게만 그러한 사회복지지원서비스를 하면 그 헌법적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첫째, ‘국민’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원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적 배경 소개 둘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민이 아닌 주민으로서의 이주민에게 사회복지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증 셋째, 관련 개별 법령 소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지원의 법적 근거

가. 헌법적 근거

1) 사회적 기본권위 주체로서의 이주민

(1)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구분의 오류

대한민국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은 제10조에서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이 전체적으로 권리(제10조 이하 제37조)와 의무(제38조, 제39조)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데 권리 관련 규정의 구조는 법문 상 명백히 파악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관한 종래의 구분은 헌법상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주로 국민들의 대국가적 투쟁관계에 있어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국민들이 확보하고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불간섭이라는 국가로부

터의 자유의 규범내용을 구체화 및 확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본권은 그 유래가 오래되지 않은 현대복지국가에 와서 성립된 것으로써 사회국가적 간섭과 생존배려 및 국가의 적극적 형성에 의하여 그 규범내용이 구체화된다는 점 등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으로 남아 있다(정극원, 2011).”

양자 간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첫째, 이념적 기초에 있어서 자유권은 근대입헌주의를 사회권은 현대복지주의에 기초한다. 둘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자유권은 소극적 성격의 권리이지만 사회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셋째, 권리의 주체에 있어서 자유권은 자연인인 국민 및 외국인이지만 사회권은 국민만이 누린다. 넷째, 기본권의 효력에 있어서 자유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지만 사회권은 주로 입법형성권을 구속한다. 다섯째, 기본권제한과 법률유보에 있어서도 자유권은 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이지만 사회권은 기본권형성적(기본권구체화적) 법률유보라는 점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성낙인, 2011).

위와 같은 구분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교육권(헌법 제31조), 근로권(제32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가족권·보건권(제36조)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좁은 의미의 국민 즉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한정되며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구분은 현실적이지 않다. 우선 기본권의 중점이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옮겨지고 있는 오늘날 자유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기본권의 분류는 시대의 요청에 맞지 않게 되었다(허영, 2007).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권의 문제가 결국은 세금의 사용문제’라고 본다면, 국민에 비해 세금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지는 이주민에게도 똑같이 사회권의 향유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김종보, 2008). 그러나 얼핏 강력해 보이는 이 반대논거도 같은 국민 내에서도 세금의 부담 정도와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상호 비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분배정의의 실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본권의 보편성을 원리로 삼는 재인식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출발점은 인간에 내지 동료애라고 할 수 있다. 즉 같

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인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대 이념 이외에 제3의 이념으로 주장되었던 ‘박애’로 구체화 되었다(장영수, 2009). 사회적 정의로서의 박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을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 형성되면서 사회국가원리가 국가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중의 양자택일을 포기하고 양자의 공존을 시도한 것으로도 평가된다(장영수, 2009).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이러한 사회국가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규정한 이래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을 크게 보충·확대하였으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의 헌법으로 나아가 국제적 인권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국민국가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자유권 중심의 가치관에서도 분배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은 맥락에서 재분배를 위한 중앙권력의 노력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범위가 국경 내에 머무는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이 오늘날 통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재분배에 관한 고전적 원리에도 이제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경계에 기초한 사회보장의 수급이 아니라 국적이나 지역적 기준과는 상관없이 기회에의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 기본권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이다(Somek, 2012).

(2)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통합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 아동이나 무능력성년 등을 위한 복지를 주장하고 그 구체적 수단을 논의할 때에 당사자 본인의 관점, 즉 개인주의적 관점에서만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과 복지(welfare)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가치의 기본이 복지의 최선의 수단과 해결책은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찾아질 수 있으며 그 원리는 주관적 권리의 보장 외에도 국가와 사회의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타주의적 덕목을 포함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Jonathan and Charles, 2012).

이민사회로의 세계적 추세는 각국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이민 특히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주민에 대한 대중의식에 관한 사회적 통계를 활용하여 독일과 이스라엘 등에서의 이주민의 권리문제를 다룬 최근의 한 연구(Raijman, 2003)에 따르면, 이주민의 평등권에 대한 대중의식은 사회와 계층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보다는 이스라엘에서 반이민감정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차이점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두 나라 모두에서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 조사계층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독일의 경우,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지지는 조사계층의 수입수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정비례), 우익적 성향(반비례), 동독지역에의 거주 여부(부정적)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대중의식 속에 이민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경향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주민의 사회권 인정 여부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법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심리적 요소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사회보장정책의 입안자는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인해 막연히 형성된 대중의 심리적 불안과 여론에 좌우되기보다는 국민 국가적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인적 범위를 논하기를 지양하여 국적을 초월한 사회권의 보편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Beutin and Ricklef, 2007).

2) 헌법 제6조 제2항의 재해석

대한민국헌법상 ‘외국인’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유일한 조항은 제6조 제2항이다. 즉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할 때에는 국내법상 외국인의 지위는 상호주의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의 외국인의 지위는 그 외국인의 출신국과 대한민국 간에 맺어진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의 지위는 상대성을

따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외국인의 지위 보장은 조약을 포함한 일반국제법에 의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 는바 정부는 외국인의 지위 보장에 있어 외국과 체결한 조약에 의해서 상호 주의적·상대적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원리에 있어서 일반국제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예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국제법규

1)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1919년 창설 초기부터 이민은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국제노동기구 헌장 전문에서 ‘타국에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의 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1919년 국제노동컨퍼런스(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서 채택된 권고에 반영된 두 가지 주된 목적으로 첫째,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의 평등한 대우³²⁾, 둘째, 국가 간 이민 정책의 조율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일반국제법으로 승인하고 있는 이상 그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바 이주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는 이주노동자의 근로 권의 평등한 보장뿐만 아니라 그의 복지를 위한 갖가지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그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32) “In this regard, four Conventions and two Recommendations have been adopted, namely the Equality of Treatment (Accident Compensation) Convention, 1925 (No 19) and Recommendation, 1925 (No 25); the Maintenance of Migrants' Pension Rights Convention, 1935 (No 48); the Equality of Treatment (Social Security) Convention, 1962 (No 118);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ecurity Rights Convention, 1982 (No 157) and Recommendation, 1983 (No 167).”

2) 국제연합(UN)의 이주노동자협약

1990년 국제연합의 이주노동자협약(Migrant Workers Convention) 채택 이후 국제노동기구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2003년 7월 1일 발효, 현재 35 개국이 비준했으며 28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협약의 네 가지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통합한다.
- 다른 기구들을 보완한다.
- 이주 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차별적인 지위를 개선한다.
- 정당하지 못한 거래를 감소시킨다.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권에 대한 국제규준들의 접근방식은 상호 유사하다. 즉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 원칙과 일반적 지침 등에 대한 확인과 유지는 보편적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처럼 복잡다단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은 당사국 간의 조약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이다.

3) 국제이주민권리장전

위와 같은 일반국제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규정 자체가 구체적이 라기보다는 선언적 차원에 머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국제법만으로는 이주민의 권리 보장에 있어 각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지는지 한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국제이주민권리장전은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정한 조약이나 일반국제법은 아니지만 향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같은 문제의식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 참고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국제이주민권리장전(International Migrants Bill of Rights, 이하 IMBR)은 카이로 미국대학교, 조지타운대학교 법센터, 예루살렘 헤브루대학교 등에서 2

년 간의 공동연구 끝에 내놓은 결과이다. IMBR에는 이주민의 각종 권리 보호에 관한 기존의 모든 국제법(조약, 관습국제법, 각국의 관행 및 실무 등 포함)을 참고하여 얻은 제안들이 담겨 있다(Neuman, 2010).

IMBR은 기존 법제에 존재하는 이념과 실제 간의 괴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명쾌히 또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단일한 법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고민을 담고 있다.

::ARTICLE 11: ECONOMIC AND SOCIAL RIGHTS

- (1) Migrants shall be entitled to emergency medical care and to disaster relief.
- (2) Mothers shall,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be accorded special protection during a reasonable period before and after childbirth.
- (3) Migrants shall be provided access to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and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including food, clothing, and housing.
- (4) Migrants shall not, based solely on their status as migrants, be denied the benefits of any social welfare or insurance program to which they have contributed.

::ARTICLE 13: LABOR RIGHTS

- (1) A migrant shall never be subject to servitude, slavery, or forced labor. A migrant' right to work and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shall only be restricted pursuant to a legitimate aim, when the restriction has an objective justification, and when reasonable proportionality exists between the means employed and the aims sought to be realized.
- (2) A migrant has the right to be remunerated at a just and

favorable level for his or her work. Migrants must be informed of working conditions, labor laws, and means of seeking assistance and legal support in the receiving State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 (3) States may not arbitrarily change or terminate a work permit.
- (4) A migrant shall be protected by laws respecting, *inter alia*, minimum wages, minimum working age, maximum hours,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and the rights to join trade unions, to organize, or to take part in collective bargaining.
- (5) States must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migrants from being compelled or induced to accept conditions of work below standards mandated by national law. States must prohibit employers or employees from privately contracting for worse conditions of work than those mandated by national law.
- (6) States shall seek to identify, eliminate, and provide remedies for abusive labor conditions, with special attention to labor agreements that bind migrants to particular employers. States should establish effectiv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se rights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rights are ensured.
- (7) Migrants have the right to claim these rights and receive remedies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ARTICLE 17: EDUCATION

- (1) On the basis of equality of treatment with nationals, children of migrants have the right to education. States

should make primary education free and compulsory for children of migrants. Stat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econdary education and make it accessible to migrants and their children without discrimination.

::ARTICLE 18: FAMILY RIGHTS

- (1) Migrant families are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irrespective of the citizenship status of any member of the family.
- (2) For the purposes of this Declaration, the term “members of the family” refers to persons married to migrants or having with them a relationship that, according to applicable law, produces effects equivalent to marriage, as well as their dependent children and other dependent persons who are recognized as or are the substantial equivalent to members of the family according to applicable legislation or applicable agreements between the States concerned.
- (3) Stat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of migrant family members with nationals or citizens. Children with no effective nationality have the right to return to their parents’ country of origin and to stay indefinitely with their parents regardless of the children’s citizenship.
- (4) Dependent family members of migrants have a right to derivative immigration status and timely admission to the country in which a migrant is lawfully settled.
- (5) States should consider extending derivative immigration status to non-dependent family members of lawfully settled migrants.

::ARTICLE 19: ADDITIONAL CLAUSES

- (1) Nothing in this Declara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that limits, intrudes on, or interferes with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rights of others.
- (2) Governmental, administrative, and other bodies charged with enforce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hould invoke this Declaration as appropriate in the recognition and development of principles, standards, and remedies.

4) 상호주의의 문제점

(1) 상호주의의 관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주의는 다른 나라와의 국제협약 체결을 유도하여 사회보장의 국제화에 적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전광석, 2012). 우리나라의 법은 상호주의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제사회보장법의 중요한 기능인 준거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은 개별 실정법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2) 외국의 사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인에게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발현되는 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재판소(EGH)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프랑스의 해당 법률이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전광석, 2012). 이러한 판결의 영향을 받아 독일의 ‘범죄피해자보상법’과 같은 경우는 1993년 개정되어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여 심지어는 여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재량에 의해 보상을 하는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3) 상호주의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상호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국적에 의한 차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적 타당성이 없는바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전광석, 2012).

우선 상호주의에 의한 정책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하는 객체는 국가 자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의 결과 실제로는 개인의 사회보장 법적 지위가 희생된다. 이는 개인이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 또한 상호주의는 사회정책적인 이유에서도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 상호주의는 해당 외국이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장제도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실현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여 있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국민은 외국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상호주의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물론 상호주의는 국제법적으로 보호대상으로 여겨지는 무국적자의 경우 아예 그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이러한 상호주의의 문제점은 더욱 부각된다.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외국인에게도 적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태도가 발전된 입법태도일 것이다.

외국과의 협상 체결을 유도한다는 상호주의의 의도는 굳이 상호주의를 우리 법의 기본태도로 취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의 상호주의 원칙에 대하여 이를 폐기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자치시대와 ‘주민’으로서의 이주민

우리 헌법은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복리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현실의 복지행정에서도 중앙정부의 복지지원체계가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분석과 ‘주민’의 개념 설정은 사회복지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본 실태조사 연구가 지방자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에서는 그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한다. 추후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통치 작용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행정의 지역적 범위로서의 ‘특정구역’ 과 인적 요소로서의 특정구역 내의 ‘주민’을 그 필수요소로 하여, 자치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주체이다(홍정선, 2009; 류지태·박종수, 2009; 김철용, 2009).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인적 요소임은 물론, 주민참여의 주체가 된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의 존립목적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로 가진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12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요소로서 주민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요소로서의 주민은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이러한 지

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은 자연인·법인 모두 내국인·외국인임을 묻지 않으며 연령 등을 불문하는 개념이다(홍정선, 2009). 즉 주민의 개념과 국적과는 분리가능성이 인정된다.

2) 주민의 요건

(1) '주민의 요건'의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 인적 요소라는 점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민의 요건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사무의 객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현행 법령 상 주민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인 주민의 요건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동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소'의 존재유무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사무 수행의 목적 내지 귀속주체로서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 규정과 동시에, 주민이 가지는 각종 권리의 주체로서의 주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한 규정에 해당된다.

② '주소'를 가진 자에서의 '주소' 판단기준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소' 판단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학설은 공법상 주소의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민법상 주소에 관한 규정은 법기술적 개념 규정이므로 공법관계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요건인 '주소'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하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인가의 판단은 법률관계의 개별적·구체적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구병삭, 1991).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

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되는 문제는 공법상의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판단기준으로써의 주소란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의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홍정선, 2009).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와 공법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주민의 사법관계와 관련하여 주소의 결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주소규정에 따라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인가를 기준으로 주소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민법 제18조 제1항). 이러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의 주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계속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족하고 거주하는 자의 의사는 주소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법관계와 관련하여서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지가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지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소'의 결정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인 주민의 요건에 해당되는 '주소'라는 것은 자치행정과 관련된 주민의 공법상 권리의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주소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편적인 태도이다.

③ 이주민과 관련된 주민 결정기준의 문제점

국내 체류 이주민의 주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의 주민등록'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는 일의적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동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규정에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의 주체로 하고 있음을 보아서 명백하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의 논의가 주로 '주민등록의 여부'를 주된 요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건대 현재 '외국인등록법'상 주소에 관한 규정 없이 단지 '체류'라는 요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해석상 모호함을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도 주소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법에도 외국인의 주민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명백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 국

민이 주민인 경우에도 주민의 요건을 해석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더욱 명백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독일의 입법례

독일 각주의 지방자치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주민(Einwohner)과 주민 중 유권자로서의 시민(Bürger)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³³⁾ 그리고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써의 ‘거주’의 개념은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신고법(Meldegesetz) 등의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권자로서의 시민의 요건은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³⁴⁾ 지방선거법(Kommunalwahlgesetz)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³⁵⁾이 일반적이다.

⑤ 일본의 입법례

市·町·村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당해 市·町·村과 이를 포함하는 都·道·府·縣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여,³⁶⁾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여부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의 지위에 관한 기록을 정확하게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³⁷⁾, 이에 따라 주민기본대장법이 제정되었다. 주민기본대장법은 동법상의 주소가 지방자치법의 주민규정에서 말하는 주소에 해당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³⁸⁾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선거권자로서의 주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선거권자로서의 주민을 개별 주민참여 규정에서의 주민참여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33) Nordrhein-Westfalen 게마인데법 제21조, Baden-Württemberg 게마인데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Freistaat Bayren 게마인데법 제15조 등

34) Baden-Württemberg 게마인데법 제12조 제2항 등

35) Nordrhein-Westfalen 지방선거법 제7조, Freistaat Bayren 지방선거법 등

36) 일본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37) 일본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38)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제4조

3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와 관련된 현행법령

가. 기본법령

우리나라는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을 위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과 이주민의 보건의료권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직접 이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정비해 두고 있다.

우선 기본법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기본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이주민과 관련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같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이다.³⁹⁾⁴⁰⁾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난민을 위해서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난민법이 있다.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도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많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기에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이러한 태도의 문제점은 후술한다. 아래에는 우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등 현행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39) 2012년 10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따르면 ‘다문화’로 검색되는 조례가 168건, ‘외국인 지원’으로 검색되는 조례가 82건에 이른다. ‘외국인’으로 검색할 경우 외국인토지법 위반 관련 조례, 외국인학교지원 조례, 외국인 투자 촉진 조례 등 다양한 조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총 291건에 이른다.

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는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제정)은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및 외국인 관련 정책의 기본법 구실을 하고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동법 제4조는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⁴¹⁾ 그러므로 이 법은 외국인 처우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이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첫째, ‘재한외국인’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둘째,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셋째,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규정한다.

제2장(제5조-제9조)에서는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3장에서는 인권옹호·사회적응·영주권자·난민·전문외국인력 등에 관한 처우 규정을 둔다. 제4장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인의 날에 대한 규정을 둔다.

특히 이 법은 2010년 개정에서 제12조의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조항을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존재해 왔던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제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41) 해당법이 기본법임을 명시한 대표적인 예로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다. 기본법이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관련 법령은 그 기본법의 이념과 내용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기본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다문화 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3조의 2)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한다(동법 제3조의 4).

구체적으로는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 보육,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개정(2012년 2월 1일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3) 이주민 지원 조례

이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어져 세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안산의 경우 외국인 밀집 현상이 일찌감치 생겨났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도 배제하지 않는 획기적인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조례는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조례를 중심으로 만들

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모범으로 삼아 만들었기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

나. 개별 사회복지지원 체계별 이주민 관련 법령

1) 긴급복지지원

(1)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12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위기 발생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여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함에 따라 실질적인 빈곤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제한적인 생계지원 기준 및 지원기간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⁴²⁾

(2) 이주민과 긴급복지지원법

외국인에 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42) 2012.10.22 법률 제11512호로 개정되어 2013.1.23.에 시행 예정인 긴급복지지원법은 기존의 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제2조제1호).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주거관란의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거지원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 긴급지원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폐지함(제11조제2항 삭제).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9년에 만들어진 본 조항에 의해 이주민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폭넓은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신설된 4호와 5호의 경우 포괄적 규정을 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넓힌 조항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혼인과 가족을 중시하고 있는 관계로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법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결혼 및 가족 중심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보건의료권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그 적용대상으로서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를 통해 일정한 경우에 이주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먼저 제1항에서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라 해서 모두 이주민인 것은 아니므로 제109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건강보험에 따라서는 정부 간 합의에 따른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상호주의의 문제점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이주민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직장가입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우리나라의 법은 외국 국적자를 일반적 의미에서의 이주민과 한국의 민족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의미에서의 재외국민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이주민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1) 외국인등록을 한 자(출입국관리법 제31조⁴³⁾)이거나, (2) 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⁴⁴⁾)인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
- 43)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 44)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지역가입자(시행령 제76조 제2항)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또는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 중에서 (1) 외국인등록을 하고(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61조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등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③ 건강보험의 적용이 자동 배제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시행령 제76조 제4항)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1) 체류기간연장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등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자동 배제된다.

④ 직장가입자로서의 적용이 임의 배제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시행령 제76조 제5항)

직장가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라 할지라도 그가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건강보험제도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와 같이 위기상황으로 인해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 때에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제4조, 제5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인도적 차원에서의 피난구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라 본다면 그 지원대상은 국적이나 기타 신분을 불문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긴급복지지원법은 그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국민에 한정하고, 이주민에 대하여는 2009년 5월 28일에 이르러서야 ‘특례’를 신설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제5조의2).

‘제한적’이라 함은 위 특례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피난구조의 대상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시행령 제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의료법 및 약사법

① 의료법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면허화함으로써 대중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제도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것도 환자유치활동이 자칫 영리사업에 연계되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해칠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환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이주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이주민 환자로서는 (위에서 보았다시피) 우선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얼핏 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이 당면하기 쉬운 재정적 곤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예외조항이 관심을 두는 것은 경제적 약자로서의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아니라 이른바 의료관광의 능력이 있는 또 다른 부류의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지의 사실이란 점이다.⁴⁵⁾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1) 한편으로는 정규체류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등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정규화를 유인하면서, (2)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의료관광의 능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그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유치하기 위한 영리행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 허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관심에서 볼 때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② 약사법

이러한 문제점은 약사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는 의

45) 2008년 10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의 법 제27조 제3항의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편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2009.1.30. 개정. 2008년 9월 23일 국가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1월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에서 광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

약분업의 원칙 위 제1항에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로서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제1호) 등을 예시하고 기타 경우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 허용의 경우로 위에서 본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영리목적으로 유치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다(약사법시행령 제23조 제7호).

결국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의료법 및 약사법 상의 예외조항들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한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고가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지녀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이념을 망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4) 이주민 보건의료권의 정당성

의학적 관점에서는 환자 개인의 건강이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출입국관리 차원에서 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나눈 다음 사회보장예의 접근권에 차등을 두는 것도 이러한 개별적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겠다(Ockert, 2007). 그런데 이주민의 보건의료권에 대한 고찰은 개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ana, 2008).

공공보건(public health)이란 ‘환경위생, 공동체 방역, 위생원칙에 대한 개인교육 및 질병의 초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간호서비스의 조직 등을 위하여 공동체조직을 통해 질병예방, 수명연장, 신체적 건강과 효율의 증진 등을 연구하는 학문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의 보건의료권을 생각해 본다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보건의료권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와 더불어 전염병의 확산에는 이제 국경이 방어벽이 될 수 없음을 최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종전의 국민국가적 정책으로부터 관점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국민국가적 견지에서 자국민 위주의 공공보건을 지키기 위해 이주민의 지병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균자 이주민을 강제 출국시키

는 방편이 취해지곤 했다. 2007년 5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HIV 항체양성반응을 보인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 출국을 명령했던 일이 있는데,⁴⁶⁾ 이러한 시도의 배경에는 바로 위와 같은 국민국가적 견지의 공공보건 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바 전염병의 확산에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의 맥락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국민의 공공보건을 지킬 수 없음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권의 정상적 향유를 위한 적절한 재정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국민의 공공보건을 위한 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⁴⁷⁾.

3) 교육권

(1)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은 국가가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인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 교육

46)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다음 해 4월 16일 원고승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 (2008.4.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12612 (2008년 11월 6일 항소기각); 대법원 2008두21683 (2009년 1월 22일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서울행정법원 원심에서 변론종결(2008.2.27.)이 있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이 국제인권기준을 위배하고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소지가 많고, 국내에서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으며 원고를 우리나라 밖으로 강제적으로 퇴거시킴으로써 원고에게 [...] 최대한의 침해를 초래함으로써”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조치”로서 원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호, 원고 허○○,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의견제출’, 2008년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견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차별 문제에 대해 매우 진일보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결정문(19면)에서 법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차별을 조장하는 편견의 시정과 인권감수성의 제고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의 전진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47)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신분에서 있다가 나중에 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 해당인에 대해 검진을 하여 뒤늦게 질병 여부를 알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목표와 내용이 현재의 법제에서처럼 그들을 언제까지나 이주민으로 바라보고 대우하는 자세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되고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전제하고 그 교육내용은 물론 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저 교육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Holly, 1996). 따라서 이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 권의 보장은 의무교육 단계(48)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주민 자녀를 위해 보장되는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에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에게 보장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배려로써 결정되고 프로그램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유럽 국가도 이민국가로의 경향이 두드러지던 1970년대에 외국 출신 이주민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원칙대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분명 초등교육에서보다 중등교육을 받는 이주민 자녀의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양자 간에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데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Carlos, 1979).

혹자는 예를 들어 러시아 출신 이주민의 자녀가 일본 출신 자녀보다 희망 교육수준이 낮은 것이 통계가 보여 주는 바이므로 모든 외국 출신 이주민의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Adam and Eric, 2009). 그런데 상기해야 할 점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은 개별적 처우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평등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화교, 러시아, 일본 및 그 외의 어떤 출신국 또는 출신민족이든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은 헌법이 국가기관에게 부여한 의무이다.

이민사회가 당면하고 또 당면할 수 있는 사회갈등은 사회의 통합적 요소를 강화할 때에 지속가능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다(Philip, 2007).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이민국가는 건설이나 단순노동직 근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미숙련 노동자 또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의 이주를 장려하고 받아들였고 이것이 한 세대가 지난 지금 기존의 이민국가에서 갖가지 사회갈등을 야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이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들을 적재적소에 고용하지 않는 한 구조

48) 초·중등교육법 제12조,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다른 한편 인도에서처럼 IT산업 분야에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이주를 장려하는 식의 선택적 이민도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없음도 현재 목격하고 있는 바이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이민 정책은 이주민과 그 2세대의 사회통합을 얼마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는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 때 교육이 내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함과 마찬가지로 내국인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을 위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시민단체가 보는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법적 문제

::시민단체 참석자

	성별	연령대	전문 분야
A	남	40대	외국인노동자
B	남	40대	난민
C	남	30대	이주아동

가. 경제적 지원

1) 외국인노동자

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긴급복지 지원의 수혜자격이 있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긴급복지 수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인도적 차원에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까지 긴급복지 수혜자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등록외국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미등록자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대상자체, 고려자체가 안돼요.”(A)

2) 난민

난민 인정자는 입법 예고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난민 인정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주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국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거부감이 커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난민 인정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현실적 조건의 개정이 필요하다.

“3년 전에 수정 작업할 때 요청을 해서 들어갔어요. 하지만 실제적인 혜택을 본 사람은 아직 없어요.”(B)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클 거예요. 난민은 협약에도 동국 국민들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복지서비스의 의무는 있지만 국민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크겠죠.”(B)

나. 건강 지원

1)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비싼 보험료의 문제로 가입을 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시 보험료 계산 시점이 입국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어 과도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는 물론 난민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난민의 보험료와 보험료 계산시점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들도 그렇고 지역보험은 가입할 수 있지만 보통은 되게 비싸죠. 보험료가 월 7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유학생이나 동포가 입국했다고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3개월이 지나야 돼요.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야 되고 당장 몇 십만 원이 되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못하고, 건강보험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년, 2년 지났다가 정말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입국 시부터 소급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서 다 납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활실태조사에 사회복지 직원도 체계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비자가 있건 없건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거죠.”(A)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만 많은 비용이 필요한 입원, 수술 등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경우 외국인노동자협회나 사회복지관 등의 민간단체가 병원을 연계해서 일회성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안한 생활에서 안정적 도움이 절실한 체류 외국인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일회성 도움이 아닌 의료보장제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나 이런 부분은 가능해요. 무한 돌봄이나 정말 응급한자,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돼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센터나 사회복지기관, 병원들을 연계를 하죠. 그런 일회성은 가능하고 제도적 틀 내에서 미등록자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A)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소외계층 의료지원만이 가능하다.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로 입원이나 수술의 경우 500만 원~1,00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정되지 않은 일상생활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의료급여 대상이 되지 않고 일상적인 의료보험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같이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어 일상적인 의료혜택 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나마 미등록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딱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외계층 의료지원, 노인이나 사회 취약계층 중에 미등록 노동자,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동자, 그것도 노동자여야 되요. 그것을 통해 입원하거나 수술 경우 초기에 5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지역별로 의료원들을 통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딱 그게 유일해요.”(A)

3) 난민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과 그의 가족에 대하여 의료 급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입원이나 수술 등의 의료비의 지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외래는 대상이 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상적인 의료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

“입원하거나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래는 대상이 안돼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일상적으로 아프고 그 정도까지는 안 아픈, 사실 입원하고 수술하기까지는 검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결 수 있는 법적 보호서비스가 없으니까 사실상 애들 병원가면, 소아과나 몇 천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니까 다 내야 되잖아요.”(B)

난민 인정자의 결혼은 국적국에서 발행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난민 생활 중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결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난민 인정자가 의료보험의 대상자라 할지라도 배우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 등록이 가능해져서 가족으로서 배우자의 법적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남편이 난민 인정을 받아서 직장의료보험도 다되죠. 그러면 부인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B)

다. 고용 지원

1)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이 3년 동안 3번만 가능한 것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평등권의 침해로 2007년, 2008년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되었다.(판결문: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이 대상이라는 판단으로 법률상이나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의 침해는 맞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보장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하는 근거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주체에 대한 인식이 국민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벌써 작년 9월에 판결이 났는데 결국 기각됐어요. 몇 년 만에. 그런데 그런 논리들이 결국 그 부분들이에요. 과연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외국인이 대상이 되냐,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석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재판관이 한말 중 딱 기억나는 것이 분명히 법률상이나 근로기준법에는 인간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횡수를 제한하는 게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정부의 정책적 입장을 봤을 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현재의 판결이었는데, 이게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A)

2) 난민

인도적 체류자⁴⁹⁾의 경우 생계비의 지원은 받을 수 없고 일할 수 있는 자격만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어린 자녀가 있는 자, 노약자 등으로 대부분으

49) 인도적 체류자란 용어가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서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 변경되어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현재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는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난민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의 문제점이 1.경제적 상황 나.난민 부분에서 논한 것처럼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에게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노동력이 없는 노약자들인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자는 G-1비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일할 수 있는 혜택을 주지만 말한 것처럼 애기엄마나, 아프다거나, 노인,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노동력이 많이 없는 분들인데, 정말 어렵게, 불안하죠.”(B)

라. 주거 지원

난민 수용소가 없는 우리나라는 NGO의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난민의 특성 때문에 한곳에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일인 일실 쉼터 서비스의 제공을 난민센터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난민센터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난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의 주거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일인 일실, 면담과 모니터랑해보니까 난민들이 많이 힘들데요. 난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문제 일으키는 분들 보면 난민들인 거예요. 독특하신 분들이 많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같은 나라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종족 분쟁하거나 하면 같은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오신 분들, 성적 소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시설에 넣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수용시설로 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는 단독 공간을 주는 것이 맞다 판단한 거죠. 시작은 올해부터 했고요.”(B)

마. 교육 지원

이주아동의 신분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기본적으로 F1 또는 F2 비자로 사회생활이나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적국 학제의 상이함이나 학력의 확인 가능한 증빙이 없어 학교 입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인 경우 우리와 학제가 다르거나 또는 본국에서 다녔다고 하는 그 학력이 증빙이 안 되는 채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애가 지금 어느 학교로 들어 갈 거냐에 따른 학교 인정방안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그거 이제 방안 마련하고 있어요.”(C)

교육법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인우 보증서로 거주사실확인 또는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만으로 중학교까지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학력인정이 되지 않고 수료만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학교는 다닐 수 있어요. 초중고까지는 의무교육이고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충분히 받아주죠.”(A)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이주아동의 경우 인터넷 등록이 되지 않아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학교 교육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아동이 전자 시스템에 의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학교 숙제, 자료를 찾고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아이디가 없으니까, 아직도 주민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 수밖에

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잘 이용을 못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요.”(A)

제7장 한국의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의 지역사례

1 지역의 다문화화 양상과 특성

지역은 공간적 측면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 주체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 공간인 동시에 정책결정과 집행의 구체적 장(locus)으로써 중요성을 갖는다. 예컨대 지역은 다문화사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의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정보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정책 과정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역동성이 구현되는 공간이다(김이선 외, 2011).

한국사회의 다문화화 양상과 지역 차원의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특징 중 하나는 지역별로 이주민의 구성과 성격이 균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의 국적 미취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정체 이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가 55.1%로 월등히 많고 결혼이민자가 14.1%, 유학생이 8.7%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행정안전부의 ‘20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수는 1,139,28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의 2.3%에 해당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던 09년(1,106,884명) 보다 2.9%가 증가한 것이며 2006년과 비교하면 47.0%가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920,887명(80.8%), 한국국적 취득자는 96,461명(8.5%), 외국인주민 자녀는 121, 935명(10.7%)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외국인근로자는 558, 53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49.0%, 결혼이민자는 125,087명(11.0)%, 유학생은 80,646명(7.1%), 재외동포는 50,251명(4.4%), 기타 106, 365명(9.3%)이며, 한국국적 취득자는 혼인 귀화자 56,584명(5.0%)과 기타사유 취득자 39,877명(3.5%)등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을 보면 경기도(29.7%), 서울시(29.5%), 인천시(5.6%) 등 수도권에 64.8%(2009년 65.1%)가 집중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이 등이 차지하는 비

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전지역에서는 23.8%에 불과한 데 비해, 경남은 67.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결혼이민자는 지역별로 10~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전남, 전북 지역에서 그 비중이 높고 서울, 경기에서는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유학생의 경우는 최소 2%대에서 최대 35%에 육박할 정도로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이는데, 대전 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유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이주민 구성의 편차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이주민의 구성에 있어 전혀 다른 양태가 나타나는 만큼, 이주민 구성의 특징을 기초로 지역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면 서울 구로, 금천, 영등포, 경기 부천, 안산 등 전국의 61개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이주민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로 공단 입지 지역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동래, 광주 서구, 전북 남원, 충북 보은 등 전국 48개 지역은 외국인근로자도 30% 이상 되고, 결혼이민자도 30% 이상 되어 결혼 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 모두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김이선 외, 2011). 이와 같이 지역 차원에서 다문화화는 공단 입지, 대학 소재, 거주민의 계층적 배경 등 지역의 세부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마다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사회정책의 지자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적 혹은 행정적 단위 선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이주민 집단 중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정책 대응 움직임이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들 이주민 집단을 제외하고 유학생 또는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함의를 지닌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여기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이에 대한 정책을 둘러싼 역동성이 구현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를 살펴보는 한편,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 무주군의 사례를 통해 지역별 사회복지지원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지역 1 : 경기 안산시

가. 거주 외국인 현황

안산시는 전국적으로 외국인주민이 2011년 1월 기준 50,864명⁵⁰⁾으로 가장 많은 곳으로,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밀집도가 현저히 높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는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69.1%로 상당히 높아 주로 공단 입지의 지역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산시는 유사한 인구 특성을 보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주민 정책의 역사와 역동성을 경험한 곳이기도 하다.

<표 7-1> 안산시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단위: 명, %)

합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41,174	28,462	69.1	4,387	10.7	411	1.0	2,203	5.4	5,711	13.9

출처: 행정안전부(2011)

나.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1) 안산시 외국인주민 조례 및 외국인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안산시는 2007년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표준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지만, 안산시 조례에서는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아니더라도 재해·질병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거나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

50) 안산시 외국인주민 50,864명은 국적미취득자 41,174명과 국적취득자 5,332명을 합한 인원이다.

다51).

이어 전국 최초로 2009년 3월 미등록 외국인을 배제하지 않는 획기적인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등 한국의 외국인 관련 법령 등이 예외 없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미등록 외국인)’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산시가 제정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는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인권 조례에서 ‘거주 외국인’의 범주에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시켜(제3조 2항)⁵²⁾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안산시의 모든 외국인이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제5조 1항)’는 점을 분명히 했다(오경석, 2010).

2) 안산시 외국인 지원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배치

안산시는 또한 2005년 전국 최초로 이주민 전담부서인 ‘외국인복지과’를 신설하면서 정책 거버넌스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만 전문성이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해왔던 민간단체와의 관계는 다소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참여자격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안산시 이주민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현장 경험을 쌓아온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 지자체는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지형이 변화하고 외국인정책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안산 지역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는 다시 한 번 재구성되었다. 안산시는 2005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2008년 관주도의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지자체 내의 부서와 통합하여 ‘외국인주민센터’라는 별도의 전담 기구를 탄생시키고 담당공무원 20명을 배치하였다.

51) 표준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지만 천안시 조례에서는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아니더라도 1. 재해·질병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거나 2.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주 외국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52)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이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제3조 2항).

이는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던 지역인 만큼 그 영향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에 적극적인 참여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기구 명칭이 ‘외국인근로자센터’에서 ‘외국인주민센터’로 변화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대상의 범주는 확대되었으나 외국인근로자 집주지역이라는 안산시의 공간적 특성은 희석된 면이 있다고 지적되었다(김이선 외, 2011).

<표 7-2>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구분	주요업무
소장	• 외국인주민센터 업무총괄, 거주 외국인 시책 개발
외국인정책담당 (5명)	• 외국인주민센터 운영총괄, 조례규칙 제정 등 지원기반 마련, • 원곡특별순찰대 운영, 다문화마을 특구 업무 등
다문화교류담당 (4명)	• 다문화축제 추진, 외국인공동체, 국가별 주간행사지원 • 문화체육활동 지원, 거주 외국인 대표자회의 운영 등
다문화교육담당 (4명)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획운영, 한국어교육 및 기술(귀환)교육운영 • 다문화이해증진사업(다문화이해강좌, 세계문화체험일일교실), • 공동체소식지 안산 하모니발행 등
외국인인권담당 (4명)	• 외국인 인권기본계획 제정,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인권증진 기반 조성사업, 후원결연 등 연계 협력사업 등
다문화아동담당 (3명)	• 다문화아동 서비스 시책 개발, 글로벌 문화센터 건립 추진 • 글로벌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출처: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

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안산시는 외국인밀집지역에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 20명을 배치하는 등 타 지역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외국인주민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 업무는 외국인 인권계에서 맡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의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 인권 증진 기반조성,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이해증진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아래 <표 7-3>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반조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선도적인 추진력을 보여 주목할 만하다.

<표 7-3>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지원 사업 현황

구분	사업내용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기술귀환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컴퓨터교육 등 • 생활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소식지안산하모니, 생활·법률가이드 북 발행 제공 • 지구촌생활체육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종목(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 태권도 유단자(10개국 133명), 태권도시범단 운영(유단자 30명) • 한국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지 탐방, 한국 대표축제 참관, 예술공연 관람 등 • 집거지 환경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특구 입간판 정비, 다문화 학습홍보관 조성 등
인권증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증진 교류협정체결(08.5):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상호협력, 연구조사 공동협력 •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업, 시민사회단체, 외국인주민 등 각 분야의 책무에 관한사항 •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5), 시민단체, 시의원, 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기관 등 • 이주민통역지원센터(☎1644-7111) 운영(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언어 지원 - 임금, 퇴직금, 사업장 변경, 출입국, 의료, 생활 등 종합 상담 • 외국인 무료진료센터(원곡보건지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치과한방진료 및 투약, 질병예방·질환관리 상담 • '외국인 모니터단' 찾아가는 통역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고용업체, 다문화가정, 병원·사회복지관 등 통역서비스 •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생계비·의료비, 귀환여비(항공권), 장제비 등
다문화 가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0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 새내기 결혼이민자 정보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내기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 필수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개입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대상 • 안산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20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건강교육(보육)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예비적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편입을 위한 한국어기초학과 적응교육 실시 •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2010~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둔 다문화가족 종합복지시설

<p>다문화 이해 증진과 공동체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의 날 기념식(2011. 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식, 외국인 가요제, 세계 전통민속공연 등 •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마당(2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 계주, 농구, 씨름 등 체육행사 • 국가별 문화행사 및 주간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문화행사: 인도네시아(라마단), 태국(송끄란, 윈피), 몽골(나담) 등 - 국가별 주간행사: 뮤직페스티벌, 독립기념일, 여성주간행사 등 • 찾아가는 다문화체험 일일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문화소개강상의 전통문화음식 체험 노래 및 악기 배우기 등 • 다문화외국어 체험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중국어일본어(생활회화, 사회문화 등) •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종사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체험교실 운영 • 다문화홍보학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리는 공간 조성으로 학생 및 시민에게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활용
----------------------------------	---

출처: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홈페이지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1)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네트워크 경험

안산에 이주노동자가 등장하게 된 것은 IMF 이후로 공단의 폐업과 노동자 임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밀집도가 빠르게 높아졌다.

이 지역에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1999년 ‘국경 없는 마을’운동을 통하여 민간 부문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히, 국경 없는 마을 운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시민운동의 장에 등장한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참여를 계기로 노동권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의 ‘공생’을 주제로 하는 ‘생활문화’차원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보였다(마을대청소, 이주민 국가의 문화체험 축제 등).

당시 안산시 지역에서는 보편적 인권 옹호 성격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2005년 안산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여 정책의 장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는데 당시를 ‘1세대 다문화 거버넌스’로 지칭하기도 한다(김선미, 2011). 이 시기의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의 고용이나 의료문제 등과 관련된 상담 활동을 통해 축적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참여자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초로 상호 간의 연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표 7-4> 안산시 이주민 지원 단체 현황

		종교기반시설	비종교기반시설			
			시민단체	공공기관	우탁	자조조직
이주노동자	조선족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집 •안산조선족교회				
	필리핀	•갈릴레아				
	인도네시아	•안다옥선교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태국인	*새생명태국인교회				
	스리랑카	•보문선원				
	방글라데시	•소금밭교회				
	아프리카					
캄보디아					•자유인의정류장	
결혼이민자 및 이주아동			•코사인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함께다문화이동센터	*다문화가족협회
이주민 (비제한)		•안산이주민센터 •동산교회 •안산모스크 *제일교회 *온누리M센터	•민여총 *국경없는마을 *리트머스			

출처: 오경석(2010)

*는 2005년 이후 설립된 단체들을 표시한 것임

■ 민간의 역할

- 민간 고유의 직접사업(교육, 상담 등)
- 접근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교육
-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쉼터운영(가정폭력관련),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관련 지원 긴급구호, 교육 등의 지원 및 보완
- 네트워킹 주도 및 공동사업 추진
- 사례관리(긴급지원)

2) 지자체 전담 기구 설치와 거버넌스의 재구성

다른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이주민 정책 추진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극명하게 나누는 중앙부처의 정형화된 관리 방식의 이식으로 인하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는 지역 내의 참여만으로 문제해결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향성 및 조정 의지가 효과적인 거버넌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 지자체의 역할

- 대상자의 정보 및 자료를 지역 내 기관에 제공
- 대상자 욕구 및 지역 수요 파악: 지역순찰대 운영 등
- 대상자 적합직종개발 및 교육: 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정책 설정, 예산 편성 및 배분
- 민관공동 사업 추진 및 협력
- 민관협의체 운영: 2개월에 1회
- 직접서비스 제공: 한글교육, 취업교육 등
- 시설인프라 제공: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외화송금센터 등
- 사례관리 참여: 60여 가정
- 대규모 행사 및 세미나 주관: 다문화국제포럼
- 국가별 공동체 육성
- 기업과의 연계(사회공헌활동): 이주민 통역센터

3) 지역 네트워크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거주 외국인 지원 민관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체가 제도 내부에 마련되었다. 이에 더해 2009년에는 ‘안산시거주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도 설치 및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거버넌스 체제가 지자체 제도로 포섭되는 경향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상 자문기구인 ‘민관이주협의체’는 단 한 사람의 이주민 당사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인권 조례의 경우도 이주민의 인권 침해를 판단하고, 그 구제책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시정부관계자나 그들이 위임한 한국인들만이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 조례안의 대상 외국인 범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추진 체계 및 담당 공무원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오경석, 2008).

<표 7-5> 지역 네트워크

기관	내용
외국인주민센터 내 민관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월에 1회 모임, 사업 및 정보 교환 •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모색(예: 치안수요, 아동인구의 부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이주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1회, 중복사업 조정 및 통제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센터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개입 • 사례관리지원 • 협의체외 기관들 간 연계 • 만·민, 민·관의 협력을 결집시키는 역할

출처: 김이선 외(2010)

안산시 지역의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의 성격 변화는 ‘1세대 거버넌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이주노동자가 공식적인 정책논의의 중심에서 소외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던 시민단체들도 그 성격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김이선 외, 2011). 이전에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네트워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참여하는 경우라도 주요 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오경석, 2010). 기존의 시민단체들 중 일부는 이주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든

지(대안 교육기관 등의 설립) 다문화가족의 복지 문제를 활동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이주민 지원분과가 설치될 당시부터 이주노동자 운동단체 보다는 복지 기관이 중심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설립된 안산 다문화가족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2009)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안산시의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위상, 그 역할이나 특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록 현재에는 그 성격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이주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구체적 문제에 집중하여 지역 자체의 역량을 통해 역동성을 발휘하는 지역 생활공간 중심의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김이선 외, 2011).

<표 7-6>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 세 시기의 특징

시기구분	핵심역량	주요 활동	활동의 방식	이주민 역량	제도화 정도
1990년대	• 이주민 자조 모임과 전통적 지원 단체	• 조직화, 직접 지원	• 자조 활동과 생활지원	보통	약함
1999~2003	• 전통적인 지원단체와 이주 노조	• 네트워킹과 주창활동	• 직접 행동과 담론 생산	강함	보통
2004~현재	• 시민사회단체와 지지체	• 담론화, 프로젝트	• 프로그램 운영	약함	강함

출처: 오경석(2010)

3 사례지역 2 : 경기 수원시

가. 거주 외국인 현황

경기도 거주 외국인주민은 337,821명으로 서울시 336,221명을 앞질러

2010년 최다 거주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수원시 외국인주민은 2008년 25,019명에서 2009년 30,139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1,552명으로 2008년 대비 26.1% 증가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 외국인주민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다.

<표 7-7> 경기도 및 수원의 외국인주민 증가율 (2008~2011)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경기도	277,991	323,964(16.5)	337,821(4.3)	380,606(12.6)
안산	36,387	41,785(14.8)	43,190(3.4)	50,864(17.7)
수원	25,019	30,139(20.5)	31,552(4.7)	35,657(13.0)

출처: 행정안전부(2011)

이같이 수원시에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형적 입지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수원시는 남쪽으로는 평야가 이어지는 지형에다 남부와 북부를 잇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오래 전부터 교통의 요지로 자리 잡아왔고, 이로 인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수원으로 꾸준히 모여들고 있다. 그러므로 수원시는 외국인주민의 문제를 수원시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지우석 외, 2011).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경기도 전체 외국인주민 현황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수원시 외국인주민의 증가율이 경기도보다 높다. 수원시의 외국인주민의 2010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은 13.0%로 경기도의 12.6%보다 약간 더 높다. 둘째,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고, 증가율면에서도 여성의 경우 2009년 대비 20.3%가 증가한 반면, 남성은 11.5%가 감소하여 남성보다는 여성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특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한 경기도 전체 추세와는 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기타 외국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에 속한 여성 외국인주민은 증가하였으나 남성은 감소하였다. 셋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비율 증가가 경기도에 비해 매우 높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으로 취득한 외국인주민은 2009년도에 비해 42.2%가 증가하였으나, 경기도 증가율은 33.9%로 수원보다 낮다. 그러나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 즉 결혼이주민 증가율은 경기도(40.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을 내국인과 동일시하는 인식 확산과 함께 원주민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으로 인한 국적 취득보다는 다른 이유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더 많다는 점에서 통합 정책 추진 시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책 외에 더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수원시 국적 미취득자 중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아래 <표 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외국인주민의 58.1%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안산시와 유사하게 주로공단 입지의 지역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특성 외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다는 특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이 교통의 중심지인 수원역으로 모여들면서 타 지역 거주 외국인주민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주말이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원역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수원역 근처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외국인 집중지역으로 인식되어 기피지역이 되거나 범죄 등 사회적 일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32,8%가 수원역 근처에 집중 거주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심화되고 있다. 향후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위해 수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7-8> 수원시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현황 (단위: 명, %)

합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29,258	16,999	58.1	3,488	11.9	1,912	6.5	2,110	7.2	4,787	16.3

출처: 행정안전부(2011)

나.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1) 수원시 거주 외국인 조례

수원시는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수원시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표준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 외국인

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되어, 거주 외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있다. 즉 수원시의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안산시 지원 조례 대상으로 삼는 재해·질병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거나,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수원시 외국인 지원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수원시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은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담당인력 5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정책과를 소관부서로 한 것은 외국인주민의 52.3%가 여성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여성정책과의 주요 고객이 되는 여성 결혼 이주민은 3,48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9%에 불과하고, 외국인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근로조건이나 임금체불, 불법체류와 같은 법적인 문제 등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대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지우석 외, 2011).

수원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직할 기관은 없는데, 이는 안산시가 외국이주민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들과 직접 접촉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 내에서 안산시에 이어 외국인주민이 두 번째로 많은 자치단체이며, 외국인주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전담할 공공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외국인주민의 구성이 다양하여 이로 인한 정책수요가 여성에 한정하는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는 주로 주말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패턴과 달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체제로는 그럴 수 없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과의 인적 교류 등 강력한 연계를 위해서는 시청 내 조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정책의 최종 목표가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시켜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표 7-9> 수원시 외국인주민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 여성정책과 다문화팀

구분	주요업무
팀장	• 다문화업무지원 총괄
주무관1	•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 세계인의 날 운영 및 유공자 표창, 외국인주민 지원
주무관2	• 결혼중개업 관리, 다문화공생도시 지원, 다문화인식개선 조성
주무관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다문화가족자녀지원, • 다문화프로그램 연계
주무관4	•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다문화가정 육성지원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적응지원(한국어, 취업)

출처: 수원시 홈페이지

다. 수원시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수원시가 외국인주민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다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를 수원중앙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외국인주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사업이다. 근로여건이나 임금, 체류와 관련된 법률 상담, 의료 및 가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나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사업이다.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입문·초급·중급·고급 등의 과정을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컴퓨터교육 및 정비, 이미용, 피부미용, 네일 아트 등의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자녀 아동교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문화사업이다. 문화체험이나 교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피플 퍼즐사업은 외국인 여성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어버이날이나 현충일에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축제 통역 지원, 다문화 사절단 및 일일교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 대한 체험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독특한 사업이다. 또한 재수교민회(在水僑民會)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몽골,

일본, 베트남 등 11개국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각국의 명절 행사나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을 하여 각 국의 외국인주민들 간 친목을 돈독히 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복지사업이다.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투약, 이미용 서비스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기 네 가지 사업은 다른 기관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대세이므로 외국인주민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위한 상기 프로그램 외에 내국인이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다음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다섯 번째,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홍보관 및 카페 등을 설치하여 내국인이 외국인을 이해하도록 하고, 외국인(결혼이민자)을 고용하여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및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자녀들에게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은 소관부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수원시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은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외국인주민 전체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1) 민간단체의 직접 서비스 제공

수원시에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들이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수원시에 기관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는 다음 <표 7-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8개소에 달한다. 이렇게 지원기관이 많은 것은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그만큼 많다

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8개의 기관이 모두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원역 근처인 매산동, 화산동, 고등동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지역을 방문하여 상담 등의 수요를 해결하는 외국인주민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 외국인주민을 위한 많은 민간기관이 각 기관별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들 간 연계가 부족하고, 동일 기능수행으로 경쟁적 관계 형성이 지적되고 있다(지우석 외, 2011).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와 '수원이주민센터'이다.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는 수원시로부터 외국인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이주민센터는 2000년 7월 30일에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로 개소하여 한국의 이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9년 수원역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이들의 상담수요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 현재와 같은 기관명으로 변경하였다. 동 센터는 수원시 소재 외국인주민센터 중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기관이다.

먼저 두 기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상담이며, 대상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이 주요 대상이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 결혼이주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수원이주민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상담이 많다. 상담의 주요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작업장 변경에 대한 문제이다. 후자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관련기관의 예를 들면 경인지방노동청 중부노동청이나 수원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해결하는데,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와 먼저 의사소통을 한 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독촉장 등을 발송하면 70%이상이 해결된다고 한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남편이나 그 가족에 의한 폭력 등의 문제가 많고,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연계 정도가 강하지 못하여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주말에 센터를 방문하는데 문제해결을 위해 연계되어야 할 기관은 운영하지 않아 즉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 7-10> 수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단체명	운영법인	설립연도	활동내용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수원중앙 복지재단	200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체류 및 국적, 의료 및 보험, 결혼이민자상담, 온라인 상담 등 •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직능, 결혼이민자, 법률교육 •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진료 및 이미용, 한국문화체험, 각국명절행사, 송년행사 등
수원 이주민 센터 (수원 외국인 노동자 쉼터)	없음 (자체적 활동)	20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인권, 가정상담과 안내 •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컴퓨터, 문화교육 등 • 문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탐방, 지역과의소통, 문화행사, 문화교류 • 의료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진료, 이주노동자 의료공제회, 무료이용 • 발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지, 연감 등
수원 이주민 언어센터	수원 이주민 센터 부설기관	200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언어 통력 및 번역지원 • 이주민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한국어교육 •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 온/오프라인 다국어 강의 • 다문화 강의
수원시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200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취업준비, 한국사회적응, 가족교육, 한국어방문교육 • 문화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실, 역사문화체험,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 상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개인, 부부, 가족, 지속상담, 연계 등 • 의료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부인과 연계, 임신부프로그램, 쉼터 연계 의료상담 • 공동체 지원 • 자녀 지원
엠마우스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199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상담 • 노동상담, 생활상담 •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한글, 외국어, 부부교육 등 •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지원 연계와 예방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 이주노동자 남성, 여성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상담 후 2주간 무료 입소 숙식제공하 고 상담 및 교육 지원

수원여성 이주여성 긴급지원 센터	여성 가족부 위탁	20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의 폭력피해예방과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전화상담, 면접상담, 방문상담, 통역 지원활동 • 상담과 통역을 통한 다문화가족, 개인, 경찰, 병원, 보호시설, 유관기관 등이 요청 시 현장 방문 긴급지원서비스 제공 • 피해자의 긴급지원, 법원, 경찰, 병원, 긴급피난처,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연계, 동행 통역 지원
수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중앙 건강가정 지원센터 직영	200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교육사업 • 가족상담사업 • 가족치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돌봄지원 • 다양한 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 한 부모가족 사업, 조손가족사업, 미혼모(부)자 기관운영, 청소년 한 부모 지원 • 지역사회네트워크
수원 여성의 전화	사단법인 수원 여성의 전화	19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 • 성매매피해상담 • 성교육, 인형극 • 다문화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 외국어교실, 부부교육 등

출처: 지우석 외(2011)

2) 지자체 전담기구 미설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의 외국인주민 담당부서는 여성정책과 다문화지원팀이지만, 대상포괄의 한계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원시에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많은 민간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각 기관별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직할 기관이 없다. 이러한 직할 부서가 필요한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직면한 문제는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작업장 환경이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는 지방노동청과 연계하여야 하고, 불법체류의 문제는 법무부와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수원시의 현재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국적 미취득자의

약 60%에 달하는 특성이 있지만 전담기구가 없기에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는 주로 주말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행정기관의 근무패턴과 달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체제로는 그럴 수 없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과의 인적 교류 등 강력한 연계를 위해서는 시청 내 조직으로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3) 지역네트워크 미흡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기관들 간 연계가 부족하고, 동일 기능수행으로 경쟁적 관계 형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각 기관의 특성으로 전환시켜서 잠재적 경쟁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문제 사례를 원활하게 의뢰하거나 받기 위해서는 기관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네트워크를 추동할 핵심기관(focal actor)이 필요하다. 핵심기관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과 성격을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사례지역 3 : 전북 무주군

가. 거주 외국인 현황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정책 대응과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원의 결합 방식 등을 포착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성격의 지역은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결혼이주민이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정책 역시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다.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 전북 무주군을 꼽을 수 있다(김이선 외, 2011). 무주군은 전체 이주민이 채 2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

민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안산시와 수원시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주군에 여성결혼이주인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로 2011년 현재 국적 미취득 결혼이주민과 혼인귀화자를 합하여 총 152명의 여성결혼이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들도 취학 전 아동(136명)과 초등학생(48명)이 많지만, 중학생(11명), 고등학생(7명) 그리고 대학생 이상(11명) 등 연령 대별로도 구성이 다양하다.

<표 7-11> 무주군 이주민(국적 미취득자) (단위: 명, %)

합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196	34	17.35	114	58.16	-	0	10	5.10	38	19.39

출처: 행정안전부(2011)

나.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

1) 거주 외국인 조례

무주군은 2010년 4월 들어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표준조례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되, 합법적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아니더라도 재해·질병으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하거나 불법 체류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무주군도 안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지원 대상을 같으나, 안산시 거주 외국인 인권 조례처럼 미등록 외국인, 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인 지원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무주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없으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여성복지업무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복지 정책과를 소관부서로 한 것은 외국인주민의 58.1%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담인력 없이 겸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7-12> 무주군 외국인주민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

구분	주요업무
담당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복지담당 총괄, 자원봉사업무추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여성단체지원 및 활성화
담당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사업,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 여성단체지원 사업, 여성발전기금사업
담당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업무, 여성일자리지원센터지원업무, • 여성권익증진업무,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건강지원업무

출처: 무주군청 홈페이지

다. 무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사업

무주군의 거주 외국인 관련 예산은 총 2억9천만 원 수준으로 이중 국비가 약 1억4천만 원, 도비는 4천만 원, 군비는 1억2천만 원으로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비교 가능한 여타의 지역에 비해 자체예산이 많이 배정한 편에 속한다(김이선 외, 2011). 주요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자녀방문학습지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직업훈련을 154세대 52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거주 외국인 지원 체계 특성

1) 수직적 정책 실행에 집중

무주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 양상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고 이외에 지역의 몇몇 민간단체가 간헐적, 주변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차원의 여성가족부에서 광역단체(도청)를 거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현재에는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그 외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련 사업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이나 거점센터를 거쳐 지역센터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오히려 광역단체를 통해 군청으로 오는 사업이나 군청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자체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거나 지역의 다른 민간단체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민간부문의 비-활성화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와 기능 확대, 제도적 차원의 위원회 운영 등을 계기로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가 제도적 틀로 포섭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안산시와 달리 무주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과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 부문 중심의 사회복지협의체 정도가 지역에서 활동 중이기는 하지만 관련 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빈약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민간 부문이 쌓아온 현장 전문성을 토대로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안산·수원시와 달리, 무주군에서는 시민사회 부문의 정책과의 관계성 자체가 효율성 중심의 민-관 관계를 넘어 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 방향 결정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 지역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 종교단체, 청소년 수양관 등 주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순수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전개되어 오기는 했다. 주로 종교단체들이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주민 지원을 계기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청이나

농어중앙회 기업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아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부부상담 등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축적하게 된 특성을 갖고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사한 성격의 사업 추진 경험만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는 거버넌스의 기본적 요소인 상호의존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이라는 지자체 결정사항 이외에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부문은 지역의 고유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위탁을 받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구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3) 결혼이주민의 정책 참여 욕구와 현실

안산시 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공공해지기 이전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주민 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지역 차원의 공생이 모색되는 가운데 잠시나마 이주노동자가 네트워크의 성원으로 활동했었다. 그리고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지자체 공식 위원회 위원 중에도 결혼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무주군에서는 정책에 대한 각종 논의나 시행과정의 주체로서 결혼이주민이 가시화된 적이 전혀 없다. 이 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출신 국가별로 자조모임을 갖거나 부부가 함께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상호부조의 성격만을 띠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나 기관들과 공식적 연계는 갖지 않고 있다. 지자체 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역에 사는 결혼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직접 표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요구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지자체 차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무주군과 같이 대부분의 외국인이 결혼이주민이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미약한 가운데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에서는 전형적인 관료적 집행구조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부문 내부에서도 소수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발전에 기본적 요소인 정보자원이나 지식의 교류를 포함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특징은 단지 무주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구 구성이나 정책 환경이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김이선 외, 2010).

5 시사점

이상에서 이주민의 구성이나 정책 지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민 집단의 성격, 지역의 다양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역량, 지자체의 적극성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세 지역 사례를 살펴보았다. 안산시와 수원시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진 사례라면, 전북 무주군의 경우 결혼이주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갖는 사례이다. 지역별 사례 분석 결과, 지역 차원의 거주 외국인 사회복지지원 체계는 지자체별 거주 외국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 지원 사업 내용, 민관의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주 외국인을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조례제정과 전담기구 및 전담인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산시의 경우 거주 외국인 조례와 거주 외국인 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합법적 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획기적으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센터라는 관주도의 전담기구를 마련하고 전담인력 20명을 배치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 반면, 안산시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로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원시의 경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상 합법적 체류 외국인만 지원 대상으로 삼아, 전북 무주군과 같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비합법적 체류라도 재해, 질병 긴급구호 필요자와 비합법 체류 해소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도 대상 범위가 협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원의 경우 안산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전담부서 없이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인력 5명이 담당하는 실정으로 외국인주민 모두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다(지우석 외, 2011). 외국인주민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전담할 공공기관이

필요하겠다. 공공전담기관의 필요성은 먼저 외국인주민이 구성이 다양하고 외국인주민의 행정수요는 주로 주말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노동부, 법무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인적 교류 등 강력한 연계를 위해서는 민간이나 시청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따라서 외국인주민 100만 명을 넘는 시대를 맞아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외국인에 대한 포괄성이나 외국인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 확충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지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주민 집단 성격, 민간 부문의 역량, 지자체의 적극성상 수도권에 위치한 안산시와 수원시가 전북 무주보다는 다양한 민간단체 활동을 기반으로 외국인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 일상생활정보제공서비스, 상담연계, 다문화가족지원 등이 보다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경우, 결혼이주민 비중이 높으나 대상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민간 부문과 지자체의 역할이 미약한 가운데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전달 체계로써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특별히, 안산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거주 외국인 인권 증진 기반 조성 및 다문화이해 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주민센터를 365일 야간 및 주말에도 운영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은 인구 구성이나 정책 환경이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서도 고려할만 한 점으로 사료된다.

셋째, 거주 외국인 지원 거버넌스 측면에서 오랜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네트워크 경험과 민간 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 전담기구(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여 거주 외국인 지원의 거버넌스를 재구성하고자 한 안산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외국인주민센터의 지역 내 진입으로 민간과 지자체간 갈등 요소가 상존하나 지자체는 지역사회 다문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역할에 주력하였다. 다만 지자체는 전체사업의 60~70%가 지역협력사업이고 30~40%는 직접서비스제공사업이라 공급기관이 풍부한 지역에서 지자체 역시 일부나마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 자생력을 방해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다.

결국 안산시의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위상, 그 역할이나 특성의 변화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김이선 외, 2011). 첫째는 비록 현재에는 그 성격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이주노동자가 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의 구체적 문제에 집중하여 지역 자체의 역량을 통해 역동성을 발휘하는 지역 생활공간 중심의 거버넌스가 가능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거버넌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거버넌스의 운영에 있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정책 조정과 네트워크 구축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안산시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전달된 정책의 실행 이외에, 지역의 특수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을 벌여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외부에서 방향성 및 구체적 내용과 방법까지 결정된 사업을 실행하는 것 이상의 움직임으로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사회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특성과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정책적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조정과 협력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정책 거버넌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구체적으로 정책의제 발굴·방향설정·실행 등 정책 과정의 각 단계별로 중앙부처와의 관계설정, 지역 내 다양한 민간단체 사이의 경쟁과 비협력 문제, 당사자인 이주민의 참여 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거버넌스를 지속할만한 중심적 조정자로서 지자체의 역량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김이선 외, 2011).

제8장 이주민 사회복지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지원방향의 개선방안

가. 외국인주민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기초한 사회보장

유럽 선진국의 이주민정책은 체류 자격·국적 관련 정책·이민자를 위한 언어 및 적응 교육만이 두드러질 뿐 나머지 사회복지지원체계 관련 정책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에게도 사회복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정부는 외국인등록을 필수로 하며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자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 이전이라도 사회·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이 자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11).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에게 혜택 및 자격은 물론 현재 시행하는 다문화정책은 매우 세분되어 수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만 보인다.

정부가 고려하는 이주민정책의 주 대상은 결혼이민자 가정임에도, 현행 사회보장법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위가 이원화되어 있다(문순영, 2007). 사실상 결혼이민자는 귀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사회통합정책과 복지제도 적용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제도를 내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저 여러 유형의 외국인 중 영주권을 가진 자, 자국민의 배우자 및 영주권을 가진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방향으로 중장기 예산계획을 세우는 게 필수적이다(설동훈 외, 2009).

이처럼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외에도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고려해야 한다. 비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배제되는데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와 같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 프랑스는 인도적 차원에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라도 심각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상 의료보험지원제도(Aide Medicale de l'Etat - AME)를 적용·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는 프랑스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치료받아야 한다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사회를 지향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나. 복지적 접근에서 역량강화적 접근으로 전환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민과 통합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접근도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대책이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소수자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인력정책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이 이주민을 복지수혜자로 간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이선주 외, 2008; 김이선 외, 2006). 즉 이주민 접근 방식을 수동적인 복지수혜자 위치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통합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통합도 시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체계 확충이 선결되어야 하고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역량강화를 통한 이주민 통합을 지향하는 이민의 경영·관리 (immigration management) 접근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접근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유입국에서도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이다(이선

주 외, 2009). 여기서 경영·관리의 의미는 외국인의 규제 및 활용을 위한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 각 이주민 유입국들은 사회적 이주민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주민을 통합하여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Accenture Institute, 2008). 이는 이주민 문제가 단순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민 문제가 복지적 접근에서 경영·관리의 문제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갈등 등과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민들은 취약한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위화감을 가질 수 있다. 이민자들의 빈곤문제는 비용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며 이주민과 그 자녀들이 복지수혜자적인 위치에서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양애경 외, 2007). 그런데 이주민에 대한 복지적 접근만으로는 재정과 인력 투입이 많은 것에 비해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주민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끼고 정체성을 형성하여 사회적 연대감을 가짐으로써 이주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주민이 사회적 연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경험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이주민들이 역량 강화를 통한 주체적 삶의 영위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않고, 차별과 소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언어·정치·경제·사회·정체성 등 영역별 접근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 전략들이 필요하다.

2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가.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실효성 강화

최근 들어 선진 유입국들은 이주민의 체류 및 국적 관련한 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언어와 사회 적응이며 그 중에서도 언어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이민자 정책이 엄격해지면서 사회통합이수제나 언어이수를 이주 조건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부각된 사회통합 조치가 독일사회와 노동시장 적응에 필수 조건인 이주민들의 언어지식 강화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05년부터 EU 비회원국 출신의 신규이주자들이 사회통합코스(독일어 600시간, 독일 법규·역사·문화 30시간)에 이수하도록 참여를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법무부가 2008년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민자들이 국적취득 과정에서 사회통합교육이수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과정 이수 후 국적 취득 시 편의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통합이수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언어·사회·문화·제도 등에 대한 220시간의 기본소양교육과정으로, 과정이수 후 일반 귀화자 및 간이 귀화자 신청자에게는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국적취득 신청 후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는 국적 취득에 편의를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는 이민자가 유입국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면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축적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면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취업하기도 어려워 노동시장에서 차별당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경제적 통합에도 장애가 발생하여 가구빈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수제가 개발되었다(이선주 외,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현재 자율적 선택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내용도 기존 NGO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이 있어 그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주민의 체류 및 국적에 있

어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교육지원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결혼이민자 사회보장 혜택 차별 철폐

현행 사회보장법에서 결혼여성이민자의 지위는 이원화되어 있다. 국적 취득 시 내국민으로서 권리와 보호가 제공되고, 국적 미취득 시 ‘외국인 특례조항’에 의해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발생의 전제는 결혼여성 이주인이 외국인이지만 ‘내국민의 배우자’, ‘한국인 자녀의 모’라고 하는 특수한 지위라는 점이다. 또한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 즉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 등에서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급여나 서비스 지원의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여전히 이민자의 문제를 가족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다문화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었다(문순영, 2007).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필하고 합법적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귀화 이전이거나 외국 국적을 유지해도 사회통합정책과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한국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가족 성원인 이상 자녀가 없고 외국 국적을 유지하더라도 사회통합정책과 복지제도 적용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인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국민과 차등 없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제도를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제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현실이므로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과 달라질 세계에 대해 적응하고 문제점을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개개 주체들이 개인으로서 그 존엄성을 보호받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건강권 보장

1)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대

외국인노동자는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률이 51%로 낮았으며,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률은 66%에 그쳤다. 낮은 건강보험 가입률을 반영하듯 15%의 외국인노동자가 돈이 없어서 질병이나 부상에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이는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사업장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이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할 경우 의료비용을 전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외국인노동자의 가족동반을 법적으로 금하는 것과 달리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42.5%,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59.1%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가족의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가족 또한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OECD와 ILO 등 국제사회는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 또한 사회적 약자로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최홍, 2011). 의료서비스의 접근은 인간의 생명유지와 직결되어 있는 인간의 권리이다.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에게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의 법적 합법성에 따라 생명존엄의 가치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출입국 관련 비합법적 상태에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합법적인 법적 보호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사회보장관련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판결을 소개한다.

::과거판례

서울행법 2007.11.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
- [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의 요건을 외형상 갖추었을 뿐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관할구역 내에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변경판례

대법원 2009.6.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제1조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제6조의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2] 무허가 건축물을 실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10년 이상 거주해 온 사람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 관례는 과거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인 경우 그 불법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거부해온 관행(과거관례)을 변경한 관례이다. 즉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에 관한 규정 및 주민등록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를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용해 보면 각종 사회보장 제도는 그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컨대 긴급복지지원법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법의 적용에 있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대상성에 대하여 그 체류의 합법성을 반드시 심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⁵³⁾ 등 다수의 사회보장관련 법이 그 목적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국민을 지칭함이 ‘인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회보장관련 법령에는 외국인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긴급의료보장

국제연합(UN)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모든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은 관계 체약국의 국민과 평등한 취급에 기초하여 생명유지 또는 회복이 어려운 건강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모든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같은 긴급의료는 체류 또는 고용에 관한 어떠한 비합법적 상태를 이유로 거부되지 않는다’(제2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위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하지

53)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 국제노동기준으로써 국제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해야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협약일지라도 입법방향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지위나 인권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노동기준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노재철, 2010).

우리나라에서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으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의료문제이다. 비합법적 체류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다른 식생활 문화 등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이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여러 제약으로 병원에 가기도 어렵지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하고, 복잡한 진료 체계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 역사 20여 년 간 여러 차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장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위에 적시한 국제협약에서는 ‘어떠한 비합법적 상태에서도 긴급의료는 거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규범에 준하여 예산 제약이란 난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들의 의료 문제에 한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라도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긴급한 의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로 긴급복지지원법과 공공보건 의료에관한법률을 검토해 보면 현재 우리 법률이 외국인 보호에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있어서의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 조항은 화재, 범죄, 천재지변 등의 사고 발생에 관하여 지원 대상성을 넓혀두기는 했으나 정작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긴급복지지원에 관하여는 여전히 체류의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그에 따른 무국적아동의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지라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및 인도주의적 관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시행령의 경우는 개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그동안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진입할 여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선제적으로 적극 개입함에 따라 실질적인 빈곤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2012년 10월 22일 개정).⁵⁴⁾ 이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의 경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대상에서 외국인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기에 문제가 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경우 민간의료시설 및 건강보험제도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바 결국에는 우리의 공공보건시설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긴급한 의료보장의 필요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섭시켜야 할 것이다.

54)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서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조문을 개정한다.

아래와 같이 조문의 변경을 제안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p>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p> <p>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p> <p>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p>법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상동</p> <p>제5조의2(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특례) <u>국내에 체류⁵⁵하고 있는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u></p> <p>시행령 제1조의2 <u>삭제</u></p>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조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1. 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2.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3. 감염병 예방 및 진료	3. 감염병 예방 및 진료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4.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5. 응급환자의 진료	5. 응급환자의 진료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6.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7.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7. 기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55) 법문 상 체류의 합법성이 전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판례의 해석과 같이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에 따른 해석을 통해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에게도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p>5조의 2 (없음)</p>	<p>5조의 2 (외국인과 난민에 대한 특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중 공공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p>
-------------------	--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달리 ‘다문화가족 일반’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귀화자 가족’만 지원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귀화한국인이 국제 결혼할 경우, 그의 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유학생은 배우자 동반이 가능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통한 저숙련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하더라도 그의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할 수 없다. 서류미비 이주노동자 가족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니다(설동훈 외, 2009).

한국의 다문화사회정책의 핵심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날 때부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국적취득자만 지원하는 제한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주민 조항 정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민과 주민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복리사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규정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목적조항에는 국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며⁵⁶⁾ 개별 법령에서도 국민과 주민이 혼용되어 있다. 이는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20여 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종 법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항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대대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 자체가 ‘복지사무’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지원체계 관련 조항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개념에서 배제되었던 외국인을 주민으로 포섭시킴으로써 그들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국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닌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등록증이 아니라 외국인인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3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가. 이주민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및 정비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이주민에게 생계수단과 주류사회로의 통합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직업알선, 직업적응지원을 통합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

(1) 양적 확대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과 난민은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였다.

56)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주여성의 직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은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주민을 위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직업교육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과 난민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주민의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찰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직종의 다양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NG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미용, 조리, 통·번역 등 특정직종에 집중되어 있다(정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 2009).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이주여성을 저학력·저 숙련 집단으로 일반화해 접근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혼이주여성은 교육적 배경, 직업경험, 전문성 등 다양성이 높은 집단으로 향후 희망하는 직종 또한 다양하다. 특히 난민은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고 숙련 직종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주민을 위한 직업교육의 직종을 고 숙련의 전문화된 직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3) 교육기관의 다양화

이주민의 직업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NGO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인력, 교육 기자재의 한계로 이들 기관이 교육할 수 있는 직종은 특정직종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직업교육 기관을 전문 직업교육을 담당해 온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원(인력개발원) 등으로 확대하여 이주민이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해야 한다.

(4) 접근성 증진

이주민의 직업교육 욕구가 높음에도 실제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이주민의 언어문제이다. 직업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주민의 언어문제가 직업교육의 장애요소로 발전되지 않도록 직업교육을 다언어로 제공하거나 통역사를 배치해 직업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직업적응서비스

이주민은 취업에 성공한 뒤 취업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정서영 외, 2009). 이는 이주민이 한국의 직장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민에게는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때까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도하는 직업적응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나. 한국어교육체계 정비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이주아동이 한국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원인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기인해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주민의 욕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교 내 한국어교육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는 자녀가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문제로 자녀의 한국어 부족을 지적했다. 이주아동이 한국학교가 아닌 자국민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를 선택한 주요 이유 또한 한국어 부족으로 보고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아동이 한국학교에서 교과과정을 따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 한국교육체계 내에서 한국어가 서툰 아동이 입학한다 해도 이들 아동에게 한국어를 별도로 지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부재는 곧 이주아동 스스로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까지 학교생활을 견디어 내거나 또는 탈학교 하도록 강제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앞서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은 자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아동들에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어를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이주아동은 학교수업의 일부를 자국어 수업으로 대체해 수강하며 프로그램의 형식은 다양하다. 이주아동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학교 내에 자체 프로그램을 두고, 이주아동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인근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한다. 일부 지역은 학생의 집을 방문해 자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방문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자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아동의 자국어 습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지원과 우리나라의 교육지원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주아동의 자국어 지원에 대한 실패여부는 이주아동의 이주사회적응 여부를 결정하며 이는 곧 이주아동이 미래사회의 주류로 기여하는 가 또는 영원한 주변인으로 머무는 가를 결정하는 근본적 차이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주아동이 한국사회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의 수단인 언어습득을 지원하는 자국어 수업 프로그램을 제도교육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부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Korean as a Second Language(이하 KSL) 교육과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 등 시행이전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주아동이 언어적 문제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KSL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진해야 한다.

2) 학교 밖 한국어교육

이주민을 위한 현행 한국어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이주아동학교, 교회 등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에 따라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다수의 기관이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선택권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한국어교육을 위한 자원과 역량이 지나치게 분산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상당수의 기관이 수강생 수의 제한, 강사임금의 문제, 공간의 제한성 등으로 개설강좌 수, 강좌 수준, 개설 시수, 개설 시간대 등이 제한되어 있다. 기초적인 한국어 습득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관의 역량 상 상급강좌의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급강좌가 개설될 때까지 한국어 수업을 중단하거나 기초반 강좌를 반복해서 수강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다층화와 역할구분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기능은 유지하되 이들 기관에 의존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위기능들을 수행하고 기존 기관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한국어 교육 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센터는 중앙센터와 광역센터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 중앙센터는 커리큘럼개발, 교재개발, 인증체계개발과 같은 이주민의 한국어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어교육 광역센터는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기관의 역량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광역 단위로 지정하며, 일선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집중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전일반·반일반 등의 집중 프로그램과 초급·중급·고급 등 다양한 수준의 강좌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장시간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 전 일반과 반일반의 특성을 고려해 수강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는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2)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인증체계

현재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전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과 강사에 의해 교육의 질과 내용이 결정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어떤 기관에서 어느 강사에게 한국어교육을 받든 내용과 질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 중앙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단계마다 표준적 커리큘럼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표준화된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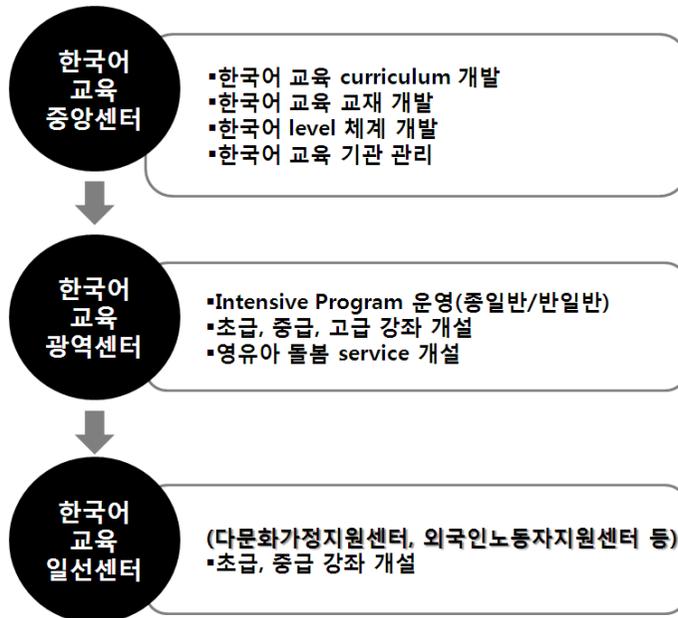
또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이주민의 한국어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인증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900시간의 독일어 강좌를 이수하고 독일어 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적부여기간을 감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증체계는 이주민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단일화된 척도로써 이주민이 교육과 취업 시 자신의 한국어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역량 상 일일 한국어 수업 개설 수가

제한적이며 한 수업 당 강의시간은 60분에서 120분 정도이다. 따라서 이주민이 하루에 한국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20분 이하이며 이와 같은 방식은 이주민이 한국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한국어 부족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탈학교한 이주아동은 집중적인 한국어 수업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한국어 수업은 호주, 독일 등이 전일반·반일반 등의 언어 집중프로그램을 두어 이주민이 빠른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자국어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직장일이나 가사일 때문에 평일이나 낮 시간은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주말반이나 야간반 등이 다양한 시간대를 활용한 강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주말이나 야간에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말이나 야간에 제공되는 한국어 교실이 광역단위 최소한 한 곳은 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특수 시간대에 제공되는 한국어 강의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림 8-1> 한국어교육 시스템

다.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6.4%는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경험했으며 2.4%는 배우자나 가족의 강요에 의해 집밖에서 노숙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해 줄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2012년 6월 현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전국에 이주여성쉼터 18개소, 이주여성 그룹홈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에 그치고 있다. 9000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에 1개소만이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1개소 당 10인 이하의 결혼이주여성만을 수용하고 있다. 10인 이하 시설에는 9천만 원을 지원하고 10인 이상의 시설에는 수용 인원에 관계없이 1억3천만 원의 고정된 지원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이 10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위험이 높은 집단이라는 연구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증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시·도별 1개소에 불과한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시·도별 2개소 이상으로 증설하고 시설 지원금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라. 이주민 적응지원서비스의 제도화

1) 사례관리를 통한 난민적응지원 프로그램 수립

난민은 어떤 연고나 지지체계도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고용주 등 최소한의 연고가 있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결혼이민자와는 다른 종류의 적응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난민은 강도 높은 밀착형 적응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등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해 난민적응지원서비스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서비스와

전달체계가 수립된 바 없어 난민을 위한 적응지원서비스가 현실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난민이 입국하는 순간부터 시민권을 획득할 때까지 생계·의료·교육·주거·심리상담 등 이주민의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호주의 인도적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난민적응지원 프로그램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지닌 난민의 특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교육·주거·심리적 상담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난민의 차별적인 문제와 욕구를 민감하게 반영한 개별화된 서비스, 난민의 적응과정에 따른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밀착형 난민적응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2) 이주민 사전적응지원 프로그램 도입

합법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66%로 낮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정보부족을 들 수 있다. 국적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의 44.0%는 신청해야 할 기관이나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부족을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결혼이주여성 과 한국인 가족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이주민의 인권과 제한적이거나 이주민에게 보장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절차나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입국절차 상 이주민에게 한국사회에서 접근 가능한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인노동자는 비공식적 자원을 이용한 개인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환경에 처한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자신에게 보장된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 또한 국적신청절차, 건강보험, 보육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기관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이해해야 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성은 해당기관을 통해 통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이들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은 스스로 정보를 얻

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에게 인간으로서 자신이 갖는 권리, 건강보험,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관과 역할, 지역사회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서비스가 구상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민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통합적 정보를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한국입국 전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하며 이주민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이주민이해에 대한 교과목 이수 의무화

법과 정책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가를 정하고 있다. 법과 정책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법과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가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을 이해하는 방식과 시각은 법과 정책에 반영된다.

법과 정책에 규정된 서비스는 관련 분야의 대인서비스 전문가를 통해 이주민에게 전달된다. 대인서비스 전문가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시각은 그가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의 질은 관련법과 정책을 만들고 전달하는 전문가의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받는다.

외국인 보호소와 공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난민거부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판사 등이 난민 관련 국제협약과 규범의 내용 및 난민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난민신청이나 인정 과정 중에 난민이 인권침해나 충분한 자기방어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또한 이주아동이 학교적응에 실패하고 탈학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의 학교생활을 책임지는 학교와 교사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부족에 있다. 이는 곧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적응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이주민과 성공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주인권가이드라인(2011)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장, 학교교사 등 교육관련 전문 인력에게 다문화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따라

서 법조인, 의료인, 교육자, 사회복지사 등 대인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문현, 2008.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 방안”, 세계헌법연구. 14(3); 25-48.
- 구병삭, 1991. 『지방자치법』, 서울 : 박영사.
- 곽원섭, 2007. “이주민통합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김남진·김연태, 2009. 『행정법2』, 서울 : 법문사.
- 김범수, 2007. “일본의 다문화공생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야마가카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3; 86-113.
- 김산용, 2009.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무, 2009. “독일 다문화교육정책의 전개”, 교육정책포럼. 196; 16-21.
- 김선미, 2011. “다문화 가족정책과 지역 거버넌스 : 분석과 과제”, 한국다문화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은정, 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 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민무숙·최은희, 20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김이선·민무숙·홍기원·주유선, 201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재경, 1997. “독일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7; 211-240.
- 김종보, 2008.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49(1); 75-98.
- 김철용, 2009. 『행정법1』, 서울 : 박영사.
- 김학만·김경우·이용환·진석범, 2005. 『사회복지정책신론』, 서울 : 대왕사.
- 노재철, 2010.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논집. 18; 37-90.
- 류지태·박종수, 2010. 『행정법신론』, 서울 : 박영사.
- 문순영, 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109-142.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2); 271-303.
- 박성혁·성상환·곽한영, 2008.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연구』, 서울 : 교육인적자원부.
- 박채복, 2007. “독일의 이주자정책 :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293-319.
- 박채복, 2008. “한국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46; 253-274.
- 박채복, 2009. 『독일의 여성이주자 정책』, 유럽연구. 27(3); 67-91.
- 법무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 경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2003년: 산업연수제도와

- 고용허가제도”, 지역사회학. 5(1); 149-167.
- 설동훈·한건수·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 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설동훈, 2009.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림, 34; 53-77.
- 설동훈·강기정·이병하, 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성낙인, 2011. 『헌법학』, 서울 : 법문사.
- 양기호, 2009. “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2(1); 131-191.
- 양애경·이선주·최훈석,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경석, 2008.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몇가지 단상』, 안산시 거주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자료집, 경기 : 안산시.
- 오경석, 2010.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190-224.
- 유의정·조규범·조주은, 2009.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나남출판.
- 이기영·안혜경·이민영·박은숙, 2008.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서울 : 나눔의집.
-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 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I):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177-205.
- 이용승, 2007. “독일의 다문화 가족정책”, 민족연구. 31; 113-129.
- 이종윤, 2010.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다문화콘텐

- 츠연구. 9(4); 163-185.
- 이혜승·김난영,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서울 : 감사연구원.
- 장명선·장은애, 2010.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영수, 2009. 『헌법학』, 서울 : 홍문사.
- 전광석, 2009. 『한국헌법론』, 서울 : 법문사.
- 전광석, 2012.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 정극원, 2011. “헌법재판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 세계헌법연구. 17(2); 157-181.
- 정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 정인섭, 2009.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16(1); 197-222
- 정재각, 2010. 『이주정책론』, 경기 : 도서출판인간사랑.
- 조현미, 2009.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49-463.
- 주성훈,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사항』, 서울 : 국회예산처.
- 주재순, 2007. “독일의 이주정책”,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 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이주 노동자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엄 자료집,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지방행정연구소, 1993. 『축조 지방자치법해설』, 서울 : 지방행정연구소.
- 지우석·이상훈·김희연·이양주·강식·구연숙, 2011. 『수원지역연구』,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 최홍, 2011.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9. 『함께해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정착과

- 미래’], 법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
- 한승준, 2007. “프랑스 다문화·다인종정책의 도전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승준, 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463-486.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영, 2007. 『한국헌법론』, 서울 : 박영사.
- 호주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2011. *Hunmatarian Settlement Service: Onshore Orientation Program*.
- 홍정선, 2009. 『신지방자치법』, 서울 : 박영사.
- 홍정선, 2009. 『행정법원론.하』, 서울 : 박영사.
- 廣島縣, 2006. ひろしま國際施[策推進ブラソソ.
- Accenture Institute, 2008. *Toward Greater Prosperity, Security and Social Cohesion: Critical Practices in Managing Immigration Services*
- Adam, B. C., & Eric, E. P., 2009. “The Rights of Migrants : An Optimal Contract Framework”, *New York University law*. 84; 1403-1415.
- Betts, A., & Loescher, G., 2011. *Refuge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press.
- Beutin, R., & Canoy, M., 2007. “Reassessing the Link between Public Perception and Migration Policy”, *European Journal of Migration and Law*. 9(4); 389-418.
- Beveridge, W. H., 1942.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London: HMSO.

- Bonjours, S., 2008. *Family Migration Policies in the Netherlands*. Vienna: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 Carlos, C. A., 1979. "Problems Facing Second Generation Migrants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18(6); 763-776.
- Castles, S., & Miller, M. I.,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 in the Modern World, 4th Edition*, London: The Guilford Press.
- Choo, K. N., 2008. "Current Performance and Tasks of Lifelong Higher Education in Korea and Its Perspectives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f Other Major Advanced Countries' System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1(2).
- Dinitto, D. M., & Dye, T. R., 1983. *Social Welfare: Politics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 Dutch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0. *Annual Report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Statistics 2008: The Netherlands*. Rijswijk, The Netherlands: Immigration and Naturalisation Services.
- Fench National Contact Point of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 *Annual Report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Statistics 2009*. Paris: Ministere de l'Interieur, de l'Outre-mer,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et de l'Immigration.
- German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European Migration Network, 2011a, *Annual Report on Migration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Statistics 2009*. Nürenberg, Germany: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Holly Cullen, 1996. “From Migrants to Citizens? European Community Policy on Intercultural Educatio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45(1), 109-129.
- Jonathan, H., & Charles. F., 2012. “Welfare Means Relationality, Virtue and Altruism”, *Legal Studies*. 32(3); 480-498.
- Kofman, E., Rogoz, M., & Lévy, F., 2010. *Family Migration to United Kingdom: Actors, Practices and Concerns*. Vienna: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 Marger. M., 2002. *Race and Ethnic Relations: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Belmont : Wadsworth.
- Marshall, T. H., 1970. *Social Polic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Hutchinson.
- Neuman, G. L., 2010. “A Migrants' Bill of Rights : Between Restatement and Manifesto”, *Georgetown Immigration Law Journal*. 24(3, 4); 685-694.
- Ockert, D., 2007. “Migrant Workers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Stellenbosch Law Review*. 18(2); 219-254.
- OECD, 2007. *Jobs for Immigrants (Vol.1)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Australia, Denmark, Germany and Sweden*,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08. *Jobs for Immigrants (Vol.2)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Belsium, France, the Netherlands and Portugal*,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10. *Equal Opportunities: The Labour Market Integration of the Children of Immigrants*,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 2011.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11*. Pari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hilip. M., 2007. "Migration and Development : Toward Sustainable Solutions", *Willamett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Dispute Resolution*. 15(2); 182-226.
- Pieterse, J. N., 2007. *Ethnicities and Global Multiculture: Pants for an Octopu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Raijman, R., et al., 2003. "Do Foreigners Deserve Rights? Determinants of Public Views towards Foreigners in Germany and Israel",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4); 379-392
- Sana Loue, 2002. "Immigrant Access to Health Care and Public Health", *Annals of Health Law*, 17(2); 213-228.
- Scheepers, P., et al., 2002.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1); 17-34.
- Schneider, T., 2009. *The Organization of Asylum and Migration Policies in Germany*, Nurnberg: Feda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 Schuerkens, U., 2005. "Active civic participation of immigrants in France", *European research project POLITIS*.
- Somek, A., 2012. "From Workers to Migrants, from Distributive Justice to Inclusion : Exploring the Changing Social Democratic Imagination", *European Law Journal*. 18(5); 711-726.
- Titmuss, R. M., 1963. *Essays on The Welfare State*, London: Allen & Unwin.
- Tolsma, J., Lubbers, M. & Coenders, M., 2008. "Ethnic Competition

and Opposition to Ethnic Inter-marriage in the Netherlands: A Multi-Level Approach,"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4(2).
Townsend, P., 1975. *Sociology and Social Policy*, HamondsWorth: Penguin.

Vaisse, J., 2006. "Unrest in France, November 2005: Immigration, Islam and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Paper presented to Congressional Staff on January 10, 12, 2006, Washington D. C.*

Wilensky, H. L., 198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교육·고용·사업장 관계부, available at : <http://www.deewr.gov.au>

국회입법조사처, available at : <http://www.nars.go.kr/index>

난민인권센터, 2011. "난민 그들은 누구인가?", available at : <http://www.nancen.org/504>

독일연방정부, available at :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eauftragtefuerIntegration/AmtundPerson/Organigramm/organiamm.html>

독일연방 통계청, 2007. 2007-Federal statistical office. available at : <https://www.destatis.de/DE/Startseite.html>

무주군청, available at : www.muju.go.kr

수원시청, available at : <http://www.suwon.go.kr>

보건·고령화부, available at : www.health.gov.au

안보·법무부, 2010. available at : www.rijksoverheid.nl/ministeries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available at : global.iansan.net

연방내무부, 2008. available at : www.bmi.bund.de

위키백과 네덜란드, available at : http://en.wikipedia.org/wiki/Integration_of_immigrants_to_the_Netherlands

위키백과 프랑스, available at :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protection_in_France

유럽 협의회, available at : <http://www.coe.int>

총무청, 2006. 다문화공생추진, available at : http://www.soumu.go.jp/s-news/2006/060307_2.html

통계청, 각해당년도.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available at : www.kostat.go.kr

통계청, 2007. “KOSIS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외국인등록인구”, available at : http://kosis.kr/abroad/abroad_o1List.jsp?parentId=A

한겨레신문사, 2012.6.24일자, “일본 불법체류자 효율적 단속 법개정”, available at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39284.html>.

행정안전부,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계 주민 현황”, available at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1022&userBtBean.ctxCd=1289&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행정안전부, 2012. “지방 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승인통계)”, available at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1022&userBtBean.ctxCd=1289&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행정안전부,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vailable at :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2595&userBtBean.ctxCd=1291&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호주 난민위원회, available at : <http://www.refugeecouncil.org.au>

호주의 이민자 정책지원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체계 avail

able at : www.immi.gov.au. & www.refugeecouncil.org.au

호주 정부, available at : <http://www.immi.gov.au>

Accenture, available at : http://www.accenture.com/Global/Research_and_Insights/Institute_For_Public_Service_Value/immigration.htm

BBC, "Multiculturalism: What does it mean?" 7 February 2011. available at : <http://www.bbc.co.uk/news/magazine-12381027>

Just Landed, 고용자·학생 연금을 위한 적용범위, available at : <http://www.justlanded.com/english/France/France-Guide/Jobs/Social-security>

부록 I

법령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5. 긴급복지지원법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 2011.1.24] [법률 제10374호, 2010.7.23,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500-90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기본계획 및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

-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책의 연구·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3.7.1] 제14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의 유치와 촉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책의 공표 및 전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재한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8442호, 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74호, 2010.7.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84호, 2012.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02-2075-872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1>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4조(실태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개정 2010.1.18, 2011.4.4>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

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제목개정 2011.4.4]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전문 인력 양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8937호, 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0534호, 2011.4.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84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 2008-10-01 조례 제 3778호

(일부개정) 2009-04-21 조례 제 3883호

(일부개정) 2010-03-18 조례 제 4013호

(일부개정) 2010-11-08 조례 제 4093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1-03-15 조례 제 4145호 (경기도 조례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도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3.18.>

1. 행정(1)부지사, 여성가족국장, 복지여성실장 <개정 2009.4.21., 2010.3.18., 2010.11.8., 2011.3.15.>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0.3.18.>

3. 교육청·경찰청·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

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한다. <개정 2011.3.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09.4.21., 2010.3.18., 2011.3.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 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0.3.18.>)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6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

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경기도명예도민
증서수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2010.11.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생략

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중 “가족여성정책국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23) 생략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4.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10-20 조례 제 4255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인권선언 등에서 명확하게 기록한 인권의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보편적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고양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이념)

① 경기도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인격체로 국적과 피부색, 인종과 종교,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관련 모든 시책은 인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는 보편적 평등사상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유형의 장벽뿐 아니라 관습, 제도 등 무형의 차별까지 해소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 중심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① 도지사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 증진 시책을 개발하고 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외국인이 경기도내에서 교육, 문화,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에게 외국인주민실태 조사 결과를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 ④ 도지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등의 권리 및 책무)

- ① 외국인은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하는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습과 전통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 등의 책무)

- ① 기업은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외국인의 인권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권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5.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외국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8조(외국인 인권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안전쉼터 등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권증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인권관련 단체를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로 지정·위탁 할 수 있다.

②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도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정부의 외국인 관련 시책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경기도내 외국인 실태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외국인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지원센터는 건강권 침해, 부당행위, 차별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에게 관련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각종 현황조사를 실시케 할 수 있으며 관련자(단체·기업 등)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전문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외국인 인권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1조(보고서 작성 등)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매년 전년도 인권 증진 활동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외국인 인권증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외국인의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노동실태 파악 및 채용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과 관련 정책 유관기관과 협조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의 인권관련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은 소관업무담당 국장,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인권전문가, 외국인근로자 채용기업 대표자 등 외국인 정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14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정기회 : 연2회 이상
 -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2.5.11.>
3.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줄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1.7.14] [법률 제10854호, 2011.7.14,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 이하인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 2013.1.23] 제2조

제3조(기본원칙)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9.5.28]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 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전문개정 2009.5.28]

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최저생계비를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0.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 2013.1.23] 제9조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가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2>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 2013.1.23] 제10조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삭제 <2012.10.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시행일 : 2013.1.23] 제11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7.1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이의신청)

-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28]

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법률 제7739호, 2005.12.23> (개정 2009.5.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51호, 2009.5.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0261호, 2010.4.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54호, 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 부터 <16>까지 생략

부록Ⅱ

설문지

결혼이주민							
설문유형	면접자	고유번호	월	일	일련번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본 설문지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고 설문을 완성하시면 성의껏 준비한 감사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지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책임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e-mail: hjchoi@swu.ac.kr

1. 건강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약을 먹거나 치료해야 하는 병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병의 이름:_____)

3. 건강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③ 모르겠다

4.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으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2-1. 병원에 갈 돈이 없었을 때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했습니까? 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이웃 ④ 교회나 단체 ⑤ 기타_____

5. 지난 1년 동안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으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5-1.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이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남편이나 가족이 못가게 해서 ④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⑤ 말이 통하지 않아서 ⑥ 기타_____
5-2.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① 약을 먹거나 발랐다 ② 그냥 쉬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했다 ④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⑤ 기타_____

6. 가족이 사는데 필요한 돈은 주로 어떻게 구합니까?

- ① 남편(아내가)이 번다 ② 내가 번다 ③ 부모님이 준다
④ 나라에서 받는다 ⑤ 기타_____

7. 돈이 없는 가족에게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8. 한 달에 생활비는 얼마 정도 쓰십니까?

_____만원

9. 생활비는 적습니까? 또는 많습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조금 적다 ③ 적당하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10. 지난 1년간 생활비가 너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0-1. 누구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까?

-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교회나 단체 ⑤ 기타_____

11.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음 중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 ① 주인에게 매달 돈을 주고 빌렸다(월세)
② 주인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주고 빌렸다(전세)
③ 남편이나 부모님 집이다(자가)
④ 기타_____

12.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나 공원 등 밖에서 잔 적이 있습니까?

- ①없다 ② 1번-3번 ③ 4번-6번 ④ 7번-9번 ⑤ 10번 이상



12-1. 왜 잘 곳이 없었습니까?

- ① 돈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쫓겨났다 ② 남편이 쫓아냈다
③ 다른 가족이 쫓아냈다 ④ 내가 도망쳐 나왔다
⑤ 기타_____

12-2. 잘 곳이 없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이웃이나 가족
④ 교회나 단체 ⑤ 기타_____

13.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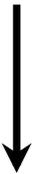
- ① 일하지 않는다 ② 기술이 필요 없는 공장일
③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④ 식당 같은 서비스 일
⑤ 장사 ⑥ 농사
⑦ 농장 ⑧ 기타_____



13-1. 일주일에 몇 일 일하십니까? _____ 일
13-2.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_____ 시간
13-3. 월급과 수당을 모두 합해 한 달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 만원

14. 남편(아내는)은 어떤 일을 합니까?

- ① 일하지 않는다 ② 공장에서 일한다 ③ 식당 같은데서 서비스 일을 한다
④ 장사한다 ⑤ 사무실에서 일한다
⑥ 농사짓거나 농장에서 일한다
⑦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다
⑧ 공사장에서 일한다 ⑨ 기타_____



14-1. 일주일에 몇 일,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_____ 일 _____ 시간
14-2. 월급과 수당을 모두 합해 한 달에 얼마를 벌니까? _____ 만원

15. 한국에서 다음 교육들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교육에 모두 0표 해 주세요.

- ① 한국어교육 ② 컴퓨터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한국요리교육
⑤ 한국예절교육 ⑥ 부모교육 ⑦ 기타_____

16.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에 0표 해 주세요.

- ① 한국어교육 ② 컴퓨터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한국요리교육
⑤ 한국예절교육 ⑥ 부모교육 ⑦ 기타_____

17. 남편(아내)에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7-1 얼마나 자주 남편(아내)에게 맞았습니까?	
① 매일	②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③ 한 달에 한번 정도	④ 일 년에 한 번 정도
17-2 얼마나 세게 맞았습니까?	
①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② 몇 일 동안 아플 정도
③ 하루 동안 아플 정도	④ 몇 시간 아플 정도
⑤ 기타_____	
17-3 남편(아내)에게 맞았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① 집에서 나와서 피해 있을 곳	② 병원 치료
③ 이야기 할 곳	④ 기타_____

18. 아이는 몇 명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⑥ 5명 이상

19.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9-1. 학교에 보낼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①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②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③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서	④ 내가 공부를 도와주지 못해서
⑤ 내가 한국말을 못해서	⑥ 돈이 없어서
⑦ 학교 끝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⑧기타_____	
19-2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① 공부를 도와주는 것	② 친구를 사귀게 하는 것
③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 것	④ 급식비나 준비물 지원
⑤ 학교 끝나고 돌봐주는 것 ⑥ 기타_____	

20. 7살 보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20-1. 낮 시간 동안 아이는 누가 돌보니까?
① 내가 돌본다 ② 가족들이 돌본다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 ④ 기타_____

20-2.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가 어울리지 못해서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근처에 없어서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서
④ 아이가 너무 어려서 ⑤ 돈이 없어서
⑥ 기타_____

20-3.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데 드는 돈을 나라에서 도와주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20-4.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① 아이 키우는 법을 배우고 싶다
②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③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돈을 도와주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아야 한다
⑤ 기타_____

21.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해 나라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까?(한가지만)

- ① 생활비를 도와줌 ② 병원비를 도와줌 ③ 어린이집 보육비를 도와줌
④ 직업을 갖도록 도와줌 ⑤ 아이 교육을 잘 시키도록 도와줌
⑥ 기타_____

일반적 배경

1.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2. 남자입니까? 또는 여자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3. 몇 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까?

_____년

4.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 ① 중국 ② 일본 ③ 베트남 ④ 필리핀 ⑤ 몽골
⑥ 태국 ⑦ 우즈베키스탄 ⑧ 캄보디아 ⑨ 기타_____

5. 한국국적(nationality)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지만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③ 없다 ④ 기타_____

6. 한국국적을 받는데 또는 신청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 ① 남편이 안해주려고 해서 ②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③ 말이 안통해서 ④ 기타_____

7. 결혼 상태는 무엇입니까?

- ① 남편(아내)이 있음 ② 남편(아내)이 죽었음
③ 이혼 ④ 기타_____

8. 한국에 오기 전에 학교는 모두 몇 년 동안 다녔습니까?

_____년

9.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외국인노동자						
설문유형	면접자 고유번호		월	일	일련번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본 설문지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고 설문을 완성하시면 성의껏 준비한 감사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지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책임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e-mail: hjchoi@swu.ac.kr

1. 건강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약을 먹거나 치료해야 하는 병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병의 이름:_____)

3. 건강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직장건강보험 ③ 지역건강보험 ④ 모르겠다

4.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는 누가 냅니까?

- ① 내가 낸다 ② 회사가 낸다 ③ 건강보험으로 낸다
④ 친구가 낸다 ⑤ 교회나 단체가 낸다

5.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으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6.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합니까?

- ① 병원에 갈 돈이 있다 ② 아무도 없다 ③ 친구 ④ 직장사람 ⑤ 교회나 단체

7. 지난 1년 동안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으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p>7-1.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돈이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직장에서 못 가게 해서 ④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⑤ 말이 통하지 않아 ⑥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 ⑦ 기타_____</p> <p>7-2.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① 약을 먹거나 발랐다 ② 그냥 쉬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했다 ④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⑤ 기타_____</p>

8. 수술이나 입원해야 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9.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십니까?

_____ 원

10. 생활비는 충분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조금 적다 ③ 적당하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11. 지난 1년 동안 밥을 굶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2.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정말로 밥을 굶은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번-3번 ③ 4번-6번 ④ 7번-9번 ⑤ 10번 이상



12-1.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직장사람
④ 교회나 단체 ⑤ 기타_____

13.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 ① 직장숙소(기숙사) ② 내가 얻은 집 ③ 친구의 집
④ 교회나 단체에서 마련해 준 곳 ⑤ 기타_____

14. 방값으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 ① 돈을 내지 않는다 ② 10만원 ③ 11만원-20만원 ④ 21만원-30만원 ⑤ 31만원 이상

15.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나 공원 등 밖에서 잔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번-3번 ③ 4번-6번 ④ 7번-9번 ⑤ 10번 이상



15-1. 잘 곳이 없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직장사람
④ 교회나 단체 ⑤ 기타_____

16.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지 않는다 ②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공장일
 ③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④ 서비스 일
 ⑤ 장사 ⑥ 농사
 ⑦ 농장 ⑧ 기타_____



16-1. 월급과 수당을 모두 합해 한 달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16-2. 지금 일하는 곳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정부에서 소개 ② 친구가 소개 ③ 직장 사람이 소개
 ④ 교회나 단체가 소개 ⑤ 광고를 보고 찾았다
 ⑥ 기타_____

17. 다음 중 한국에서 받은 교육에 모두 0표 해 주세요.

- ① 한국어교육 ② 컴퓨터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한국문화교육 ⑤ 기타_____

18.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하나에 0표 해 주세요.

- ① 한국어교육 ② 컴퓨터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한국문화교육 ⑤ 기타_____

19.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1번 '모른다'에 알고 있으면 2번 '안다'에 0표 해주세요.

19-1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노동자는 직장에서 모두 건강보험을 들어주어야 한다.	1. 모른다	2. 안다
19-2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는 대한민국 정부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 모른다	2. 안다
19-3 산업재해(직장에서 일하던 중 다쳤을 때)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모른다	2. 안다
19-4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쉼터(shelter)가 있다.	1. 모른다	2. 안다

20.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다음의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정부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조금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20-1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도 건강보험을 들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20-2 잘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쉼터(shelter)가 필요하다	1	2	3	4
20-3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얼마동안이라도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20-4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일반적 배경

1.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2. 남자입니까? 또는 여자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 몇 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까?

_____년

4.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인도네시아 ④ 스리랑카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네팔 ⑧ 몽골
 ⑨ 기타_____

5. 어느 나라 국적(nationality)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인도네시아 ④ 스리랑카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네팔 ⑧ 몽골
 ⑨ 없다 ⑩ 기타_____

6. 외국인등록증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7. 결혼은 하셨습니까?

- ① 하지 않았다 ② 했다

8. 지금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 ① 없다(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② 있다(다음 질문에 답해주세요)

동거가족

1.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누구입니까?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 성별, 그리고 나이를 써주세요.

	관계	성별	나이
예	아내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	26 세
1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세
2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세
3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세
4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세

2. 첫째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이 자녀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② 한국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 ③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④ 기타_____

3. 첫째 자녀가 8세 이상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② 한국말을 못해서
- ③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④ 학교에 다녔으나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 ⑤ 돈이 없어서 ⑥ 기타_____

4. 둘째 자녀가 8세 이상이라면 이 자녀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② 한국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 ③ 다른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④ 기타_____

5. 둘째 자녀가 8세 이상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② 한국말을 못해서
- ③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④ 학교에 다녔으나 힘들어서 그만두었다
- ⑤ 돈이 없어서 ⑥ 기타_____

6.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낮 시간 동안 누가 돌보아 줍니까?

- ① 집에서 혼자 있다 ② 형제(자매)가 ③ 아내(남편)가
- ④ 친구나 이웃들이 ⑤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 ⑥ 기타_____

7.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하나만 고르세요)

- ① 생활비 부족 ② 사는 곳(집)이 나쁨
- ③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려움 ④ 아이들 교육
- ⑤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⑥ 기타_____

외국인노동자		
--------	--	--

Төрөл

Судлаачын дугаар

--	--	--

Сар

Өдөр

--	--

Сериал дугаар

Солонгост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 иргэд

рүү хандса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СУДАЛГАА

Сайн байна уу?

Юуны өмнө манай судалгаанд оролцохоор үнэтэй цагаа зориулж байгаад баярлалаа.

Энэхүү судагаа нь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ын шилжин суугчдын амьдралын байдал боло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хэрэгцээний талаарх суурь материал цугл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оос санхүүжүүлэн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судалгаа юм. Эрхэм хүндэт оролцогч таны хариулт болгон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д чухал материалиар ашиглагдах болно.

Цаг зав муутай ч гэсэн багахан цагийг судалгаанд зориулвал их талархах болно. Мөн таны бөгөлсөн судалгааны хариулт боло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илд ашиглах бөгөөд өөр бусад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гүй болохыг амлаж байна. Та үнэн зөвөө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ж өгнө үү.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ахад яг 30минут болох ба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санд талархалаа илэрхийлж бяцхан гарын бэлэг өгөх болно.

Судалгаанд оролцсонд дахин талархал илэрхийлж, амьдралд тань аз жаргал эрүүл энхийг хүсэн ерөөе.

2012 он 7сар

Судалгааг хариуцагч Соёлий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тэнхимийн эрхлэгч Чүэ Хэ Жи

☎ 

e-mail: hjchoi@swu.ac.kr

1. Таны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ал ямар вэ?

① маш муу ② муу ③ хэвийн ④ сайн ⑤ маш сайн

2. Эм уух юмуу эмчилгээ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эй өвчин бий ю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Өвчиний нэр: _____)

3. Эрүүл мэндийн даатгал байгаа юу?

① байхгүй ② ажлын газрынх ③ орон нутгийнх ④ мэдэхгүй

4. Гэмтэх юмуу өвдөөд эмнэлэгт очвол эмнэлэгийн зардалыг хэн төлдөг вэ?

① Би ② ажлын газар ③ ЭМД-аар төлдөг ④ найз ⑤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

5. Өнгөрсөн 1жилийн турш эмнэлэгт үзүүлэх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үнээс тусламж ав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ч байсан у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сан

6. Эмнэлэгт үзүүлэх мөнгөгүй үедээ хэнээс тусламж хүсдэг вэ?

① үзүүлэх мөнгө бий ② хэн ч байхгүй ③ найз

④ ажлын хүн ⑤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

7. Өнгөрсөн 1жил өвдсөн юмуу гэмтсэн үедээ эмнэлэг явж чадаагүй тохиолдол байгаа юу ?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7-1. өвдсөн эсвэл гэмтсэн хирнээ эмнэлэг явж чадаагүй шалтгаан юу вэ?
① Мөнгөгүй ② цаг байхгүй ③ ажлаас явуулаагүй
④ эмнэлэг хаана байдгыг мэдэхгүй ⑤ хэл мэдэхгүй ⑥ хууль бус учираас айгаад ⑦ бусад _____

7-2 эмнэлэг явж чадаагүй бол яаж эмчилсэн бэ?
① Эм ууж, эм түрхэж ② амарч ③ өөрийн орны аргыг хэрэглэсэн
④ юу ч хийж чадаагүй ⑤ бусад _____

8. Мэс засалд орох эсвэл эмнэлэгт хэвт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үед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тусламж авч байсан уу?

- ① үгүй ② тийм

9. Амьжиргааны мөнгөнд сард хэдийг зарцуулдаг вэ?

_____ вон

10. Амьжиргааны мөнгө хэр хангалттай байдаг вэ?

- ① маш бага ② бага ③ боломжийн ④ хангалттай ⑤ маш хангалттай

11. Өнгөрсөн 1жил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оолгүй хонох үедээ хүнээс тусламж ав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ч байсан уу?

-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12. Өнгөрсөн 1жил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эдэн удаа хоосон хонож байсан бэ?

- ① байхгүй ② 1-3 удаа ③ 4-6 удаа ④ 7-9 удаа ⑤ 10-аас дээш



12-1.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оолгүй хонох болох үед хэн тусалсан бэ?

① Хэн ч туслаагүй ② найз ③ ажлын хүн

④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 ⑤ бусад _____

13. Одоо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газар чинь ямар газар вэ?

① ажилчины дотуур байр ② хөлсний байр ③ найзын гэр

④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ас бэлдэж өгсөн байр ⑤ бусад _____

14. Байрныхаа хөлсөнд сард хэдийг төлдөг вэ?

① мөнгө төлдөггүй ② 100мянга ③ 110-200мянга ④ 210-300мянга ⑤ 310-аас дээш

15. Өнгөрсөн 1 жил хонох газаргүйн улмаас гадаа гудамжинд хонож байсан уу? Хэдэн удаа ?

① байхгүй ② 1-3 удаа ③ 4-6 удаа ④ 7-9 удаа ⑤ 10-аас дээш



15-1. Хонох газаргүй болоход чинь хэн тусалж байсан бэ?

① Хэн ч туслаагүй ② найз ③ ажлын хүн

④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 ⑤ бусад _____

16. Одоо ямар ажил хийж байна вэ?

① ажил хийдгүй ② энгийн үйлдвэрийн ажил

③ ур чадвар шаардсан үйлдвэрийн ажил

④ үйлчилгээний ажил ⑤ наймаа ⑥ газар тариалан

⑦ тариалангын талбай ⑧ бусад _____



16-1. Сарын цалин нэмэгдэл нийлээд сард дундажаар хэдийг олдог вэ?
_____ мянган вон

16-2. Одоо ажиллаж байгаа газраа яаж олсон бэ?

① Засгийн газар танилцуулсан ② найз танилцуулсан

③ ажлын хүн танилцуулсан ④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

танилцуулсан ⑤ зараас харсан ⑥ бусад _____

17. Дараах хичээлүүдээс Солонгост ирээд хамрагдсан хичээлээ дугуйлна уу.

①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хичээл ② компьютерийн хичээл ③ ажлын техникийн хичээл

④ Солонгос соёлын хичээл ⑤ бусад _____

18. Гадаад ажилчидад зайлшгүй хэрэгтэй гэж боддог хичээлээ дугуйлна уу.

① Солонгос хэл ② компьютер ③ ажлын техникийн хичээл

④ Солонгос соёлын хичээл ⑤ бусад _____

19.Гадаад ажилчидад зориулсан хөтөлбөрүүдийн талаар та хэр мэдээлэлтэй вэ?

Мэдэхгүй бол 1 дугаарыг “мэдэхгүй” гэж, мэдэж байгаа бол 2 дугаарыг “мэднэ” гэж дугуйлна уу.

19-1 Ажил хийж буй гадаад ажилчинд ажлын газраас эрүүл мэндийн даатгалыг шийдэж өгнө.	1.мэдэхгүй	2.мэднэ
19-2 мэс засалд орох юмуу эмнэлэгт хэвт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ч мөнгөгүй тохиолдолд гадаад ажилчин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ын газраас тусламж хүсэж болно.	1.мэдэхгүй	2.мэднэ
19-3 Үйлдвэрийносолд(ажлын байран дээр гэмтсэн үед) орсон тохиолдолд нөхөн олговор авч болно.	1.мэдэхгүй	2.мэднэ
19-4 Хонох газаргүй хүмүүст зориулсан хоноглох байр байдаг.	1.мэдэхгүй	2.мэднэ

20. Гадаад ажилчидад зориулсан доорхи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хийж өгөх шаардлага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уу?

	Огт хэрэггүй	Нээх хэрэггүй	Жоохон хэрэгтэй	Маш хэрэгтэй
20-1 Бүртгэлгүй гадаад ажилчиды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даатгалыг хариуц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20-2 Хонох газаргүй гадаад ажилчидад хоноглох байр хэрэгтэй.	1	2	3	4
20-3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оолгүй хонож байгаа гадаад ажилчидад хэсэг хугацаанд ч гэсэн тусл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20-4Солонгост амьдарч байгаа гадаад ажилчидын хүүхдүүдийг сургуульд сурч боловсроход тусл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 Ерөнхий асуулт >

1. Та хэдэн онд төрсөн бэ?

_____ он

2. Та Эрэгтэй юу, эмэгтэй юу?

① эрэгтэй ② эмэгтэй

3. Та хэдэн онд Солонгост орж ирсэн бэ?

_____ он

4. Та хаанаас ирсэн бэ?

① Хятад ② Вьетнам ③ Индонези ④ Шри Ланк ⑤ Филиппин

⑥ Тайван ⑦ Непал ⑧ Монгол ⑨ Бусад _____

5. Аль улсын иргэншилтэй бэ?

① Хятад ② Вьетнам ③ Индонези ④ Шри Ланк ⑤ Филиппин

⑥ Тайван ⑦ Непал ⑧ Монгол ⑨ Бусад _____

6.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байгаа ю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7. Гэрлэсэн үү?

① Гэрлээгүй ② Гэрлэсэн

8. Одоо Солонгост гэр бүлийнхэнтэй хамт амьдардаг уу?

① үгүй ② тийм

< Гэр бүлтэйгээ амьдардаг >

1. Одоо гэр бүлийнхээ хэн хэнтэй амьдарч байна? Гэр бүлийн харилцаа болон нас, хүйсийг

бичнэ үү.

	Харилцаа	Хүйс		Нас
Жнь:	Эхнэр	эр	эм	26нас
1		эр	эм	нас
2		эр	эм	нас
3		эр	эм	нас
4		эр	эм	нас

2. Том хүүхэд чинь 8-аас дээш насных бол ямар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вэ?

①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гүй ②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③ Гадаадаас ирсэн хүүхдийн сургуульд ④ бусад _____

3. Том хүүхэд чинь 8-аас дээш настай хирнээ сургуульд явдаггүй шалтгаан юу вэ?

① сургууль авдаггүй ② солонгос хэл мэдэхгүй ③ сургууль хайж байгаа

④ сургуульд явж байгаад хэцүү болхоор

болисон ⑤ мөнгөгүй ⑥ бусад _____

4. Хоёр дахь хүүхэд чинь 8-аас дээш насных бол ямар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вэ?

①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гүй ②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③ Гадаадаас ирсэн хүүхдийн сургуульд ④ бусад _____

5. Хоёр дахь хүүхэд чинь 8-аас дээш настай хирнээ сургуульд явдаггүй шалтгаан нь юу вэ?

① сургууль авдаггүй ② солонгос хэл мэдэхгүй ③ сургууль хайж байгаа

④ сургуульд явж байгаад хэцүү болхоор болисон ⑤ мөнгөгүй

⑥ бусад _____

6. 7-оос доош насны хүүхэдтэй бол өдрийн цагаар хэн хардаг вэ?

① гэртээ ганцаараа ② ах(эгч) нь ③ эхнэр(нөхөр) хардаг

④ найз юмуу хөрш айл ⑤ цэцэрлэг ⑥ бусад _____

7. Солонгост гэр бүлтэйгээ амьдрахад хамгийн хэцүү зүйл нь юу вэ?(Нэгийг сонгоно уу)

① Амьжиргааны мөнгө дутмаг ② амьдарч буй гэр муу

③ өвдөх юмуу гэмтэх үед эмчлүүлэхэд хүндрэлтэй байдаг ④ хүүхдийн боловсрол

⑤ хэзээ баригдах бол гэж түгшдэг ⑥ бусад _____

☺ Судалгаанд хамрагдсанд Баярлалаа.

Pagsusuri sa Kalagayan ng Pamumuhay at Pangangailang-Sosyal ng mga Dayuhang Manggagawa

Kumusta?

Maraming salamat sa inyong pagpapaunlak sa pagsali sa pagsusuring ito.

Ang layunin ng pagsusuring ito ay upang makakalap ng mga pangunahing impormasyon ukol sa kalagayan ng pamumuhay at pangangailang-sosyal ng mga dayuhang manggagawa sa Korea. Ang pagsusuring ito ay suportado 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hat ng impormasyong inyong ipamamahagi ay gagamitin lamang sa pag-aaral at tinitiyak naming maitatago ang inyong pagkakilanlan. Aabutin ng tatlongpung minuto upang sagutan ang pagsusuring ito. Magbibigay kami ng kaunting regalo bilang pasasalamat sa inyong pagsagot sa pagsusuring ito.

Maraming salamat muli.

2012 Hulyo

Punong Tagapagsaliksik
Propesor Hye Ji Choi
Seoul Women's University
☎ 
e-mail: hjchoi@swu.ac.kr

1. Kumusta ang iyong kalusugan?
 ①malala ②masama ③ayos lang ④mabuti ⑤napakabuti
2. Mayroon ka bang karamdaman na nangangailan ng pagsusuri ng manggagamot/ doktor?
 ①wala ②meron (kung meron anong sakit:_____)
3. Mayroon kang health insurance?
 ①wala ②meron (health insurance na bigay ng kumpanya)
 ③meron (health insurance na bigay ng gobyerno lokal/nasyonal) ④hindi ko alam
4. Sino ang nagbayad o nagbabayad ng iyong gastusin nung ikaw ay naospital?
 ①ako ②ang amo ko ③health insurance ④kaibigan ⑤simbahan o NGO
5. Noong nakaraang taon, nangailangan ka ba ng tulong-pinansyal para makapagpagamot saduktor?
 ①Hindi ②Oo
6. Kapag wala kang pera para makapagpagamot, sino ang hinihingan mo ng tulong?
 ①hindi ako nangailangan ng tulong ②wala kanino man ③sa mga kaibigan
 ④sa kapwa manggagawa ⑤sa simbahan o NGO
7. Noong nakaraang taon, hindi ka pa nakapagpakonsulta o nakapagpagamot sa doktor kahit na kinailangan mo ito dahil may sakit o karamdaman ka?
 ①Hindi ②Oo



7-1 Ano ang pangunahing dahilan kung bakit hindi ka nakapagpakonsulta onakapagpagamot sa doktor?

- ①kawalan ng pera ②kawalan ng oras
- ③hindi pinayaganng amo ④hindi alam kung saan ang ospital
- ⑤nababa-halang makipag-usap sa salitang Koreano
- ⑥natatakot dahil sa illegal na katayuan ⑦_____

7-2 Ano ang iyong ginawa para gumaling o bumuti ang iyong sakit o karamdaman dahil hindi ka nakapagpakonsulta sa doktor?

- ①uminom ng gamot ②nagpahinga ③gumamit ng alternatibo/ tradisyonal na paggamot
- ④walang ginawa kahit ano ⑤_____

8. Nagkaroon ka ba ng tulong na pinansyal sa pamahalaan ng Korea nang naospital ka para magamot o maoperahan?

- ①Hindi ②Oo

9. Magkano ang iyong pangkalahatang gastusin sa isang buwan?

_____ Won

10. Sapat ba ang iyong budget para matustusan ang lahat ng iyong pangangailangan?

- ①kulang na kulang ②kulang ③napagkakasya lamang

- ④sapat ⑤sapat na sapat

11. Noong nakaraang taon nangailangan ka bang tulong pinansyal dahil kinulang ka maging sa pambili ng pagkain?

- ①Hindi ②Oo

12. Noong nakaraang taon, ilang beses kang nawalan ng pambili ng pagkain?

- ①0 beses ②isa-tatlong beses ③apat-anim na beses

- ④pito-siyam na beses ⑤mahigit sampung beses



12-1 Sino ang tumulong sa iyo nung nawalan ka ng pagkain?

- ①wala kahit sino ②mga kaibigan ③kapwa manggagawa

- ④simbahan o NGO ⑤ibang tao _____

13. Saan ka nakatira ngayon?

- ①pansamantalang tirahan na bigay ng kumpanya ②inuupahan kong kuwarto

- ③pansamantalang tirahan na bigay ng simbahan o NGO

- ④kuwartong inuupahan ng kaibigan ⑤ibang tirahan _____

14. Magkano ang iyong binabayaran sa upa?

- ①wala ②100,00won ③110,000-200,000won

- ④210,000-300,000won ⑤mahigit 310,000won

15. Noong nakaraang taon, ilang beses kang nawalan ng matuluyan?

- ①0 beses ②isa-tatlong beses ③apat-anim na beses
④pito-siyam na beses ⑤mahigit sampung beses



15-1 Sino ang tumulong sa iyo noong nawalan ka ng matuluyan? ①wala kahit sino ②mga kaibigan ③kapwa manggagawa ④simbahan o NGO ⑤ibang tao_____

16. Ano ang iyong trabaho?

- ①walang trabaho ②pangkaraniwang manggagawa ③manggagawang may kasanayan
④service worker ⑤seller ⑥katulong sa pagsasaka
⑦iban trabaho_____



16-1 Magkano ang iyong kabuuang sahod sa isang buwan? _____ Won
16-2. Paano ka nakapasok sa kasalukuyan mong trabaho? ①sa ahensiya ng gobyerno ②sa tulong ng kaibigan ③sa tulong ng kapwa manggagawa ④sa tulong ng simbahan o NGO ⑤mula sa anunsyo/patalastas ⑥sa ibang paraan_____

17. Piliin ang mga programang pang-edukasyon na nasalihan mo sa Korea.

- ①Korean language ②computer ③job skill
④Korean culture ⑤ibang programa_____

18. Piliin ang mga programang sa iyong palagay ay mahalaga para sa mga dayuhang manggagawa.

- ①Korean language ②computer ③job skill ④Korean culture
⑤ibang programa_____

19. May kaalaman ka ba sa mga sumusunod na programa? Kung meron, lagyan ng check ang unang hanay, kung wala, ang pangalawang hanay.

19-1 Ang mga dayuhang manggagawa ay kailangang may health insurance na bigay kumpanya na kanilang pinagtatrabahuan	Alam	Hindi Alam
19-2 Ang mga dayuhang manggagawa ay may karapatang tumanggap ng tulong na pinansyal kapag naospital o naoperahan at wala itong perang pangastos sa ospital.	Alam	Hindi Alam
19-3 Ang mga dayuhang manggagawa ay may karapatang tumanggap ng kabayaran kapag ito ay nadisgrasya habang nasa trabaho sa kumpanya kung ang kumpanya ay may insurance para sa mga aksidenteng nagaganap sa trabaho.	Alam	Hindi Alam
19-4 May mga shelter o mga masisilungan na pinamamahalaan ng NGO para sa mga walang matutuluyang manggagawa.	Alam	Hindi Alam

20. Gaano ang iyong pagsang-ayon sa mga sumusunod:

- ①Hindi sumasang-ayon ②Medyo sinasang-ayunan
 ③Sinasang-ayunan ④Lubos ang Pagsang-ayon

20-1 Kailangang bigyan ng health insurance ng kani-kanilang mga kumpanya ang mga dayuhang manggagawa.	1	2	3	4
20-2 Kailangang maglaan ng mga 'masisilungan' ang pamahalaan ng Korea para sa mga dayuhang manggagawa kapag ang mga ito ay walang matutuluyankahit pa ang mga ito ay illegal.	1	2	3	4
20-3 Kailangang may karapatang tumanggap ng tulong pinansyal sa oras ng kagipitan ang mga dayuhang manggagawa kahit pa ang mga ito ay illegal.	1	2	3	4
20-4 Kailangang payagang makapasok at makapag-aral sa paaralan ang mga anak ng mga dayuhang mangga-gawa kahit pa ang mga ito ay illegal.	1	2	3	4

Personal na Impormasyon

1. Kailan ang taon ng iyong kapanganakan? _____
2. Ano ang iyong kasarian?
①Lalaki ②Babae
3. Kailan (taon) ka pumasok sa Korea?_____
4. Saang bansa ka galing?
①Tsina ②Vietnam ③Indonesia ④Sri Lanka ⑤Pilipinas
⑥Thailand ⑦Nepal ⑧Mongolia ⑨Ibang bansa_____
5. Ano ang iyong nasyonalidad?
①Tsino ②Vietnamese ③Indonesian ④Sri Lankan ⑤Pilipino ⑥Thai
⑦Nepalese ⑧Mongolian ⑨Walang Nasyonalidad ⑩Iba _____
6. Ikaw ba ay rehistradong dayuhan?
①Hindi ②Oo
7. Ano ang iyong marital status?
①May asawa ②Walang asawa
8. Kasama mong naninirahan sa Korea ang iyong pamilya?
①Hindi (*Kung hindi ang iyong sagot, dito nagtatapos ang pagsusuri. Salamat po.*)
②Oo (*Kung oo ang iyong sagot, mangyari po lamang ay magpatuloy sa pagsagot sa mga sumusunod na katanungan*).

pamilya

1. Magbigay impormasyon tungkol sa kaugnayan, kasarian, at edad ng miyembro ng pamilya na kasama mong naninirahan sa Korea.

	Kaugnayan sa Iyo	Kasarian		Edad
Halimbawa:	Asawa	Lalaki	Babae	26 Taong gulang
1		Lalaki	Babae	Taong gulang
2		Lalaki	Babae	Taong gulang
3		Lalaki	Babae	Taong gulang
4		Lalaki	Babae	Taong gulang

2. Kung ang iyong panganay na anak ay nasa edad ng pumapasok sa paaralan, nag-aaral ba ito?

①Hindi ②Oo, Korean school③Oo, hindi Korean school④Iba_____

3. Kung hindi nag-aaral, ano ang dahilan?

①hindi tinanggap ng paaralan ②problema sa wika (hindi marunong magsalita ng Korean)

③Naghahanap pa lang ako ng paaralan para sa kanya

④hindi niya kayang makipagsabayan sa pag-aaral sa ibang kklase

⑤problemang pinansyal⑥ibang kadahilanan_____

4. Kung ang iyong pangalawang anak ay nasa edad na para pumasok sa paaralan, nag-aaral din ba ito?

①Hindi ②Oo, sa Korean school ③Oo, hindi Korean school④Iba_____

5. Kung hindi nag-aaral, ano ang dahilan?

①hindi tinanggap ng paaralan ②problema sa wika (hindi marunong magsalita ng Korean)

③Naghahanap pa lang ako ng paaralan para sa kanya

④hindi niya kayang makipagsabayan sa pag-aaral sa ibang kklase

⑤problemang pinansyal⑥ibang kadahilanan_____

6. Kung meron kang anak na hindi pa nag-aaral, sino ang nag-aalaga nito habang nasa trabaho ka sa araw.

①naiiwang mag-isa sa bahay ②ang mga nakakatandang kapatid

③ang asawa ko ④mga kaibigan ⑤pumupunta sa kinder garden

⑥ibang tao_____

7. Ano ang pinakamalaking problemang kinakaharap ninyo sa paninirahan sa Korea?
(Pumili ng isa.)

①kakulangan ng perang gastusin sa pang-araw-araw na pangangailangan

②tirahan ③paggamit ng mga serbisyong pangkalusugan ④edukasyon ng mga anak

⑤walang katatagang katayuan sa kadahilang hindi nakapagrehistro bilang legal na manggagawa

⑥ibang problema_____

난민		
설문유형	면접자	고유번호

월	일	

일련번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본 설문지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고 설문을 완성하시면 성의껏 준비한 감사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지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책임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e-mail: hjchoi@swu.ac.kr

1. 건강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약을 먹거나 치료해야 하는 병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병의 이름:_____)

3. 건강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직장건강보험 ③ 지역건강보험 ④ 모르겠다



3-1.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십니까?
_____만원



4.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5. 병원에 갈 돈이 없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② 친구 ③ 교회
④ 난민지원단체 ⑤ 대한민국 ⑥ 기타_____

6. 지난 1년 동안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6-1.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에 모두 0표 하세요.

① 돈이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④ 말이 통하지 않아
⑤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 ⑥ 기타_____

6-2.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① 약을 먹거나 발랐다 ② 그냥 쉬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했다 ④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⑤ 기타_____

7. 수술이나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7-1. 입원했을 때 병원비는 누가 냈습니까?
① 내가 ② 친구가 ③ 교회 ④ 난민지원단체
⑤ 대한민국정부 ⑥ 기타_____

8.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십니까?

_____ 원

9. 생활비는 충분하십니까?

- ① 매우 적다 ② 조금 적다 ③ 적당하다 ④ 조금 많다 ⑤ 매우 많다

10. 지난 1년 동안 밥을 굶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0-1. 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친구 ③ 교회
④ 난민지원단체 ⑤ 기타_____

11. 지난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정말로 밥을 굶은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번-3번 ③ 4번-6번 ④ 7번-9번 ⑤ 10번 이상

12.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 ① 난민지원센터에서 마련해 준 곳 ② 내가 얻은 방
③ 친구가 얻은 방 ④ 교회에서 마련해 준 곳
⑤ 기타_____

13. 방값으로 한 달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 ① 돈을 내지 않는다 ② 10만원 ③ 11만원-20만원
④ 21만원-30만원 ⑤ 31만원 이상

14.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나 공원 등 밖에서 잔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1번-3번 ③ 4번-6번 ④ 7번-9번 ⑤ 10번 이상



14-1. 잘 곳이 없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친구 ③ 교회나 단체
 ④ 기타_____

15.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지 않는다 ②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공장일
 ③ 기술이 필요한 공장일 ④ 서비스 일
 ⑤ 장사 ⑥ 농사
 ⑦ 농장 ⑧ 기타_____



16-1. 월급과 수당을 모두 합해 한 달 평균 얼마를 버십니까?
 _____만원
 16-2. 지금 일하는 곳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정부에서 소개 ② 친구가 소개
 ③ 교회나 난민지원단체가 소개 ④ 광고를 보고 내가 찾았다
 ⑤ 기타_____

16. 일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②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③ 건강이 좋지 않아서
 ④ 한국말을 잘 못해서 ⑤ 기타_____

17. 다음 중 한국에서 받은 교육에 모두 0표 해 주세요.

- ① 한국어교육 ② 컴퓨터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한국문화교육 ⑤ 기타_____

18. 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하나에 0표 해 주세요.

- ① 한국어교육 ② 컴퓨터교육 ③ 직업기술교육
 ④ 한국문화교육 ⑤ 난민신청방법 교육 ⑥ 기타_____

19. 난민지위인정자는 A번을, 난민지위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는 B번을 답해 주세요.

A. 난민지위 인정자를 위해 다음의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필 요 없 음	별 로 필 요 없 음	조 금 필 요 함	매 우 필 요 함
A-1 살 곳이 없는 난민지위 인정자는 나라에서 싼 값으로 빌려주는 아파트(국민임대주택)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1	2	3	4
A-2 난민지위 인정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2	3	4

B. 난민지위 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자를 위해 다음의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정부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필 요 없 음	별 로 필 요 없 음	조 금 필 요 함	매 우 필 요 함
B-1 조금씩 국가에 돈을 내고 아플 때 돈을 조금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B-2 살 곳이 없는 난민지위 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자는 나라에서 싼 값으로 빌려주는 아파트(국민임대주택)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1	2	3	4
B-3 돈이 없어 먹을 것과 잘 곳이 없는 난민지위 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자는 대한민국정부에 생활비를 도와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1	2	3	4
B-4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지위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아이들이 한국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B-5 난민지위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직업상담, 직업소개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2	3	4
B-6 난민지위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다.	1	2	3	4

일반적 배경

1.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2. 남자입니까? 또는 여자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3. 몇 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까?

_____년

4.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 ① 파키스탄 ② 스리랑카 ③ 네팔 ④ 중국 ⑤ 미얀마
⑥ 우간다 ⑦ 방글라데시 ⑧ 코트디브아르 ⑨ 기타_____

5. 어느 나라 국적(nationality)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파키스탄 ② 스리랑카 ③ 네팔 ④ 중국 ⑤ 미얀마
⑥ 우간다 ⑦ 방글라데시 ⑧ 코트디브아르 ⑨ 국적이 없다
⑩ 기타_____

6. 당신의 상태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 ①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② 난민지위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다
③ 난민지위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④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았다

6-1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면 인정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_____년

6-2 난민지위를 신청했다면 신청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_____년

7. 결혼은 하셨습니까?

- ① 하지 않았다 ② 했다

8. 지금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6.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낮 시간 동안 누가 돌보아 줍니까?

- ① 집에서 혼자 있다 ② 아이의 형제(자매)가 ③ 아내(남편)가
④ 친구나 이웃들이 ⑤ 어린이 집 또는 유치원 ⑥ 기타_____

17. 대한민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하나만 고르세요)

- ① 생활비 부족 ② 사는 곳(집)이 나쁨 ③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 어려움
④ 아이들 교육 ⑤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⑥ 기타_____

R							
Type de sondage	N° de sondé(e)		Jour	Mois	Année	N° de série	

Enquête sur l'état de la protection sociale pour les immigrés en Corée du Sud

Juillet 2012

Mme, Mlle et M.,

Merci de vouloir nous accorder votre temps précieux.

Je mène avec mes collègues une recherche avec le concour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droits humains ayant pour objet d'établir les données de base sur les conditions de vie et les besoins de la protection sociale pour les immigrés en Corée du Sud. Votre participation à cette enquête rendra possible la mise en œuvre du résultat de notre recherche.

Je tiens à porter à votre connaissance et vous promet que vos réponses et le résultat des analyses statistiques ne s'utiliseront que pour le but purement scientifique, non pour aucun d'autre. Ce qui nous permet de vous prier de vouloir répondre de manière plus précise et honnête que possible.

La participation de votre part d'environ une demi-heure se récompensera par un très modeste cadeau que nous avons préparé pour vous en remercier.

Merci encore une fois de plus de votre participation.

Je souhaite que votre vie soit toujours pleine de bonheur et de santé.

Mme Hyeji CHOI
Professeur à l'Université des femmes de Séoul
Responsable de la présente recherche

☎ 02-970-5534 / 010-5622-2831
e-mail : hjchoi@swu.ac.kr

1. En quel état de santé êtes-vous ?

- ① Très mauvais ② Mauvais ③ Moyen ④ Bon ⑤ Très bon

2. Êtes-vous porteur ou porteuse d'une maladie pour laquelle vous prenez des médicaments ou des soins médicaux ?

- ① Non ② Oui (Nom de la maladie : _____)

3. Êtes-vous couvert(e) par une assurance maladie en Corée du Sud ?

- ① Non ② Oui (adhésion faite par votre employeur)
③ Oui (adhésion faite par votre collectivité locale) ④ Je ne sais pas.



3-1. Combien payez-vous en moyen par mois pour votre assurance ?

_____ Won sud-coréen

4. Avez-vous fait depuis un an l'expérience d'une précarité où vous manquez du moyen de financement pour votre traitement médical, tellement que vous aviez absolument besoin d'appeler d'autres personnes ou des institutions à votre aide ?

- ① Non ② Oui



5. Dans ce cas, qui vous a apporté son aide ?

- ① Personne ② Ami(e) ③ Institution religieuse (église, cathédrale, temple, etc.) ④ Une association pour les réfugiés ⑤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6. Avez-vous fait depuis un an l'expérience de ne pas consulter un médecin, même si vous étiez blessé(e) ou malade ?

- ① Non ② Oui



6-1. Quelles en sont les raisons ? (Cochez tous les cas concernés)

- ① Parce que je n'avais pas d'argent ② Faute de temps
③ Parce que je ne savais pas où aller consulter un médecin
④ En raison de problèmes de langues ⑤ Parce que j'étais sans-papier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6-2. Dans ce cas, comment avez-vous pris soin de vous ?

- ① J'ai pris des médicaments. ② Je me suis reposé(e).
③ J'ai fait comme on en fait dans mon pays d'origine.
④ Je n'ai rien fait.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7. Avez-vous eu une occasion d'être opéré(e) ou hospitalisé(e) ?

- ① Non ② Oui



7-1. Qui a payé votre opération ou hospitalisation ?

- ① Moi-même ② Ami(e) ③ Institution religieuse
④ Une association pour les réfugiés
⑤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8. Combien dépensez-vous par mois en moyen pour le ménage en Corée du Sud ?

_____ Won sud-coréen

9. Est-ce que vous pensez que votre dépense du ménage est suffisante pour vivre en Corée ?

- ① Très peu ② Peu ③ Moyen ④ Suffisante ⑤ Très suffisante

10. Avez-vous fait depuis un an l'expérience d'une précarité où vous deviez appeler quelqu'un à l'aide monétaire pour vous alimenter ?

- ① Non ② Oui



10-1. Dans ce cas, qui vous a apporté son aide ? ① Personne ② Ami(e) ③ Institution religieuse ④ Une association pour les réfugiés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1. Combien de repas avez-vous sauté, par hasard, depuis un an en raison du manque de moyen monétaire ?

- ① Aucun ② 1 à 3 repas ③ 4 à 6 repas ④ 7 à 9 repas ⑤ plus que 10 repas

12. Où vous logez-vous actuellement ?

- ① Logement proposé par une association pour les réfugiés
② Logement que j'ai trouvé ③ Logement que mon ami(e) a trouvé pour moi
④ Logement proposé par une institution religieuse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3. Combien payez-vous par mois pour le loyer ?

- ① Rien ② 100.000Won ③ 110.000 à 200.000Won ④ 210.000 à 300.000Won
⑤ Plus que 310.000Won

14. Combien de fois avez-vous dormi depuis un an, par hasard, sans abri dans la rue ou dans un parc public ?

- ① Aucune ② 1 à 3 fois ③ 4 à 6 fois ④ 7 à 9 fois ⑤ Plus que 10 fois

↓ ↓ ↓ ↓ ↓

14-1. Dans ce cas, qui vous a apporté son aide ?

- ① Personne ② Ami(e)
③ Institution religieuse ou une association pour les réfugiés
④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5. Quelle activité professionnelle menez-vous actuellement en Corée du Sud ?

- ① Aucune ② main-d'œuvre simple ③ main-d'œuvre requérant une technique spécifique
④ Services ⑤ Commerces ⑥ Agriculture ⑦ Fermes
⑧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

15-1. Quel est votre revenu, y compris toutes sortes de prime, par mois en moyen ?

_____ Won sud-coréen

15-2. Par quel intermédiaire êtes-vous employé(e) ?

- ① Par une proposition du gouvernement
② Par l'intermédiaire de mon ami(e)
③ Par une proposition d'une institution religieuse ou d'une association pour les réfugiés
④ Par une publicité de l'employeur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6. Qu'est-ce qui vous amène au sans-emploi ?

- ① Je n'arrive pas à trouver un emploi que j'aimerais prendre
② Il n'y a pas d'offres d'emploi ③ Je ne suis pas en bonne santé pour travailler

④ Je ne parle pas très bien coréen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7. Cochez toutes formations que vous avez suivies en Corée du Sud.

① Langue coréenne ② Informatique ③ Formation professionnelle

④ Culture générale de la Corée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8. Cochez toutes formations que vous jugez indispensables pour les réfugiés en Corée du Sud.

① Langue coréenne ② Informatique ③ Formation professionnelle

④ Culture générale de la Corée ⑤ Droits des réfugiés (Droit d'asile, procédure, etc.)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9. Si vous avez obtenu le statut de réfugié, répondez à la question A. Si vous l'attendez ou si vous résidez en Corée du Sud au titre humanitaire, répondez à la question B.

A. Combien pensez-vous qu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doit assurer les mesures de la protection sociale pour **les titulaires du statut de réfugié** ?

	Très peu nécessaire	Peu nécessaire	Nécessaire	Absolument nécessaire
A-1. Un titulaire du statut de réfugié qui ne dispose encore pas d'un moyen de logement peut demander au gouvernement une location (par exemple, un appartement dans l'immeuble bâti national) à bon prix.	1	2	3	4
A-2. Un titulaire du statut de réfugié peut suivre l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et consulter les agents d'emploi dans le cadre des programmes conçus par le gouvernement.	1	2	3	4

B. Combien pensez-vous qu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de la Corée doit assurer les mesures de la protection sociale pour **les demandeurs du statut de réfugié** ou **les résidents au titre humanitaire** ?

	Très peu nécessaire	Peu nécessaire	Nécessaire	Absolument nécessaire
B-1. Ils doivent être couverts par assurance maladie publique qui ne leur coûte pas très cher.	1	2	3	4
B-2. Dans le cas des sans-abri, ils peuvent demander au gouvernement une location (par exemple, un appartement dans l'immeuble bâti national) à bon prix.	1	2	3	4
B-3. Au cas où ils manquent de moyen pour s'alimenter, ni pour se loger, ils peuvent demander au gouvernement une allocation du ménage.	1	2	3	4
B-4. Le gouvernement doit aider leurs enfants à se faire l'éducation dans les écoles en Corée du Sud.	1	2	3	4
B-5. Ils peuvent suivre les formations professionnelles et consulter les agents d'emploi dans le cadre des programmes conçus par le gouvernement.	1	2	3	4
B-6. Le gouvernement doit leur verser au cas échéant une allocation de crèche.	1	2	3	4

Informations générales du sondé ou de la sondée

1. En quelle année êtes-vous né(e) ?

En _____

2. Quel est votre sexe ?

① Masculin ② Féminin

3. En quelle année êtes-vous arrivé(e) en Corée du Sud ?

En _____

4. Quel est votre pays d'origine ?

① Pakistan ② Sri Lanka ③ Népal ④ Chine ⑤ Birmanie ⑥ Ouganda

⑦ Bangladesh ⑧ Côte-d'Ivoire

⑨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5.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

① Pakistanaise ② Sri Lankaise ③ Népalaise ④ Chinoise ⑤ Birmane ⑥ Ougandaise

⑦ Bangladaise ⑧ Ivoirienne ⑨ Aucune

⑩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6. Quel est votre statut actuel ?

① J'ai obtenu le statut de réfugié. ② Je le suis refusé. ③ Je l'attends.



④ J'ai obtenu le statut de résidant au titre humanitaire.

6-1. Depuis combien d'années êtes-vous titulaire du statut de réfugié ?

Depuis _____ ans



6-2. Depuis combien de mois l'attendez-vous ?

Depuis _____ mois

7. Vivez-vous en couple, qu'il s'agisse du mariage ou non ?

- ① Non ② Oui

8. Vivez-vous avec un ou des membres de famille en Corée du Sud ?

- ① Non ② Oui

9. Si vous avez des enfants, ont-ils une nationalité ?

- ① Non ② Oui

10. Cochez le problème le plus difficile pour mener une vie en Corée du Sud.

- ① Manque de moyen pour la dépense du ménage ② Conditions de logement
③ Accès aux services médicaux en cas de maladie ou blessure ④ Éducation des enfants
⑤ Situation irrégulière où vous êtes susceptible d'être expulsé(e)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1-17. Si vous vivez avec un ou des membres de famille en Corée du Sud,

11. Qui sont-ils ?

	Rapport	Sexe	Âge
Exemple	Épouse	Masculin <input checked="" type="checkbox"/> Féminin	26
1		Masculin <input type="checkbox"/> Féminin <input type="checkbox"/>	
2		Masculin <input type="checkbox"/> Féminin <input type="checkbox"/>	
3		Masculin <input type="checkbox"/> Féminin <input type="checkbox"/>	

12. Si votre premier enfant est âgé de plus que 7 ans, à quelle école va-t-il (ou elle) ?

- ① Il (ou Elle) ne va à aucune école.
② À une école où la majorité absolue des écoliers est sud-coréenne
③ À une école internationale
④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3. Si votre deuxième enfant est âgé de plus que 7 ans, à quelle école va-t-il (ou elle) ?

- ① Il (ou Elle) ne va à aucune école.
- ② À une école où la majorité absolue des écoliers est sud-coréenne
- ③ À une école internationale
- ④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4. Si votre premier enfant âgé de plus que 7 ans ne va à aucune école, quelle en est la raison ?

- ① Parce qu'aucune école ne l'a admis(e) ② Parce qu'il (ou elle) ne parle pas coréen
- ③ On est en train d'en chercher une. ④ Il (ou Elle) l'a abandonné à cause des difficultés.
- ⑤ Parce que l'on manque un moyen de financer ses études
-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5. Si votre deuxième enfant âgé de plus que 7 ans ne va à aucune école, quelle en est la raison ?

- ① Parce qu'aucune école ne l'a admis(e) ② Parce qu'il (ou elle) ne parle pas coréen
- ③ On est en train d'en chercher une. ④ Il (ou Elle) l'a abandonné à cause des difficultés.
- ⑤ Parce que l'on manque un moyen de financer ses études
-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6. Si vous avez un ou des enfants âgé de moins de 7 ans, qui s'occupe de lui (elle ou eux) dans la journée ?

- ① Il reste tout seul à la maison. ② La famille s'en occupe.
- ③ Un ami (amie, amis ou amies) ou un voisin (ou des voisins) s'en occupe.
- ④ Il (Elle ou Ils) est confié à la crèche ou à l'école maternelle.
- ⑤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17. Cochez le problème le plus difficile pour mener une vie en famille en Corée du Sud.

- ① Manque de moyen pour la dépense du ménage ② Conditions de logement
③ Accès aux services médicaux en cas de maladie ou blessure ④ Éducation des enfants
⑤ Situation irrégulière où vous êtes susceptible d'être expulsé(e)
⑥ Autres (Si vous voulez préciser : _____)

이주아동		
설문유형	면접자	고유번호

월		일

	일련번호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부디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본 설문지의 응답 및 분석결과는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완성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고 설문을 완성하시면 성의껏 준비한 감사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문지에 응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삶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7월

책임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혜지



e-mail: hjchoi@swu.ac.kr

1. 건강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나쁘다 ② 조금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 약을 먹거나 치료해야 하는 병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병의 이름:_____)

3. 건강보험이 있으십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③ 모르겠다

4.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5. 병원에 갈 돈이 없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음 ② 친구 ③ 교회
④ NGO 단체 ⑤ 대한민국정부 ⑥ 기타_____

6. 지난 1년 동안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6-1. 아프거나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에 모두 0표 하세요.

① 돈이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몰라 ④ 말이 통하지 않아
⑤ 미등록외국인이라 두려워서 ⑥ 기타_____

6-2. 병원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① 약을 먹거나 발랐다 ② 그냥 쉬었다
③ 우리나라에서 하던 방법대로 했다 ④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⑤ 기타_____

13.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 ① 아빠나 엄마가 얻은 집
- ② 아빠나 엄마 친구의 집
- ③ 교회나 단체에서 마련해 준 곳
- ④ 내 친구의 집
- ⑤ 학교 기숙사
- ⑥ 기타_____

14. 지난 1년간 잘 곳이 없어서 길거리나 공원 등 밖에서 잔 적이 몇 번 정도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1번-3번
- ③ 4번-6번
- ④ 7번-9번
- ⑤ 10번 이상



14-1. 잘 곳이 없었을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② 아빠나 엄마 친구 ③ 교회나 단체 ④ 나의 친구 ⑤ 기타_____

15.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학교에 다닌다
- ②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 ③ 아르바이트 한다
- ④ 하는 일이 없다
- ⑤ 기타_____

16. 학교에 다닌다면 어떤 학교에 다닙니까?

- ① 한국학교
- ② 같은 나라 학생들이만 모인 학교
- ③ 여러 나라 아이들이 모인 학교
- ④ 기타_____

17. 한국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 ② 한국말을 못해서
- ③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서
- ④ 돈이 없어서
- ⑤ 기타_____

18. 한국학교에 다닌다면 학교에 들어갈 때나 들어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0표 해주세요.

- 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으려 해서 힘들었다
- ② 아이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다
- ③ 내 나라에서 학교 다닌 학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힘들었다
- ④ 한국어를 못해서 힘들었다
- ⑤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
- ⑥ 기타_____

19. 학교에 다닌다면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조금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20. 학교에 다닌다면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학교에 준비물을 가져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21. 학교가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 ① 집이나 학교에서 공부한다 ② 아르바이트한다
 ③ 친구들과 밖에서 논다 ④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
 ⑤ 기타_____

22. 아빠와 엄마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① 함께 내 나라로 돌아간다 ② 한국에서 계속 산다
 ③ 기타_____

23. 이주아동을 위해 다음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정부가 꼭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음	별로 없음	조금 함	매우 함
23-1 이주아동도 건강보험을 들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23-2 수입이 없는 이주아동 가족은 생계비를 지원해 달라고 대한민국에 요청할 수 있다.	1	2	3	4
23-3 살 곳이 없는 이주아동 가족에게 집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	2	3	4
23-4 이주아동이 한국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23-5 이주아동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23-6 이주아동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일반적 사항

1.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2. 남자입니까? 또는 여자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3. 몇 년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까?

_____년

4.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인도네시아 ④ 스리랑카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네팔 ⑧ 몽골 ⑨ 기타_____

5. 어느 나라 국적(nationality)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인도네시아 ④ 스리랑카 ⑤ 필리핀
⑥ 태국 ⑦ 네팔 ⑧ 몽골 ⑨ 기타_____

6.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7. 대한민국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하고 있는 아빠 또는 엄마와 함께 살려고
② 한국에서 결혼한 엄마와 함께 살려고
③ 기타_____

이주아동		
------	--	--

Төрөл

Судлаачын дугаар

--	--	--

Сар

Өдөр

--	--

Сериал дугаар

Солонгост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 иргэд рүү хандса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тогтолцооны судалгаа

Сайн байна уу?

Юуны өмнө манай судалгаанд оролцохоор үнэтэй цагаа зориулж байгаа танд баярлалаа.

Энэхүү судагаа нь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даадын шилжин суугчдын амьдралын байдал боло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хэрэгцээний талаарх суурь материал цугл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Улсын хүний эрхийн комиссоос санхүүжүүлэн хэрэгжүүлж буй судалгаа юм. Эрхэм хүндэт оролцогч таны хариулт нэг бүр энэхүү судалгаанд чухал материалиар ашиглагдах болно.

Цаг зав муутай ч гэсэн багахан цагийг судалгаанд зориулвал их талархах болно. Мөн таны бөгөлсөн судалгааны хариулт болон судалгааны үр дүнг эрдэм шинжилгээний ажилд ашиглах бөгөөд өөр бусад зорилгоор ашиглахгүй болохыг амлаж байна. Та үнэн зөвөөр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ж өгнө үү.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ахад яг 30минут болох ба асуултанд хариулсанд талархалаа илэрхийлж бяцхан гарын бэлэг өгөх болно.

Судалгаанд оролцсонд дахин талархал илэрхийлж, амьдралд тань аз жаргал эрүүл энхийг хүсэн ерөөе.

2012 он 7сар

Судалгааг хариуцагч Сөүлийн эмэгтэйчүүдийн их сургуулийн

Нийгмийн халамжийн тэнхимийн эрхлэгч Чүэ Хэ Жи



e-mail: hjchoi@swu.ac.kr

1. Таны эрүүл мэндийн байдал ямар вэ?

① маш муу ② муу ③ хэвийн ④ сайн ⑤ маш сайн

2. Эм уух юмуу эмчилгээ хи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өвчин бий ю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Өвчиний нэр:_____)

3. Эрүүл мэндийн даатгал байгаа ю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③ мэдэхгүй

4.Өнгөрсөн жилийн турш эмнэлэгт үзүүлэх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үнээс тусламж ав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ч байсан у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сан

5. Эмнэлэгт үзүүлэх мөнгөгүй үедээ хэнээс тусламж хүсдэг вэ?

① хэнч туслаагүй ② найз ③ цуглаан

④ цагаачдад туслах төв ⑤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⑥ бусад_____

6. Өнгөрсөн 1жил өвдсөн юмуу гэмтсэн үедээ эмнэлэгт үзүүлж чадаагүй тохиолдол байгаа юу ?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6-1. өвдсөн эсвэл гэмтсэн хирнээ эмнэлэг ямар шалтгаанаар явж чадаагүй вэ? /тохирч байгаа бүх шалтгаануудаа дугуйлна уу./

① Мөнгөгүй ② цаг байхгүй ③ эмнэлэг хаана байдгыг мэдэхгүй

④ хэл мэдэхгүй ⑤ хууль бус учраас айгаад ⑥ бусад_____

6-2 эмнэлэг явж чадаагүй бол яаж эмчилсэн бэ?

① Эм ууж, эм түрхэж ② амарч ③ өөрийн орны аргыг хэрэглэсэн

④ юу ч хийж чадаагүй ⑤ бусад_____

7. Мэс засалд орох юмуу эсвэл эмнэлэгт хэвтэж байсан уу?

① үгүй ② тийм



7-1. Эмнэлэгт хэвтэх үед эмнэлэгийн төлбөрийг хэн төлсөн бэ?

- ① Аав, ээж ② аав ээжийн найз
③ цуглаан юмуу шилжин суугчдад туслах байгууллага
④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⑤ аав ээжийн ажлын газар
⑥ бусад _____

8. Хэрэглээний мөнгөнд сард хэдийг хэрэглэдэг вэ?

_____ вон

9. Хэрэглээний мөнгөө хэр хангалтта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

① маш бага ② бага ③ боломжийн ④ хангалттай ⑤ маш хангалттай

10. Өрхийн амьжиргааны зардалыг яаж олдог вэ?

① аав ээж ажил хийдэг ②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гаас тусалдаг

③ аав ээжийн найз тусалдаг ④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тусалдаг ⑤ бусад _____

11. Өнгөрсөн жил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оолгүй хонох үедээ хүнээс тусламж авах шаардлага гарч байсан у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11-1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оолгүй хонох болох үед хэн тусалсан бэ?

- ① Хэнч туслаагүй ② найз ③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лага
④ сургууль ⑤ бусад _____

12. Өнгөрсөн жил мөнгөгүйн улмаас хэдэн удаа хоосон хонож байсан бэ?

① байхгүй ② 1-3 удаа ③ 4-6 удаа ④ 7-9 удаа ⑤ 10-аас дээш

13. Одоо хаана амьдарч байна вэ?

- ① түрээсийн байранд ② аав ээжийн найзынд
- ③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лагаас бэлдэж өгсөн байранд
- ④ найзындаа ⑤ дотуур байранд ⑥ бусад _____

14. Өнгөрсөн жил хонох газаргүйн улмаас гадаа гудамжинд хонож байсан уу? Хэдэн удаа ?

- ① байхгүй ② 1-3 удаа ③ 4-6 удаа ④ 7-9 удаа ⑤ 10-аас дээш



14-1. Хонох газаргүй болоход чинь хэн тусалж байсан бэ?

- ① Хэн ч туслаагүй ② аав ээжийн найз ③ цуглаан болон байгууллага
- ④ манай найз ⑤ бусад _____

15. Одоо юу хийж байгаа вэ?

- ①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② ЕБ-ийн шалгалтанд бэлдэж байгаа ③ цагийн ажил хийдэг
- ④ юу ч хийдэггүй ⑤ бусад _____

16.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бол ямар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вэ?

- ①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 ② Монгол сургууль
- ③ Гадаадаас ирсэн хүүхдүүдийн сургууль ④ бусад _____

17.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гүй бол ямар шалтгаанаар сурдаггүй вэ?

- ① сургууль авдаггүй ② Солонгос хэл мэдэхгүй ③ хүүхдүүдтэй таардаггүй
- ④ мөнгөгүй ⑤ бусад _____

18.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бол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ороход юмуу орсоны дараа юу нь хэцүү байсан бэ? /тохирч байгаа бүх шалтгаануудаа дугуйлна уу./

- ① сургуулиас авахгүй хэцүү байсан ② хүүхдүүдтэй таарахгүй хэцүү байсан
- ③ Монголын боловсролын түвшинг хүлээн зөвшөөрөхгүй хэцүү байсан
- ④ Солонгос хэл мэдэхгүй хэцүү байсан ⑤ мөнгөгүй хэцүү байсан ⑥ бусад _____

19.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бол хэд сурдаг вэ?

① маш муу ② муу ③ дундаж ④ сайн ⑤ маш сайн

20. Сургуульд сурдаг бол өнгөрсөн жилүүдэд мөнгөгүй учраас хичээлийн хэрэглэлээ бэлдэж чадаагүй тохиолдол бий юу?

① үгүй ② тийм

21. Хичээл амарсаны дараа юу хийдэг вэ?

① гэр юмуу сургууль дээр хичээл хийдэг ② цагийн ажил хийдэг

③ найз нартайгаа тоглодог ④ Халамжийн төвийн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даг ⑤ бусад _____

22. Аав ээж чинь Монгол буцвал чи яах вэ?

① Хамт Монгол явна ② Солонгост үлдэж амьдарна ③ бусад _____

23.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үүдийн төлөө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доорхи хөтөлбөрүүдийг хийж өгөх хэрэгтэй гэж бодож байна уу?

	Огт хэрэггүй	Нээх хэрэггүй	Жоохон хэрэгтэй	Маш хэрэгтэй
23-1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үүд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даатгалыг шийдэж өгөх хэрэгтэй.	1	2	3	4
23-2 Орлогогүй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ийн гэр бүл амьжиргааны доод суурь тэтгэмжийг Солонгосын Засгийн газраас хүсэж болно.	1	2	3	4
23-3 Амьдрах газаргүй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ийн гэр бүлийг орон байраар ханг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23-4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ийг Солонгос сургуульд ороход нь тусл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23-5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ийг хичээлээ сайн хийхэд нь тусл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23-6 Шилжин суугч хүүхдийг солонгос хэл сурахад нь туслах хэрэгтэй.	1	2	3	4

< Ерөнхий асуулт >

1. Та хэдэн онд төрсөн бэ?

_____ он

2. Та Эрэгтэй юу, эмэгтэй юу?

① эрэгтэй ② эмэгтэй

3. Та хэдэн онд Солонгост орж ирсэн бэ?

_____ он

4. Та хаанаас ирсэн бэ?

① Хятад ② Вьетнам ③ Индонези ④ Шри Ланк ⑤ Филиппин

⑥ Тайван ⑦ Непал ⑧ Монгол ⑨ Бусад _____

5. Аль улсын иргэншилтэй бэ?

① Хятад ② Вьетнам Индонези ④ Шри Ланк ⑤ Филиппин

⑥ Тайван ⑦ Непал ⑧ Монгол ⑨ Бусад _____

6.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байгаа юу?

① байхгүй ② байгаа

7. Солонгост ямар шалтгаанаар ирсэн бэ?

① ажил хийдэг аав ээжтэйгээ хамт байх гэж

② Солонгост гэрэлсэн ээжтэйгээ хамт байх гэж

③ бусад _____

☺ Судалгаанд хамрагдсанд Баярлалаа.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인쇄일 | 2012년 11월
| 발행일 | 2012년 11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9층 조사국 침해조사과
<http://www.humanrights.go.kr>
| T e l | (02)2125-9661
| F A X | (02)2125-9658
| 제 작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 978-89-6114-270-0 비매품

